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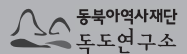
Territory and Seas

# 영토해양연구

Vol. 17 Summer 20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차례

## 연구논문

- 남영우 ■ 클라프로트(Klaproth)의 프랑스 번역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간행에 기여한 신조[新藏]의 역할 6
- 문상명 ■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竹島の日]’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28
- 이상균 · 김병연 ■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62
- 정연식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90
- 안동립 · 최재영 · 신원정 ■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138

## 사료해제

- 이원택 · 정명수 ■ 울진 대풍헌 현판 기문류(記文類) 자료의 해제 및 번역 174

## 서평

홍성근 ■ 김필규 교수의 『국제법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 214

## 영토·해양 일지

이상균 ■ 영토·해양 일지 224

## 규정 및 규칙

편집위원회 규정 232

발행 및 심사 규칙 234

투고 요령 238

연구윤리규정 242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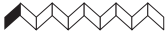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연구-커먼



- **남영우** | 클라프로트(Klaproth)의 프랑스 번역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간행에 기여한 신조[新藏]의 역할
- **문상명** |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竹島の日]’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 **이상균 · 김병연** |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 **정연식**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 **안동립 · 최재영 · 신원정** |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 클라프로트(Klaproth)의 프랑스 번역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 之圖)』 간행에 기여한 신조[新藏] 의 역할

남영우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 1. 머리말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과 그 부도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혹은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단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영유권을 논할 때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의 일본 귀속을 설명할 경우에도 자주 등장하는 고지도다. 이 저서와 부도가 프랑스 번역본으로 출간된 경위에 관해서는 최근 김부성·남영우(2018)의 연구에 의해 규명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1786년 『삼국통람도설』을 저술한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이 저서를 출간한 경위에 관해서도 남영우(1995: 2016)에 의해 고찰된 바 있다. 그러나 『삼국통람도설』의 프랑스 번역본을 출간함에 있어서 클라프로트(Klaproth)가 어떻게 한글과 일본어를 해독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연구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클라프로트(1832)가 폴란드 귀족출신이었던 포토츠키(Potocki) 백작의 추천으로 1805년 러시아 중국(청) 간의 아무

\* 논문 투고일: 2019. 3. 15, 심사 완료일: 2019. 5. 16, 게재 확정일: 2019. 5. 21.

르[黑龍] 강 귀속을 둘러싼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절단의 일원으로 이르쿠츠크에 체류하면서 어떤 경위로 「삼국접양지도」를 입수하게 되었으며, 한자와 일본어 및 한글로 표기된 지도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783년 독일 베를린에서 출생한 클라프로트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양학의 전설적 인물로 언어학·서지학·지리학·역사학 분야에도 깊은 조예를 떨쳤던 천재적 재능의 소유자였다. 이 글에서는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추적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 글의 중심인물인 독일인 클라프로트와 일본계 러시아인 신조[新藏]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와 일본을 위시한 프랑스 및 독일 문헌과 고지도를 분석하였으며, 클라프로트와 관련된 지역을 답사하였다.

## II. 클라프로트의 행적

포토츠키 백작을 학술대장으로 한 러시아 사절단은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1805년 이르쿠츠크에 당도하였다. 클라프로트는 그곳에서 러시아 제국 아카데미의 아시아어·아시아 문학 준회원 자격으로 포토츠키 백작과 함께 사절단 일을 수행하게 됨과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로운 행동을 허락받았다. 18세기 초부터 정치범의 유배지로 유명한 이르쿠츠크는 동시베리아의 지성과 예술을 꽃피운 행정·상업 중심지이며 예로부터 모피교역으로 중국과 국경무역이 성했던 도시였다. 그러므로 한자와 중국어에 능한 그는 이곳에서 동양의 문물을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1</sup>

클라프로트는 청국의 수도였던 베이징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와 몽골 국경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시 몽골은 세력

1 남영우·김부성, 2018, 「Klaproth의 삼국통람도설 프랑스 번역본의 출간 경위」, 『한국지도학회지』 18(1), 1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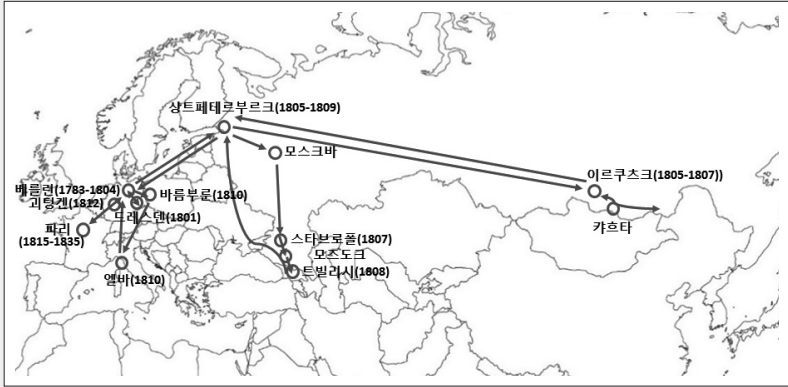
이 강해진 만주족에 대항하였으나 마지막 칸이었던 리그단 칸(1604~1634)이 사망하자 청국에 흡수되었다. 클라프로트는 사절단에 포함된 통역관 도움으로 시베리아 민족들의 언어·풍속·인종을 조사하고 이르쿠츠크 동남쪽에 위치한 부랴트 공화국의 카흐타<sup>2</sup>에서 몽골어와 만주어를 배웠으며, 대량의 한만어(漢滿語)·티베트어·몽골어 서적을 입수할 수 있었다.

클라프로트의 주된 관심 사항은 무엇보다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1822년 동양학회를 결성하고 중국의 만주 정복을 비롯한 하이난 및 타이완에 관한 설명과 언어·문학·불교에 관하여 런던에서 간행된 학회지 『아시아 잡지』를 통해 유럽 세계에 알렸다. 언어는 물론 지리와 역사에 많은 관심을 보인 클라프로트는 1825년 또 다른 학회지 『아시아 잡지(Magasin asiatique)』를 창간하였고, 지도제작에 힘썼다. 그의 활약으로 파리, 런던 및 베를린의 소장품에서 약 400점의 지도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클라프로트는 중국지도, 특히 1743년에 간행된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sup>3</sup>에 있는 지도를 사용했고, 그들이 근거한 예수회 지도 등을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동양의 지도를 유럽 지도와 대조하여 지리학자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열어 놓았다(남영우·김부성, 2018).

클라프로트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르쿠츠크뿐만 아니라 캅카스 일대를 답사하여 베를린으로 돌아와 언어·민속·역사 등에 관해 정리했으며 당시 동양학의 메카였던 파리로 돌아와 400여 장의 지도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클라프로트의 출생과 가족사항은 많은 부분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다.

2 Hjaagta 혹은 Chata, Kykhta로도 표기된다.

3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는 1461년 명대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이어 청대에 황제의 칙령으로 간행된 종합적인 역대 최고의 전국 지리서임.



〈그림 1〉 클라프로트의 여행 경로  
출처: 김부성 · 남영우(2018),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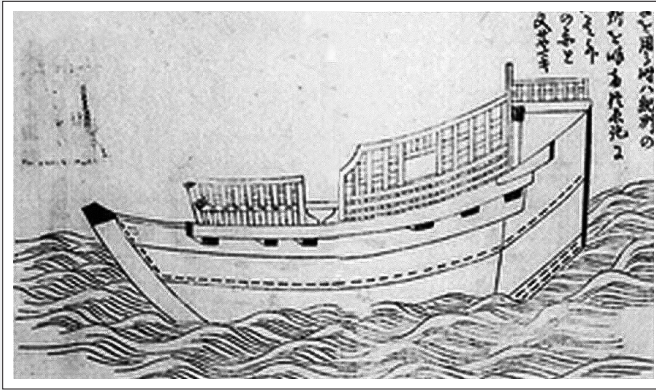
### III. 신조의 생애

‘新藏’ 혹은 ‘新藏’이라 기록된 신조는 에도시대 후기인 1758년 현재의 미에현[三重県] 스즈카시[鈴鹿市]에 해당하는 이세 가메야마번[伊勢龜山藩]에 속한 이세국[伊勢國] 가와와군[河曲郡] 미나미 와카마츠촌[南若松村]에서 태어났다. 그는 1782년 12월 13일, 다이고쿠야 코다유[大黒屋光太夫, 1751~1828]<sup>4</sup>를 오키센도[沖船頭]로 한 가미마사마루[神昌丸]라는 카이센[回船]<sup>5</sup> 선박에 16명의 선원들과 함께 승선하여 에도[江戸]로 출항하였다. ‘오키센도’란 에도시대 선주에 고용된 선장을 뜻한다. 선장은 한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250석의 가코마이[糶米]<sup>6</sup>를 비롯한 장작·목면·잡화 등을 싣고 시로코항[白子港]을 떠나 에도로 향했다.

4 그의 이름은 원래 헤이조[兵藏]였으나 1778년 가메야 시지로[龜屋四次郎]로 개명했다가 1780년 다이고쿠야 코다유[大黒屋光太夫]로 정했다.

5 <https://ja.wikipedia.org/wiki/%E5%A4%A7%E9%BB%92%E5%B1%8B%E5%85%89%E5%A4%AA%E5%A4%AB>

6 일종의 조세미(租稅米)에 해당함.



〈그림 2〉 카이센(回船)의 모습  
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E5%BB%BB%E8%88%B9>

그러나 동년 12월 14일 선박은 악천후로 ‘마(魔)의 해역’이라 소문난 엔슈나다(遠州灘)에서 난파하여 북태평양을 떠돌다가 8개월 후인 1783년 7월 20일 알류산 열도의 앰치카(Amchitka)섬에 표류했다.<sup>7</sup> 일행은 에스키모족에 속하는 알류트족(Aleut)에게 구출되었지만 곧 러시아인에 인계되어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들은 카자크인들로 구성된 모피상들이었다. 이 섬은 수렵단의 거점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4년간 러시아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어학능력이 뛰어난 신조와 이소기치가 가장 먼저 러시아어를 습득하였다. 견습선원인 15세 요소마츠(與惣松)의 어학실력이 그 뒤를 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사하는 선원이 늘어나 1784년 5월의 시점에서 6명이 감소하여 10명만 생존하게 되었다. 당시 신조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sup>8</sup>

그로부터 4년 후인 1787년 7월 18일, 9명의 선원은 3개월에 걸쳐 러시아인들과 함께 부서진 선박을 새롭게 건조하여 앰치카섬을 탈출하였다. 니어제도(Near Islands)와 코만도르스키예 제도(Commander Islands)를 경유하여 8월

7 山下恒夫, 2004, 『大黒屋光太夫: 帝政ロシア漂流の物語』, 東京: 岩波書店, 46쪽 참조.

8 山下恒夫, 2004, 위의 책, 69쪽 참조.

23일 캄차카반도의 우스치-캄차카(Ust'-Kamchatsk)에 도착할 수 있었다. 9명의 선원은 아카에조(赤蝦夷)와 러시아 장교를 만나 캄차카반도 북쪽에 위치한 니지네캄차카로 이동하여 러시아인의 집에 머물렀다. '아카에조'란 에도 시대 러시아인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들은 러시아 수비대로부터 식량을 공급 받았는데 겨울이 되어 오흐츠크로부터의 선박이동이 중단되자 심각한 식량부족에 시달려 1788년 5월까지 3명이 병사하여 6명만 생존하였다.<sup>9</sup> 이 시기는 알류산 열도 일대에서 러시아인들에 의해 자행된 일레우트족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 다이고쿠야 선장은 경비대 사령관 올랑코프(Orleankov) 소좌로부터 황제에게 귀국탄원서를 상소하면 귀국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희망을 가졌다.

1788년 6월 15일 생존자 6명은 캄차카반도를 횡단하여 배를 타고 8월 20일 오흐츠크에 당도하였고, 12월 13일 그곳을 떠나 야쿠츠크를 경유하여 1789년 2월 9일 이르쿠츠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당시 이르쿠츠크는 러시아 제국이 동시베리아와 그 주변부 전체를 통괄하는 최고행정기관인 총독부가 위치한 중요한 거점도시였다. 일행 중 쇼조[庄藏]가 심각한 동상에 걸려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거동이 부자유스러워진 쇼조는 심약해지면서 러시아 정교의 세례를 받고 표도르 시드니우프로 개명하여 귀화했다. 이르쿠츠크에서는 대장간<sup>10</sup>에 머물면서 1745년 5월에 일본으로부터 표류해온 다가마루[多賀丸] 선원들과 만나 오랜만에 일본어로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는 일본의 문호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들 일본 표류민들을 일본의 문호를 열게 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았다. 포트르(Pyotr) 1세(1672~1725)는 일본과의 통상무역을 위한 준비단계로 일본어 통역 양성계획을 수립하였다. 1713년 러

9 山下恒夫, 2004, 위의 책, 75쪽 참조.

10 당초에는 일본어학교에 머물다가 대장간으로 옮겼다는 설도 있다(山下恒夫, 2004, 위의 책, 102~103쪽).

시아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천도하면서 1696년에 러시아에 들어온 일본 표류민 덴베에[傳兵衛]를 일본어 교사로 임명하여 러시아로 귀화시킨 바 있다.<sup>11</sup> 이 제도는 그 후에도 지속되어 1745년에 또 다른 일본 표류민들을 교사로 임명하고 1754년 이르쿠츠크에 일본어학교를 개설했으나 그들이 사망함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된 상태였다. 바로 이 무렵에 가미마사마루호 선원들이 표류해 온 것이다. 다이고쿠야 선장은 러시아 귀화와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모피중개상 네비지모프(Nevijimov)가 일레우트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림 3〉 러시아 복장의 다이고쿠야 선장과 이소기치 선원  
출처: info@creativecommons.org, 홋카이도대학 도서관 소장.

11 山下恒夫, 2004, 위의 책, 58~59쪽 참조.

1791년 1월 다이고쿠야 선장이 핀란드 출신의 박물학자 키릴 라크스만(Kirill Laksman)과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하였다. 신조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으나 병에 걸려 갈 수 없었다. 의사로부터 회복불능 판정을 받은 신조는 러시아 정교의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콜로티긴(Nicholas Petriovich Korutoigin)이란 러시아 이름으로 개명하고 귀화하였다. 그러나 신조의 병은 곧 치유되어 다이고쿠야 선장의 뒤를 따라 페테르부르크로 갈 수 있었으며, 이 무렵 마리안나(Marianna)란 미모의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sup>12</sup> 신조의 결혼을 두고 이소기치[磯吉]는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다이고쿠야 선장은 내심 못마땅해 하였다.

1791년 5월 다이고쿠야 선장과 이소기치, 고이치[小市] 3명의 선원은 러시아 여제(女帝)로부터 귀국허가를 받았다. 신조는 같은 해 9월 13일 이르쿠츠크 학교의 일본어 교사로 임명되어 금화 40장의 봉급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에 귀화한 신조와 쇼조는 황제에게 금화 50장을 하사받고 1792년 1월 14일 이르쿠츠크로 귀환했다. 이상에서 설명한 신조 일행의 여정을 요약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신조 일행의 여정

12 山下恒夫, 2004, 위의 책, 114쪽 참조.

그 후, 신조는 1794년 5월 10일 표류한 와카미야마루[若宮丸] 선원 3명에 대한 통역과 편의제공으로 봉급이 은화 120장으로 승급하였다. 그 당시 신조의 부인 마리안나가 사망한 후였으므로 젠로쿠[善六]·다쓰쿠라[辰藏]·기헤에[儀兵衛] 3명은 신조의 자택에 기숙하고 있었다. 신조는 일본어를 가르치기에는 한자를 몰라 난처하던 중 한자를 잘 아는 젠로쿠로부터 한자교육을 받았다. 신조는 젠로쿠를 설득해 일본어 교사가 되기 위해 세례를 받고 귀화시켰다. 또 젠로쿠는 다쓰쿠라를 설득해 세례를 받게 하였다. 신조는 카테리나(Caterina)란 여성과 재혼하면서 별도의 거처로 옮겼다. 젠로쿠와 다쓰쿠라가 함께 살았고, 귀화를 거부한 기헤에는 불구가 된 쇼조의와 함께 살았다. 심약했던 쇼조는 기헤에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다이고쿠야 선장 일행 3명은 1792년 러일 외교교섭으로 신병인도가 결정되어 이르쿠츠크로부터 오흐츠크 항을 떠나 현재의 홋카이도인 에조(蝦夷)의 네무로[根室]와 하코다테[函館]를 거쳐 1793년 일본의 에도로 10년 만에 귀국했다. 네무로에서 고이치가 사망했으므로 결국 최종 귀환자는 두 명에 불과했다. 그는 귀국 후 당시의 가쓰라가와[桂川甫周] 등의 난학자와 교류하여 러시아 전문록 성격의 『호쿠사분략쿠[北槎聞略]』란 저서<sup>13</sup>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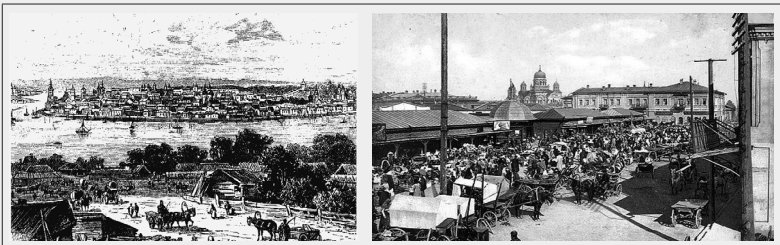
1803년 3월 7일 와카미야마루 표류민 13명이 귀국허가를 받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할 때 신조가 동행하였다. 그들을 안내한 신조는 이르쿠츠크로 귀환하여 표류민들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은화 204장의 봉급을 받게 되었고, 일본어학교 학생이었던 아들에게는 은화 50장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그는 1809년 러시아인들을 위한 일본어 교습서를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신조는 재혼 후 딸 1명을 낳고 안락한 교사 생활을 누렸으나, 1810년 향년 5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신조는 결국 고국을 떠난 지 28년, 이르쿠츠크의 삶 21년을 해외에서 마감한 것이다.

13 이 저서는 일종의 지지서(地誌書)인데, 가쓰라가아가 다이고쿠야 선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록한 견문록으로 1794년 간행되었으나 막부에서 금서로 지정했다. 이 저서는 일본의 난학 발전에 기여했다.

#### IV. 클라프로트와 신조의 만남과 「삼국접양지도」의 입수 경위

클라프로트는 포토츠키 백작이 인솔하는 사절단과 함께 1805년 신조가 살고 있던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은 신조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을 때였다. 클라프로트는 중국대사관의 소개로 일본인 교육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설립한 언어학교<sup>14</sup>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언어학에 관심이 많은 탓에 1807년 캅카스를 조사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언어학교가 있는 경우 소홀히 간과하는 법이 없는 인물이었다. 바로 이 무렵 클라프로트는 신조와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었다.<sup>15</sup>

이 연구의 초점은 클라프로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삼국접양지도」를 입수하였는지에 있다. 그 가능성은 두 가지 경로를 상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르쿠츠크는 물론 인접 도시인 카흐타에 중국시장이 있었다는 점이다. 18세기 초부터 정치범의 유배지로 유명한 이르쿠츠크는 동시베리아의 행정·상업 중심지이며 예로부터 중국과 국경무역이 성했던 도시였음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곳에서 중국의 문물을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르쿠츠크(18세기)

카흐타(19세기)

(그림 5) 클라프로트가 「삼국통람도설」을 입수한 곳으로 추정되는 이르쿠츠크와 카흐타  
출처: Wikipedia

14 러시아 정부가 설립한 언어학교는 그 맥이 단절되었다가 1948년 정식으로 이르쿠츠크 국립외국어 사범대학으로 설립된 후, 1996년 이르쿠츠크 국립언어대학으로 재편성되었다. 이 대학의 동양어학부에서는 한국어·중국어·일본어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15 남영우·김부성, 2018, 앞의 글, 15~28쪽.

또한 카흐타는 1689년 청·러 간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된 후에 생긴 러시아 도시이며, 1727년 러시아 제국과 청국 간에 체결된 카흐타 조약을 계기로 교역거점이 된 도시였다.<sup>16</sup> 이 조약은 1727년에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 3년에 한 번씩 러시아 대상의 베이징 입국이 허용되었고 러시아의 어학 연구생들이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Tolmacheva, 2000). 따라서 그 무렵 중국에서 다량의 서적이 유입된 것으로 보아 필자는 클라프로트가 이곳에서 『삼국통람도설』 복사본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하야시의 저서는 복사본이 다량 유출되어 원본과 필사본을 구별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러벤스(2006)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복제본이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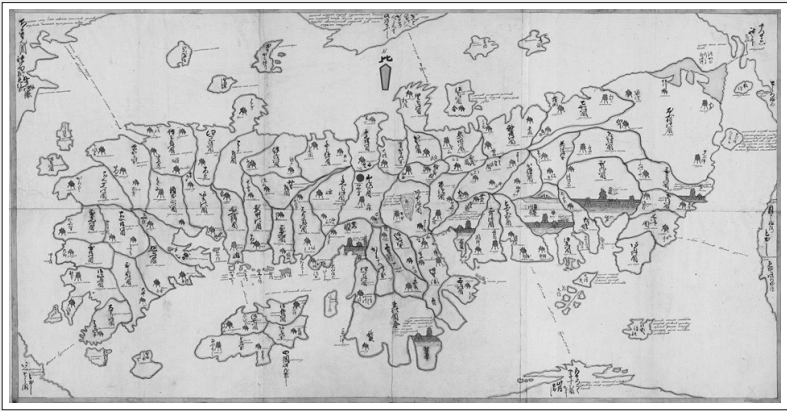
또 다른 경로는 클라프로트가 신조로부터 직접 인수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하야시의 「삼국접양지도」는 일본 주변국에 대한 관심이 많던 사람들과 어장과 향해 탐색을 위해 선원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다이고쿠야 선장이나 선원들이 휴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조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러시아 견문록에 해당하는 『호쿠사분략쿠(北槎聞略)』에도 신조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표류민 가운데 신조가 평범한 젊은 선원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그의 러시아 귀화와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선장 일행이 일본으로 귀국한 후의 쇼조와 신조의 소식을 의사이며 난학자였던 오오츠키 겐타쿠(大槻玄澤)로부터 전해 들었지만<sup>17</sup> 그의 견문록에는 신조에 대하여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이와이 노리유키[岩井憲幸](1994)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고쿠야 선장이 제작한 「일본도」(〈그림 6〉)은 1789년 러시아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786년에 제작된 하야시의 지도보다 시기적으로 후에 제작된 것이다. 이

16 M. Mancall, 1971, *op.cit.*, p.263.

17 오오츠키(1757~1827)가 와카미야마루[若宮丸] 표류민의 기록인 「환해이문」을 편찬할 때 다이고쿠야가 도와주었다.

지도는 1793년 러시아 군의관이 이르쿠츠크에서 입수하였으며 현재 독일 괴팅겐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sup>18</sup> 『삼국통람도설』이 괴팅겐 대학에 소장된 이유는 클라프로트가 1812년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한 대학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6〉 다이고쿠야 선장이 제작한 일본도(1789년)  
출처: Göttingen State and University Library (Sammlung Asch) 소장본.

필자는 이상에서 거론한 두 경로 중 가미마사마루가 출항한 시기와 『삼국통람도설』의 간행년도를 비교하여 전자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그럼에도 「삼국접양지도」가 클라프로트의 수중에 들어간 곳은 이르쿠츠크 혹은 인근 도시인 카흐타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클라프로트는 1805년 이곳에서 「삼국접양지도」를 입수했지만, 이 지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1807~1808년에 걸친 캅카스 조사를 마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귀환한 1809년이거나 폴란드의 바름부룬(Warmbrunn)에 칩거하던 1815년이었을 것이다. 물론 클라프로트는 『삼국통람도설』과 부도인 「삼국접양지도」

18 岩井憲幸, 1994, 「ゲッチンゲン大学蔵大黒屋光太夫筆日本図について」, 『明治大学教養論集』 269, 158쪽 참조.

및 「조선팔도지도」에 관한 내용을 해독하기 위해 이르쿠츠크에서 신조로부터 도움을 받은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 V. 신조의 역할

『삼국통람도설』을 입수한 클라프로트는 지도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으므로 우선 부도를 면밀히 탐독했을 것이다. 이 서적과 지도에는 한자와 일본어는 물론 한글이 섞여 있었던 까닭에 신조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신조는 영특하고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지만 다이고쿠야 선장처럼 교육을 받지 못했던 탓에 간혹 모르는 한자도 섞여 있어 당혹한 적도 있었던 모양이었다. 한자 해독이 가능했던 클라프로트는 일본어와 한글을 해독함에 있어 신조로부터 일본어에 대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며, 한글은 당시 그의 학문적 라이벌이며 조력자였던 시볼트(P.F. von Siebold)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정보와 한글에 관한 조예는 클라프로트에 비해 시볼트가 더 깊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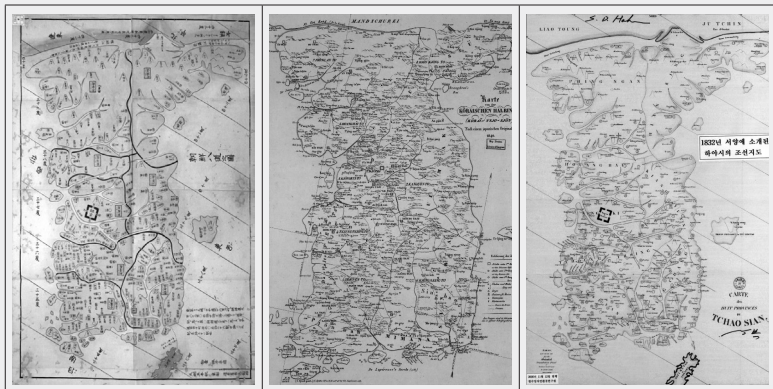
〈표 1〉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의 지명 표기 비교

표기 내용	林子平	Siebold	Klaproth
서(西)	세(セイ)	서	ouest
남(南)	담(ナム)	남	sud
조선	朝鮮	朝鮮, Tsjō-sjon (KOORAD)	Tsiō Sen ou Coree (CHAO SIAN)
한성	京師	京師, KJŎNG	King's zu ou capitale
백두산	白頭山	白頭山(Paik tu san)	Pe teng chan

이에 대해서는 하야시·시볼트·클라프로트 3인의 지도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가령 「조선팔도지도」의 지명 표기의 경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하야시의 「조선팔도지도」는 나가사키의 나라바야시(檜林)가 소장하던 조선 통역관(朝鮮大象符)의 지도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은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바 있다.<sup>19</sup> 이 지도는 조선에서 입수한 지도였으므로 한글표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야시는 한글 해독이 불가능하여 그대로 모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오류를 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체적으로 하야시는 서쪽을 뜻하는 ‘서’를 ‘세’로, 시볼트는 ‘셔’로 표기한 데 비해<sup>20</sup> 클라프로트는 ‘oust’로 번역하여 주기했다. 남쪽을 뜻하는 ‘남’을 하야시는 ‘담’으로 오기한 데 비해, 시볼트와 클라프로트는 각각 ‘남’과 ‘sud’로 올바르게 표기하였다. 이는 조선에서 입수한 「조선팔도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임이 분명하다(그림 7). ‘조선’의 경우 하야시는 한자로 옮겨 적었으나, 시볼트와 클라프로트는 유럽세계에 알리기 위해 각각 ‘Tsio-sjon’으로 표기하거나 조선의 전통적 국명이 고려임을 알리기 위해 ‘KOORAI’로 주기했다. 이에 비해 클라프로트는 코리아 조선이란 뜻으로 ‘Tsiō Sen ou Coree’로 표기했다.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漢城)은 하야시와 시볼트 모두 ‘경사(京師)’로, 클라프로트는 왕도(王都)란 의미의 ‘King’s zu ou capitale’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시볼트가 한성을 ‘KJÖNG’으로 표기한 것은 음독이 불분명하며 오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야시 시헤이

시볼트

클라프로트

〈그림 7〉 「조선팔도지도」의 비교

19 이에 관해서는 남영우, 1995, 「林子平의 朝鮮八道之圖 연구」, 『민족문화연구』, 28을 참고할 것.

20 당시에는 현대한국어와 달리 ‘서’를 ‘셔’로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야시 시헤이(1786년)

클라프로트(1832년)

〈그림 8〉 「삼국점양지도」의 일어판과 프랑스어판 비교

클라프로트는 『삼국통람도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함에 있어 동양에서는 당시 한자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표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조선(朝鮮)을 ‘鮮朝’로,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江戸)를 ‘戶江’으로, 센다이(仙臺)를 ‘臺仙’ 등으로 거꾸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지명의 음독은 Tisô sen, Yedo(Kiang hou), Sendai 등으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였다. 그리고 독도의 경우 ‘Tchû tao’로, 울릉도를 ‘Yü liang tao’로 비교적 한국식 발음에 가깝게 음독하였다.<sup>21</sup>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클라프로트가 밝힌 조선의 지명은 고려(高麗)를 ‘Kao li’처럼 대체로 중국식 발음에 가까운 표기가 많았으며, 울릉도와 그 자섬인 독도를 「삼국점양지도」에서 일본식 지명인 ‘Takeno sima’라 표기하면서도 한국 영토임을 밝히기 위해 ‘Takeno sima a’la Corée’, 즉 ‘한국의 다케노섬’이라 주기했다는 사실이

21 J.H. von Klaproth, 1832, “三國通覽圖說”, SAN KOKFTSOU RAN TO SETS, London: John Murray, Allen & Co., p. 104 참고.

다.

이상에서 고찰한 지명표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클라프로트가 『삼국통람도설』과 「조선팔도지도」 및 「삼국접양지도」 등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신조의 도움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신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자에 능통하지 못했으므로, 클라프로트는 신조의 도움 없이 평소 숙지하고 있던 중국어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삼국통람도설』의 원저자의 이름인 경우에만 ‘林子平’을 일본식 독음인 ‘하야시 시헤이(はやししへい)’가 아니라 중국식 음독에 가까운 ‘Rinsifée’로 표기했다. 그러나 한국의 국명과 지명은 시볼트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발음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 VI. 맺음말

일본은 클라프로트가 프랑스로 영국인 『삼국통람도설』과 그 부도인 「삼국접양지도」 등을 번역한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를 양도받을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정 치하에서 일본은 오가사와라 제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미국 국방성과 미군은 이 섬에 핵기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오가사와라 제도를 군정 치하에 둔 것이다. 일본은 1968년 6월 26일 미일 간 오가사와라 반환협정에 따라 오가사와라 제도를 반환받았다.

역사학자 다보하시[田保橋潔]는 하야시와 클라프로트를 ‘일본의 은인’이라 평가하였고, 총리대신이었던 이토[伊藤博文]는 1879년 도호쿠[東北]지방을 순시하던 중 폐허가 된 하야시의 묘를 보고 탄식하면서 그의 위업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묘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1942년 일본 사적으로 지정되었다(平重道, 1977). 또한 1863년 외무대신이었던 다나베[田邊大一]는 프랑스 대사를 역임하면서 클라프로트의 「삼국접양지도」의 존재를 알고 1859년 미국과

영국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1861~1862년에 걸쳐 현지 조사한 것을 계기로 일본영토임을 공인받을 수 있었다.<sup>22</sup>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삼국접양지도」에 명기된 독도의 한국영유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

하야시의 『삼국통람도설』이 클라프로트에 의해 프랑스어 판으로 편찬된 경위에 관해서는 남영우·김부성(2012)의 연구로 규명된 바 있듯이 출판비 조달문제에 직면한 클라프로트는 1832년 영국 및 아일랜드의 번역기금을 받아 영국 런던의 존 머리(John Murray)<sup>23</sup> 출판사에 판권을 넘겨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클라프로트는 이르쿠츠크 혹은 카흐타의 중국인 시장에서 입수한 『삼국통람도설』을 번역하면서 일본어의 해독은 신조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신조가 해독 불가능한 한자는 후에 표류하여 이르쿠츠크에 들어온 젠로쿠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글을 비롯한 조선에 관한 지식은 시볼트의 조력을 받았다. 클라프로트의 『삼국통람도설』은 유럽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와 주해를 달아가며 설명했으므로 단순한 번역서라기보다는 편저서라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2 柴田宵曲 編, 2007, 『幕末の武家』, 東京: 青蛙房의 회고담을 참조할 것.

23 영국이 자랑하는 존 머리(John Murray) 출판사는 근대적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곳이며, 1859년 다윈의 『種の 기원』을 출판한 바 있는 저명한 출판사다.

## 국문 초록

일본은 클라프로트(Klaproth)가 프랑스어로 일본의 『삼국통람도설』과 그 부도인 「삼국접양지도」 등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오가사와라 제도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특히 『삼국통람도설』과 그 부도인 「삼국접양지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단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영유권을 논할 때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의 일본 귀속을 설명할 경우에도 자주 등장하는 고지도다.

그러나 이 저서는 한·미·일·중 4국 간의 영토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출간 배경과 과정이 간과되어 왔다. 이에 필자는 『삼국통람도설』과 그 부도의 제작에 있어서 클라프로트의 본서 입수와 집필 배경에서 등장하는 일본계 러시아인 신조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였다.

클라프로트는 러시아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이르쿠츠크로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혹은 인접한 카흐타의 중국인 시장에서 입수한 『삼국통람도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함에 있어 일본어의 해독은 신조(新藏)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가 모르는 한자는 후에 표류해 이르쿠츠크에 들어온 젠로쿠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글을 비롯한 조선에 관한 지식은 시볼트의 조력 덕분이었다. 클라프로트의 『삼국통람도설』은 유럽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와 주해를 달아가며 설명했으므로 단순한 번역서라기보다는 편저서라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조는 같은 고향 미에현 출신인 다이고쿠야 코다유(大黒屋光太夫) 선장을 따라 항해하던 중 표류하여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선원이었다. 그는 일본어 교사로 정착해 살던 중 클라프로트와 만나 하야시의 저서 『삼국통람도설』을 해독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인물이다.

아시아 동단의 일본에서 발간된 『삼국통람도설』이 지구 반대편의 유럽에서 독일 출생의 클라프로트에 의해 프랑스어 판으로 편찬된 경위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로 규명된 바 있지만, 이것이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프랑스 파리가 아닌 영국에서 발행된 이유는 출판 비용의 조달문제에 직면한 클라프

로트가 '영국 및 아일랜드의 번역기금'을 받아 런던의 존 머리(John Murray) 출판사에 판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삼국통람도설』과 그 부도들이 유럽에서 간행된 배경에는 폴란드 출신의 포토츠키 백작, 독일인 훔볼트(Humboldt)와 시볼트, 일본계 러시아인 신조의 도움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제어〉

클라프로트, 신조, 콜로티긴, 하야시 시헤이, 삼국통람도설, 삼국접양지도, 조선팔도지도

## ABSTRACT

Shinzo's Role in Klaproth's French Translation of Sangoku setsujochizu

Nam, Youngwoo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Japan was able to reclaim Ogasawara(小笠原) Islands from the United States thanks to Klaproth's translation from Japanese into French of *Sangoku tsran zusetu*(三國通覽圖說) written by Hayashi Shihei. In particular, *Sangoku tsran zusetu* and Sangoku setsujochizu(三國接壤之圖) are frequently referenced in debate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sovereignty over Dokdo as well as in descriptions of Japan's case to recapture Ogasawara Islands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book has been overlooked because it focuses only on the territorial issues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This study focuses on the Shinzo, a Japanese-Russian who appears to have assisted when Klaproth's acquired and translated *Sangoku tsran zusetu* and its attached maps.

Klaproth was able to go to Irkutsk or Kykhta by becoming a member of the Russian delegation, and he got help from Shinzo with Japanese language when translating *Sangoku tsran zusetu* into French. Knowledge of Joseon, including Korean alphabet (Hangeul), was also available thanks to Siebold's assistance. Klaproth's *Sangoku tsran zusetu* contained detailed explanation to help Europeans understand. Therefore, it would be fair to regard it as a compilation rather than a transl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Zeroku, who later entered Irkutsk after drifting away, helped Klaproth with Chinese characters.

Shinjo(新藏) was a sailor who was naturalized as Russian in Irkutsk while sailing together with the captain of the ship, Tagokuya Kodayu(大黒屋光太夫) who was also from his hometown Mie Prefecture(三重県). While working as a Japanese teacher, he met Klaproth to help decipher Hayashi's book *Sangoku tsran zusetu*.

The publication of *Sangoku tsran zusetu* in Japan in the far east of Asia has been researched as a prior study on how the French version was compiled by Germany-born Klaproth in Europ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s is known, it was published in Britain, not in Paris, France, because Klaproth had

problems in procuring publishing costs and handed over the copyright to the publisher John Murray with the Translation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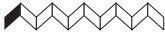
As explained above, *Sangoku tsran zusetu* and its attached maps were published in Europe with the help of Count Potocki of Poland, Humbold and Siebold of Germany and Japan-born Shinzo. Klaproth's *Sangoku tsran zusetu* attempts to help Europeans to understand, thus it would be reasonable to regard it as a compilation rather than a mere translation.

Keywords

Klaproth, Shinzo, Hayashi Shihei, *Sangoku tsran zusetu*, Sangoku setsujochizu, Chosenhachidonozu.

## 참고문헌

- 남영우, 1995, 「林子平의 朝鮮八道之圖 연구」, 『민족문화연구』 28.
- 남영우, 2016,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 『삼국통람도설』과 부도의 독도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1.
- 남영우·김부성, 2012, 「하야시와 Klaproth의 삼국접양지도 비교분석」, 『2012년 한국지도학회 추계 학술대회 요약집』, 한국지도학회.
- 남영우·김부성, 2018, 「Klaproth의 삼국통람도설 프랑스 번역본의 출간 경위」, 『한국지도학회지』 18(1).
- 龜井高孝, 1987, 『大黒屋光太夫』, 東京: 吉川弘文館.
- 山下恒夫, 2004, 『大黒屋光太夫: 帝政ロシア漂流の物語』, 東京: 岩波書店.
- 生田美智子, 1997, 『大黒屋光太夫の接吻,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身体』, 東京: 平凡社.
- 岩井憲幸, 1994, 「ゲッチンゲン大学蔵大黒屋光太夫筆日本図について」, 『明治大学教養論集』 269.
- 柴田宵曲 編, 2007, 『幕末の武家』, 東京: 青蛙房.
- 岩井憲幸, 1994, 「ゲッチンゲン大学蔵 大黒屋光太夫筆日本図について: 書誌学的·文献学的一研究」, 『明治大学教養論集』 269.
- 龜井高孝, 1987, 『大黒屋光太夫』, 東京: 吉川弘文館.
- 平重道, 1977, 『林子平: その人と思想』, 東京: 宝文館出版.
- Klaproth, J.H. von, 1826, *Tableaux historiques de l'Asie, depuis la monarchie de jusqu'a nos jours*, Paris: Schubart.
- Klaproth, J.H. von, 1832, “三國通覽圖說”, SAN KOKF TSOU RAN TO SETS, London: John Murray, Allen & Co.
- Mancall, M., 1971, *Russia and China: their diplomatic relations to 1728*, 61, Harvard East Asian series,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Tolmacheva, M., 2000, “The early Russian exploration and mapping of the Chinese frontier”, *Cahiers du monde russe*, 41(1).
- Walravens, H., 2006, “Julius Klaproth: His Life and Works with Special Emphasis on Japan”, *Japonica Humboldtiana*, 10.



#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竹島の日]’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문상명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 1. 머리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sup>1</sup>은 이른바 ‘죽도의 날[竹島の日]’<sup>2</sup> 행사를 2019년 2월 22일 마쓰에[松江]시에서 개최했다.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이후 14번째다. 이는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자신들의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2월 22일에 열리고 있는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13년부터 7년째 차관급 정부 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안도 히로시[安藤裕]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하였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죽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

\* 논문 투고일: 2019. 4. 18, 심사 완료일: 2019. 5. 15, 게재 확정일: 2019. 5. 21.

1 일본 혼슈[本州] 남서부에 위치한 현이다. 시마네현의 오키섬[隠岐諸島]은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데 160km 떨어져 있다.

2 시마네현이 조례로 제정한 ‘竹島の日’을 ‘죽도의 날’로 표기한다. 일본 측 입장에서 발언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독도를 ‘죽도’로 명명한다.

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는 “교육에서도 젊은 세대가 죽도 문제를 정확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sup>3</sup> 이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교과서 왜곡의 당위성을 찾으려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날 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죽도의 점거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교 교섭에서 죽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sup>4</sup> 이번 ‘죽도의 날’ 행사를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가 백년대계’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sup>5</sup>

양국 간 ‘죽도의 날’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 해마다 이날만 되면 언론을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 측 연구 논문은 몇 편에 불과하다. 여론과 달리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에 대한 연구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혜경<sup>6</sup>은 ‘죽도의 날’ 조례의 제정에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에 대한 활용 수단으로써 바라보았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도서영유권’ 분쟁국 가운데에는 민족주의나 국민감정을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이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기념일과 기념 의례는 분쟁을 형상화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좋은 수단이며, ‘죽도의 날’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배진수는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를 통해 일본의 도발 패턴을 연구<sup>7</sup>하였는데 독도 이슈 가운데 중요한 사건

3 『NEWSIS』, 2019. 2. 22(김혜경, 「日 오늘 ‘죽도의 날’ 행사...“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

4 『NEWSIS』, 2019. 2. 22, 위 기사.

5 『MBC News』, 2019. 2. 22(박선하, 「日 “죽도 문제”, 국가 백년대계 입각해 대처」).

6 현혜경, 2013,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의 기념 의례 연구-죽도의 날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3-2, 395~440쪽.

7 배진수, 2016,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와 일본의 도발 패턴-시기별·이슈별 국제정치적 변수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21, 309쪽 ~348쪽.

으로 ‘죽도의 날’ 조례 제정(2005.03)을 꼽았다. 이 이슈 이후 독도는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본, 방위성의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 영토’라 표기되었으며, 이후 독도에 대한 국제홍보를 본격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문상명은 지방의 시마네현이 조례로 제정한 ‘죽도의 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와 대응을 『일본의회 의사록』을 바탕으로 연구<sup>8</sup>하였다. 그는 아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기념일을 독도 영유권 문제에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죽도의 날’이 제정되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글은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창건의 논문<sup>9</sup>이 주목된다. 그는 ‘죽도의 날’ 제정에 대한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NGOs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행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응을 신문 기사류를 중심으로 살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

『국회회의록』에는 당시의 현안과 이를 둘러싼 국회의원의 정부에 대한 질의와 정부의 응답, 국회의원과 정부의 대응 및 정책 수립과 과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죽도의 날’ 제정 전후의 『국회회의록』을 통하여 조례 제정을 둘러싼 국회 및 정부의 태도와 대응을 연구하고자 한다.<sup>10</sup> 이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대응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8 문상명, 2019,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모순-일본 의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51권 1호, 415쪽~449쪽.

9 박창건, 2009, 「죽도(竹島)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 『한국과 국제정치』 25-3, 99~129쪽.

10 이와 관련하여 『국회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을 주요 자료로 삼고, 회의록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로 신문류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회회의록』에 대응하는 일본의 『의회 의사록』의 내용은 이미 문상명(2019)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을 최소화한다.

## II.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 조례 제정과 한국 정부 측 대응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2005년 3월 16일이다. 2005년은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로 규정된 의미 있는 해였다. 어느 때보다 한일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계획되었는데, 시마네현의 이슈로 인하여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는 2000년대 이래 한일 간 독도 이슈 가운데 세 번째로 주목된 사건이었다.<sup>11</sup>

‘죽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주장은 이미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치바현 출신의 이시바시 가즈야[石橋一彌] 자민당 의원<sup>12</sup>이 1987년 8월, 처음으로 ‘죽도의 날’ 제정을 제기하였다. 당시 교토대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가 『조선사 연구』 24호에 게재한 “一九〇五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라는 논문이 일본 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호리 교수는 일본 메이지정부가 작성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sup>13</sup>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外一島]를 일본 영토 외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하였다.<sup>14</sup> 이시바시는 이를 반박하며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죽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며 ‘죽도의 날’ 제정을 제기하였다. 그는 ① 일본 정부가 ‘북방 영토의 날’을 제정한 것과 같이 독도를 동일 선상에 놓아야 하며 ② 일본 국민의 배타적 정서나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③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이슈를 만들

11 배진수, 2016, 앞의 글, 299쪽; 배진수는 빅데이터 분석하여 첫째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2012.8), 둘째 일본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강행(2008.7)을 들었다.

12 그는 이른바 ‘문부족(文部族)’의 최강경파로 자민당의 문교부 회장으로, 한일 간에 교과서 왜곡 파동(1982.7)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교과서 문제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13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연호상 메이지(明治) 원년(1868년)부터 메이지 18년(1885년)까지 있었던 국정 최고 기관으로 현재 일본 내각의 전신이다.

14 문상명, 2019, 앞의 글, 418쪽~419쪽.

어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 뒤 1990년 이후 일본 외무성이 펴낸 『외교청서(外交靑書)』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내용이 ‘일본 고유 영토’로 바뀌었다.<sup>15</sup> 일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17년이 지난 2004년 10월 6일, 시마네현 의회는 ‘시마네현 고시 40호’<sup>16</sup>의 선포 100주년을 앞두고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청원서를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내각총리대신, 총무대신, 외무대신, 문부과학대신, 농림수산부장관 등에게 보냈다.<sup>17</sup>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마네현 의회는 독자적으로 2005년 2월 21일에 ‘해마다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지정한다는 조례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다음날인 2월 22일,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곧이어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는 ‘죽도의 날[竹島の日] 제정안’을 조례로 통과시키고 3월 25일,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지사가 이를 공포하였다.<sup>18</sup>

‘죽도의 날’ 조례안 통과 이후 시마네현이 의도했던 그러지 않았든 간에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다만 이시바시의 의도대로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조되었다.<sup>19</sup> 문상명(2019)은 『일본 의회 의사록』의 내용 분석을 통해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 퍼포먼스(performance)라기보다는 시마네현이 독도와 관련한 한일 간의 민감한 부분을 활용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당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렸던 일본 정부는 ‘죽도의 날’ 제정에 당혹스러워했고,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만 치부하며 정부의

15 배진수, 2016, 앞의 글, 325쪽.

16 一縣告示第一號 :1905년(고종 42)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이를 알린 고시.(항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16679&cid=51936&categoryId=54510>)

17 문상명, 2019, 앞의 글, 421쪽~422쪽.

18 문상명, 2019, 위의 글, 424쪽~425쪽.

19 문상명, 2019, 위의 글, 442쪽.

입장과는 별개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3월 4일,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 의원연맹이 ‘죽도의 날’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현 의회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의견서에는 “죽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시마네현 고카무라[高岡村]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한국이 우표 발행 등으로 영토권을 기정사실로 하려고 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sup>20</sup> 같은 해 10월 6일, 시마네현 의회는 ‘죽도의 날’ 제정 요청 청원서를 정부 주요 요인들에게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측의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의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거나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1. ‘대일 신(對日新) 독트린’ 발표

한국 정부가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은 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2005년 3월 17일, 노무현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대일 신 독트린(對日新 doctrine)’을 발표하였다.<sup>21</sup> 이것의 주요 골자는 대일 외교 4대 기조와 5대 방향으로 압축된다.

4대 기조는 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식에 기초한 한일관계 구축 ② 독도 및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등 일본의 식민지 침탈 정당화에 대한 단호한 대처 ③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堂堂한 대의(大義) 천명과 일본의 태도 변화 촉구 ④ 기존의 정치적·외교적 교류와 경제·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5대 방향은 ①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확고한 수호 조치 ②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와 일본 내 양심 세력과의

20 『연합뉴스』, 2004. 3. 4(신지홍, 「日 지방의원 ‘죽도의 날’ 제정 의견 제출」).

21 『연합뉴스』, 2005. 3. 17(연합뉴스, 「정부 한일관계 성명 전문」).

연대 등 모든 가능한 수단 동원 ③ 일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와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 촉구 ④ 일본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견제 ⑤ 인적·문화적 교류 지속과 한일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사실상 정신적 침략을 당했다”며 정면 대응을 지시한 직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작성된 문건이다. 독트린은 3·1운동 독립선언문을 참고하고 영감을 얻은 부분이 적지 않으며, 을사늑약(1905년)·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무라야마 총리 담화(1995년)·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등 각종 역사적 조약과 문건 등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한다.<sup>22</sup> 노무현 정부는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일본의 한국 영토에 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비장한 심정으로 독트린을 선포한 것이다.

이에 일본 측은 외상 담화를 통해 독도 문제로 양국 간의 감정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자의 입장은 입장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어업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검정은 학습지도요령 및 검정 기준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적절히 실시될 것이라 밝혔지만,<sup>23</sup> 한일 간의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2005년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sup>24</sup>에서 일본이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 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천명했다.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로 선포한 것은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같은 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참석한 정동채 문화부

22 『경향신문』, 2005. 3. 18(박래용, 「新독트린, 독립운동 심정으로 썼다」).

23 『경향신문』, 2005. 3. 18(미디어칸 뉴스팀, 「日 외상 담화 기준입장 견지」).

24 『오마이뉴스』, 2005. 3. 23(김당,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장관은 ‘죽도의 날’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일개 지자체의 무분별한 행위”라 비판하면서도 양국의 관계는 ‘현재와 미래의 숙명적 동반자’이고 ‘우정의 해’를 맞아 한일교류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독도 문제와 양국의 교류는 구분된다는 태도를 보였다.<sup>25</sup>

그 후 한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다. 2005년 4월 왜곡된 일본 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 같은 해 5월 “외교상 한국과의 정보 공유가 두렵다”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 6월 합의 없는 한일 정상회담,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이 이를 반증한다. 그해 11월 18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된 제1차 부산 APEC에서 다시 만난 한일 두 정상의 신경전은 여전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교과서, 독도 세 가지 만큼은 일본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고이즈미 총리는 참배에 이견을 보였다.

2000~2001년까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부근 영해 외측에서 6회에 걸쳐 수온 측정 활동한 것을 2006년 4월에 우리 측이 확인하게 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sup>26</sup>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인 만큼 독도 영유권의 국제분쟁화를 노린 일본의 각종 주장과 행태에 공개적으로 췌기를 박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었다.<sup>27</sup>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의 국제 분쟁화를 노린 일본의 주장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이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 인식, 그리고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독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기도 하였다.

그 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무렵 일본 외무성은 ‘죽도 문제

25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2005. 3. 23, 제252회-문화관광 제5차

26 『연합뉴스』, 2006. 4. 27(신호경, 「日 자위대도 2000년 독도주변 조사」).

27 『세계일보』, 2006. 4. 26(황용호, 「조용한 외교」 집고 정면대응 선언.),

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10 Issues of Takeshima)’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 영유권 문제’ 논쟁 재개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일본이 옛날부터 죽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옛날부터 죽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1905년 일본 정부가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을 통하여 일본의 죽도 영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등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를 주장하며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1999년 일본 외무성이 ‘죽도’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들의 ‘고유 영토’를 주장하고, 2004년부터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불법 점거’로 간주하며 독도에서 한국의 행위를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전략을 수정한 것과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다. 2005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은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된 상징적인 이슈였으며,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태도는 ‘죽도의 날’ 행사로 투영, 표출되었다. 그런데 양국 사이의 문제는 일방적인 것으로 볼 수 만은 없다. 2013년, 일본 정부가 ‘죽도의 날’ 행사에 대하여 태도를 바꾼 것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다분히 영향을 미쳤다.

## 2. 이명박 정부의 독도정책 변화에 대응한 ‘죽도의 날’ 행사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모토를 내걸고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명기하였고, 한편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섬’으로 명시하여 독도가 주권 미지정 지역인 것으로 표기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 방위성이 펴낸 2008년판 『방위백서』에는 ‘죽도는 일본 땅’이라 명시되었으며,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대신의 “죽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은 한국 정부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며 한일 간 독도의 ‘주장’ 차이와 관련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는 등 ‘교실 판’ ‘영토 도발’을 본격화했다. 이후 매년 공개되는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교과서가 늘어갔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로부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죽도[竹島]’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발언하여 국민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sup>28</sup>

이런 가운데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하고 일왕의 사죄까지 요구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sup>29</sup>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위헌(헌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기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배경으로, 일본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반발로 독도를 방문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김재한은 국가지도자의 특정한 대외정책, 즉 대내적 관심을 대외 위기로 돌려 대내적 결집을 도모한다는 속죄양(scapegoat) 가설로 설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2년 7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25.7~29.4%에 불과했는데, 8월 10일 독도 방문 직후 지지율이 34.7%로 상승했다는 것이다.<sup>30</sup> 어찌 되었든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독도 이슈 이전까지 한일 양국 사이에 유지되었던 ‘독도밀약 체제’ 또는 ‘1965년 체제’에는 분명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sup>31</sup>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각료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28 『경향신문』, 2012. 2. 20(이서화, 「일 ‘독도 일본땅 표기’에 MB ‘기다려달라’고 했다.」).

29 『동아일보』, 2012. 8. 18(배극민, 「212년 8월 18일자, [한-일 독도 충돌]영토 넘어 통화스와프-안보리 어깃장까지-日, 전방위 공세.」).

30 김재한, 조윤수, 임지혜, 2013, 「민주정치와 일본의 독도정책」, 『한국정치학회보』 47-5, 436쪽~437쪽.

31 이성환, 2015, 「일본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의 균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147쪽.

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급 회담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 초청의 중단뿐만 아니라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이성환은 2012년 8월 이래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 수준이 분쟁화를 넘어선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32</sup>

일본 정부는 2012년 11월 독도에 대한 광고와 문헌 조사 등을 담당하는 ‘죽도 문제 대책 준비팀’을 내각에 설치하였다. 그해 12월, 일본의 차기 총리로 당선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죽도의 날’ 행사의 정부 주최를 유보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사를 파견해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양국 간 화해 모드로 변하는 듯 보였다.<sup>33</sup> 그렇지만 아베 총리는 지지기반인 보수·우익의 독도 관련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sup>34</sup> 2013년 2월 5일, 예견했던 대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총리 산하에 설치하였다.

이어 아베 내각은 2013년 2월 22일, ‘죽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 대표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아베 내각의 움직임은 사실상 시마네현의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일본 외무성은 2013년 10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죽도에 관한 동영상’을 전 세계에 퍼뜨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일본의 『외교백서』와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직접 홍보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죽도의 날’ 행사는 분쟁을 형상화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독도 홍보의 확산 장치로 이용하였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 이러한 ‘간접적인’ 영토 도발

32 이성환, 2015, 위의 글, 160쪽.

33 『동아일보』, 2012. 12. 24(박형준, 「아베, 한국 이어 중에도 '화해의 손짓'」).

34 『경향신문』, 2013. 2. 5(서의동, 「아베, 정권차원 영토 야욕 노골화」).

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2013년 2월 일본 정부는 ‘죽도의 날’을 앞두고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 북방영토 4개 섬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였다.<sup>35</sup> 또한 일본 정부는 2014년 근현대사와 관련,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했다. 같은 해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명시되었다. 더욱이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 35종 중 27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되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문부과학성은 2017년 3월 독도에 대해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초등학교 ‘사회과 신 학습 지도요령’을 확정할 때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초등학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영유권 주장을 넣었다. 이외에도 2016년에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교 학습 지도요령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의무화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겼다.

이에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발표는 우리 정부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 비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sup>36</sup>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은 일본의 독도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박창건은 ‘죽도의 날’을 제정한 2005년부터 민주당 노다[野田] 내각의 2012년까지를 ‘독도 분쟁기’(2005년~2012년)로, 일본 정부차원에서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2013년부터 현재의 아베[阿部] 2차 내각을 ‘분쟁 확산기’로 구분한 바 있다.<sup>37</sup> 그런데 2013년의 ‘분쟁 확산기’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35 『문화일보』, 2013. 2. 5(최현미, [日, 독도 전담부서 총리 관저에 신설]).

36 『프레시안』, 2013. 2. 5(이재호, 「외교부 ‘일본, 독도 침탈 아직도 반성 안 해」).

37 『경북일보』, 2019. 4. 17(박창건, 「경북시론」 일본의 독도 정책-정치 행위로서의 항의).

### 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정부의 '대일 신 독트린' 이후, 2005년 4월 20일에 청와대 내에 '바른역사기획단'<sup>38</sup>이 구성되었다. 기획단은 시마네현의 이슈, 다카노 대사의 망언,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sup>39</sup>라는 일련의 이슈에서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었다. 당시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일회적이었던 것에 반해 독도와 관련한 상설 전담 기구가 설치된 것이다. 그런 만큼 기획단은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방안을 연구하는 성격의 기구였다. 결과론적으로 시마네현의 이슈는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며, 일본의 공격에 미리 대비하는 적극적인 방식의 방어체제를 갖추는 계기가 된 셈이다.

'죽도의 날'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22일, 첫 번째 행사가 시마네현의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의 인사는 물론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도 불참하고<sup>40</sup> 지역의 보수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30분가량 조용히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독도향우회 등 관련 단체 4곳이 시마네현에 방문하여 '죽도의 날'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sup>41</sup> 이와 달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비쳤다.<sup>42</sup> 첫 번째 기념일은 일본 중앙정부의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시마네현만의 독자적 행사로 치러졌다.

38 정식 명칭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이다.

39 다카노 대사의 망언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는 뒤에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40 『일본의회 회의록』, 2006년 3월 15일, 중의원-외무위원회 5호; 민주당의 마쓰바라진(松原仁)은 '죽도의 날' 첫 행사에 외무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질타했다. 시마네현의 초대에 불응한 점, 대리라도 다른 사람을 파견하여 외무장관을 대신 했어야 한다는 점, 외무장관의 참석은 죽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외무대신인 아소다로(麻生太郎)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날이므로 정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 국회 회기 중이라 참석하기 어려웠다는 것, 그렇지만 죽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생각은 참석여부와 관계없는 것을 피력했다.

41 『연합뉴스』, 2006. 2. 22(신지훈, 「日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강행」).

42 『한겨레신문』, 2006. 2. 22(이재훈, 「정부, '죽도의 날' 행사 유감 표명」).

우리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듯 단호하지만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2006년 5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일본은 ‘죽도의 날’ 1주년 행사를 강행함과 동시에 독도 주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일본 해양탐사선이 무단침입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렇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행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행위를 바로잡고 진정한 한·일, 한·중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특별위원회’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2005년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sup>43</sup> 이는 여야 간의 의견일치를 통해 그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다.<sup>44</sup>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활동하였다.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2차 회의에서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동북아 역사 및 독도 문제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체계적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상설전담기구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이 안건은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sup>45</sup> 하고 국회를 통과하여 2006년 5월 19일 관련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은 기존 ‘고구려연구재단’과 ‘바른역사기획단’을 흡수·통합하고 그해 9월 1일 김용덕 초대 이사장을 필두로 창립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 역사

43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2006. 5. 1, 제259회-국회운영 제4차.

44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2006. 6. 30, 제260회-제3차.

45 국회본회의회의록, 2006. 5. 2, 제259회-제9차.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사를 연구 및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시마네현이 만든 이슈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문제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동북아 국제관계와 영토 문제 연구에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동하였다.

### III.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竹島)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국회 측 대응

#### 1.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 과정과 국회의 움직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독도수호대였다. 시마네현 의회가 ‘죽도의 날’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04년 12월 10일,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청원서에 강창일(열린우리당), 정병국(한나라당), 김원웅(열린우리당) 등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였다. 청원서의 내용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선언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공포된 1900년 10월 25일을 근거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이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주요 논거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객관적으로 반박,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표명하고자 한 것이다.<sup>46</sup> 이어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해 온라인([www.tokdo.co.kr](http://www.tokdo.co.kr))을 통해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전국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독도의 날’ 제정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서명운동을 재외동포포까지 확대하였

46 『오마이뉴스』, 2004. 12. 11(김정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다.<sup>47</sup>

이런 가운데 2005년 1월 13일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의원연맹이 2월 정례의회에서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sup>48</sup> 이에 맞서 독도수호대는 2005년 1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49</sup>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이번 일체의 망동은 일본 군국주의와 영토침탈 야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낸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동시에 본격적인 아시아 침략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또한 독도수호대는 ‘2월 22일’은 1905년 당시 시마네현이 무주지인 독도를 편입했다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발표된 날이지만, 상대국인 한국에 서면 통고와 시마네현 자체도 고지가 없이 ‘날치기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원천적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한국은 이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에 정식 편입되었다며 일본의 ‘무주지 선점 원칙’은 법리상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TV 광고를 시작하였다. 광고는 ‘돌려 달라! 섬과 바다’란 제목의 30초 분량으로, 독도의 위치와 역사를 설명하면서 2005년은 ‘독도’를 ‘죽도’로 명명해 일본 땅으로 고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sup>50</sup> 이에 경상북도지사 이의근은 다음날인 2005년 2월 4일 항의하는 서안을 시마네현의 지사 쓰미다 노부요시에게 발송하였다.<sup>51</sup> 이어 울릉군의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가 나서서 독도 수호 촉구 운동을 전개하고 항의한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2일 ‘죽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상

47 『매일신문』, 2004. 12. 22(허영국, 「죽도의날 제정·1천만명 서명운동」).

48 『프레시안』, 2005. 1. 14(김한규, 「일자방의회 ‘죽도의 날’ 제정 파문」).

49 『매일신문』, 2005. 1. 18(허영국, 「죽도 편입 원천적인 무효’ 독도수호대 성명서 발표」).

50 『국민일보』, 2005. 2. 3(김재산, 「日서 ‘독도 돌려달라’ TV광고」).

51 『연합뉴스』, 2005. 2. 4(미디어칸 뉴스팀, 「경북도지사, 시마네현지사에 항의서한」).

정하였다. 더욱이 다음 날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의 일본 이름인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하여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반감을 샀으며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일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측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sup>52</sup>

2005년 2월 24일,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였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주한일본대사가 외교적 관계를 깨고 독도 영유권을 주재국에서 언급한 배경과 이에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가 낮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같은 당의 김학원 의원은 이에 덧붙여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움직임과 다카노 대사의 발언은 장기적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위원과 같은 당의 임채정 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견지했다.

이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 측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만 그는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면 독도가 마치 한일 간의 분쟁지역인 것처럼 국제 사회에 비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내비쳤다.<sup>53</sup> 실제 우리 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로 그쳤다.

2005년 2월 24일 같은 날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죽도의 날’ 조례안 상정과 다카노 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 도서관 측에 독도 자료실을 확충하여 많은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해 2월 28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대응책을 논의했다.

52 『경향신문』, 2005. 2. 26(김효중, 「여야, 독도방언 규탄 ‘한목소리’」).

53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2005. 2. 24, 제252회-통일외교통상 제3차.

〈표 1〉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전후의 이슈

날짜	국가	주체	내용
2004.03.04	일본	시마네현 의원 연맹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 현 의회에 제출.
2004.10.06	일본	시마네현 의회	‘죽도의 날’ 제정 요청 청원서를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내각총리대신, 총무대신, 외무대신, 문부과학 대신,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2005.01.19	한국	독도수호대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추진에 맞선 성명서 발표.
2005.02.04	한국	경북 도지사 (이의근)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하여 시마네현에 항의 서안 제출.
2005.01.13	일본	교도통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의원연맹이 2월 정례의회에서 ‘죽도의 날’ 제정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기사 보도.
2005.02.21	일본	시마네현 의회	‘죽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시마네현 의회 사무국에 제출.
2005.02.22	일본	시마네현 의회	‘죽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 상정.
2005.02.23	한국	경북 도지사 (이의근)	‘시마네현에서 죽도의 날 제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는 성명서 발표,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공무원 즉각 소환, 경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시마네현 공무원에 대해 출근 금지.
2005.02.23	일본	다카노 주한 일 대사	다카노 주한일본대사 “독도의 일본 이름인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발언.
2005.03.16	일본	시마네현 의회	‘죽도의 날’ 제정 조례안 통과.

이미경 위원장은 다카노 주한일본대사의 소환과 ‘죽도의 날’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면서 ‘한일 우정의 해’ 행사의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주한일본대사의 추방과 주일한국대사의 소환을 주장하는가 하면,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한일 우정의 해’ 개최에 불만을 표시하며, 을사늑약 100주년과 2차 대전 종전 60주년, 해방 60주년 등을 종합한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4</sup>

이렇듯 국회의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몇 명의 의원들이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몇 개의 대응책이라야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주한일본대사의 거취라든가 시마네현의 조례안 철회 등과 같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54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2005. 2. 28, 제252회-문화관광 제4차.

이러한 가운데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죽도의 날’ 조례안이 통과되고, ‘일본 영토 지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이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고 1987년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국회 차원에서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과정에서 ‘죽도의 날’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우리의 정부나 국회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간과, 묵인했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나 국회가 즉각적인 대응에 급급했던 것을 보면 일본의 예견된 행위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2. ‘독도특위’ 구성

시마네현의 이슈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은 느슨했다. 조례안이 통과된 지 5일이 지난 2005년 3월 21일에서야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발표와 주한일본대사의 망언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일본의 의도된 도발인지를 정부 측에 질의하였다. 이에 반기문 외교통상부장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 보통국가화, 국제정세에 편승한 것이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도로는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sup>55</sup>

그 뒤 2005년 4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돌연 후소샤(扶桑社)가 펴낸 2006년도 중학교용 역사 교과서를 비롯해 8종의 역사 교과서와 공민, 지리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역사 왜곡이 거의 시정되지 않은 채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sup>56</sup> ‘죽도의 날’ 조례안 통과에 이어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지리 교과서의 검정이 통과되자, 바로 다음 날 4월 6일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김부

55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2005, 3, 21, 제252회-통일외교통상 제4차.

56 시사상식사전: 일본교과서 파동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442&cid=43667&categoryId=43667>

겸 위원, 임태희 위원이 서면 동의한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다. 이 안은 곧바로 본 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207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7</sup>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문〉

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행위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 이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장해 왔고, 급기야는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이른바 ‘죽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각종 교과서 검정본들이 검정을 통과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 운동을 전국적으로 촉발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일본의 행위는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고 한·일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크게 해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영토주권의 차원에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략)

이에 따라 국회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주장을 바로잡고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통한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독도수호와

57 국회본회의회의록, 2005. 4. 6, 제253회-제1차, 이하 ‘독도특위’라 칭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독도특위’ 대표단은 2005년 4월 12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였지만 형식적인 항의 수준에 불과하였다. 당시 ‘독도특위’는 독도 유인화 입법화, 제2차 한일어업협정 재체결, 아시아 각국 시민단체와 역사 교과서 왜곡 연대 추진 등으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2005년 4월 26일에 처음 열린 ‘독도특위’ 특별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다. 다만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독도의 날 제정’, ‘독도 의용수비대에 대한 대우’, ‘독도개발과 향후 개발계획’ 등을 담은 「독도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는 정도의 의미 있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반일감정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한일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에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측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독도의 실효지배 강화를 목적에서 독도 입도를 허용하겠다고 하면서도 한일어업협정 폐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보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일어업협정 폐기에 대해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분명한 선을 긋는 태도였다. 다만 정부는 민간 차원의 독도연구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며 독도 표기와 영유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독도특위’는 시마네현의 이슈 직후 구체적으로 나타난 국회의 대응책이며 대응기구였다. 그런데 이 기구는 단 한 번의 일본 항의 방문과 단 한 번의 회의를 시작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무성의한 국정 활동 또는 일개 현이 만든 ‘죽도의 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중 가운데 하나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 2013년 7월, ‘동북아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sup>58</sup>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 위안부와 관련된 일부 일본 정치인의 역사왜곡 발언, 왜곡된 역사의 교과서 수록 문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도발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다. 하지만 2013년 2월부터 일본 정부가 차관급을 ‘죽도의 날’ 행사에 참석시키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2014년 2월 14일, ‘동북아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향후 이로 말미암아 한일 갈등이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응방침으로 “대외적으로 영토 수호 측면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내적으로는 역사 및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sup>59</sup>

1년이 지난 2015년은 특히 종전 70주년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2월 13일 「동북아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유튜브를 통한 홍보영상의 확산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가감 없이 전달도 하고 공개적으로도 발표하고 있다”는 정도에 그쳤다.<sup>60</sup> 2월 27일에 열린 ‘동북아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그해의 ‘죽도의 날’ 행사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도 강도를 더 높여 가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sup>61</sup>

이렇듯 ‘동북아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도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강세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와 관련한 특위도 만들어지

58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2013. 7. 2, 제316회-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 제1차.

59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2014. 2. 14, 제322회-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 제13차.

60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2015. 2. 13, 제331회-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 제26차.

61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2015. 2. 27, 제331회-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 제27차.

지 않았다. 2012년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돌아선 직후, 2013년 ‘죽도의 날’ 행사가 일본 정부 차원의 행사로 사실상 격상된 것을 학습하고 반영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 3. 독도관련 법률 제정

‘죽도의 날’에 대응하여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제안은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다. 가장 먼저 이를 제안한 사람은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었다. 하지만 2004년 12월 10일 그가 대표 소개한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은 국회에 계류 중이었고, 2005년 5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원웅·정병국·강창일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된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일본의 지방의회의 행위에 대해 우리 중앙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것은 과잉 대응의 측면이 있고, 국제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격에 맞게 경상북도 등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하지 않았다. ‘독도의 날’ 제정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고, 정부 내의 「바른역사 기획단」이 이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맡겨달라는 당시 오행교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sup>62</sup> 결국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는데, 이는 정부의 뜻을 국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그 뒤 2005년 7월 4일,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독도의 날’ 조례가 제정되었다. 국회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제정된 것인데, 시마네현의 이슈에 대응하여 경상북도가 격을 맞춘 것이다.

한편 정병국 의원이 제안하였던 ‘독도 의용수비대에 대한 대우’와 ‘독도 개발과 향후 개발계획’은 2005년 5월 18일, 제정 공포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이 법률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

62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2005. 5. 2, 제253회-행정자치 제4차.

독도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sup>63</sup> 향후 독도 주변 해역 및 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 운영의 토대가 되었다. 이어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대통령령의 시행령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라 2009년 3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다. 사업회는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을 통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우리 땅 독도’ 산문 공모전, 독도사랑 사진전시회, 독도의용수비대 SNS 기자단 운영, 독도의용수비대의 홍보자료 제작, 독도사랑 연주회 등의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다.

둘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기본(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셋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독도가 우리의 영유권이라는 기본적 전제하에서 제정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sup>64</sup>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독도’와 관련해서 현행 형법 7건, 행정규칙 2건, 자치법규 13건이 검색된다. 이러한 법령 및 규칙은 2005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시마네현의 이

63 국회본회의회의록, 2005. 6. 7. 제254회-제2차.

64 <http://www.law.go.kr/unSc.do?tabMenuId=tab73&query=%EB%8F%85%EB%8F%84>

슈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표상하는 법률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법령들은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는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 독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

시행일	법령 명칭	령
2011.08.0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법률 제11028호
2011.11.30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34호
2012.07.0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2014.03.1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458호, 2014.
2014.07.0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7호
2017.07.2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8.07.0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25호

#### 4. ‘독도의 날’ 제정 재논의

2008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 18인이 2009년 8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독도영토수호 대책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sup>65</sup> 이는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독도특위가 구성된 이유는 2008년 7월,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문제를 언급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한국과 영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에둘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sup>66</sup> 게다가 그해 7월 25일,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이 GeoNet 사이트상에서 독도의 영유국 표기를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sup>67</sup>’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5일 만에 원상회복되었지만,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한 대책

65 국회본회의회의록, 2008, 8, 26, 제277회-제2차.

66 『한국교육신문』, 2018, 2, 19(박은중, 「일본의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고시,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상(虛像)」).

67 『NEWSIS』, 2008, 7, 31(최철호, 「부시의 독도문제 원상회복 지시 배경은?」).

마련과 외국의 올바른 독도 및 영유권 표기 등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필요성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었다. 특별위원회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 일본의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왜곡하려는 움직임 등의 대응을 주요 안건으로 삼았다.

2008년 8월 14일,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독도수호대 김집구 대표 외 59,267명과 함께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3년 만에 다시 제기된 ‘독도의 날’ 제정이 청원된 것이다. 2008년 9월 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한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마네현과 유사한 대응을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sup>68</sup>

그 뒤에도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은 계속되었다. 박영아 의원이 2009년 1월 13일, ‘독도영토수호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독도의 날’ 제정 청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sup>69</sup> 2010년 4월 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sup>70</sup> 그해 6월 28일에 ‘독도영토수호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였다.<sup>71</sup> 일본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벌어진 이슈에 대해 한국의 중앙정부가 대응하면, 결국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은 2004년 12월 이래 여러 차례 계속되었으나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유보되었다. 현재 ‘독도의 날’은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지정한 기념일로,<sup>72</sup>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

68 교육과학기술위원회회의록, 2008. 9. 8, 제278회 제3차.

69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2009. 1. 13, 제280회 제4차.

70 국회본회의록, 2010. 1. 9, 제289회 제6차.

71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2010. 6. 28, 제291회 제2차.

72 시사상식사전: 독도의 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9932&cid=43667&categoryId=43667>)

고자 한 것이다. ‘독도의 날’ 제정이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이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논리 등이 그것이다.

#### IV. 맺음말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홍보의 확산 장치로 활용되었다. 2005년 ‘죽도의 날’ 조례안 통과 직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후소사 등 일부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판정을 내렸다. 2013년부터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등 과거의 침략 행위 등에 대한 왜곡의 강도를 높여갔다. 이는 아베 정부가 시마네현 차원의 행사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죽도의 날’로 승격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죽도의 날’ 행사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갈 때마다 활용된 정치적 퍼포먼스였던 셈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책은 치밀하게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전부터 일본에서는 이날을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정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측의 마땅한 대응책을 발견하기 힘들다. 독도수비대 등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엿보이지만 정부나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이후 정부는 ‘대일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지만 그 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내 여론을 잠재우는 데 효과를 보았지만 한일 간의 외교는 더욱 꼬여만 갔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행위를 비롯한 역사 왜곡을 확산하는 도구로 ‘죽도의 날’을 이용하였다. 독도를 위시한 양국의 불편한 상황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지는 청원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일본 지방정부의 조례에 대응하여 우리 중앙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것은 일본과의 ‘조

용한 외교’에 방해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005년의 이슈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를 계기로 ‘동북아역사재단’이 탄생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된다. 동북아 역사 및 독도 문제에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립된 이 상설전담기구도 지금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관련한 여러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집중력이 약해져서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외에도 ‘죽도의 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대통령령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관련 사업들이 현재 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와 관련된 법률들을 재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유튜브를 통한 홍보영상의 확산 등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더욱 확대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 일본의 영토 야욕과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별다른 활동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2019년, ‘죽도의 날’ 행사 직전에 일본 정부는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해역 항해를 트집 잡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 영토 문제는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을 성격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2005년 처음 ‘죽도의 날’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단호하지만 조용한 외교를 택했던 정부의 대응을 다시 보는 듯하다. 2020년에도 일본은 ‘죽도의 날’ 행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 전 일본의 움직임과 행사의 규모와 내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죽도의 날’ 행사가 일본 정부의 의도를 표출하는 데 활용되는 정치적 퍼포먼스라면, 우리에게는 향후 그들의 역사 및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미리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 국문초록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竹島)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2월 22일에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국회회의록』에는 당시의 현안과 이를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대응 및 정책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죽도의 날’ 제정 전후의 『국회회의록』을 통하여 조례 제정을 둘러싼 국회 및 정부의 태도와 대응을 연구하였다.

2005년 ‘죽도의 날’ 조례안 통과 직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후소사(扶桑社) 등 일부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영토 문제에는 단호하지만, 조용한 외교를 택했다. ‘대일 신(對日 新) 독트린’ 발표와 「바른역사기획단」 구성, 「동북아역사재단」의 탄생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는 소위 아베 정부의 ‘죽도의 날’로 승격되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후, 일본은 과거의 침략 행위 등에 대한 왜곡의 강도를 높여갔다. ‘죽도의 날’ 행사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갈 때마다 활용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

‘죽도의 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홍보의 확산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005년 이래 ‘죽도의 날’ 행사를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은 일본의 독도를 위시한 영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020년에도 일본은 ‘죽도의 날’ 행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 전 일본의 움직임과 행사의 규모와 내용을 직시한다면, 향후 그들의 역사 및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감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시마네현, 죽도의 날[竹島の日], 독도, 『국회회의록』, 대일 신(對日新) 독트린, 「바른역사기획단」, 「동북아역사재단」, 이명박, 독도 영유권 문제, 한일관계

## Abstract

Korea's Respons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akeshima Day" in Shimane Prefecture, Japan

Moon, Sangmyeoung  
(Sungshin University)

On March 16, 2005, Shimane Prefecture established the "Takeshima Day" as an ordinance. Since 2006, the event has been held on February 22 every year. Abe Shinzo of Japan has dispatched government personnel since 2013.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tain details of the current issues, and the responses and polici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explores the attitudes and respons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rough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akeshima Day" in Japan.

Immediately after passing the "Takeshima Day" Ordinance in 2005,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decision on the acceptance of some textbooks. At that time, the Korean government showed decisive yet quiet diplomacy on the territorial issue. The announcement of the "New Doctrine for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 History Planning Team, and the birth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e examples that show how the Korean government responded to the issue.

However, after President Lee Myung-bak's visit to Dokdo in 2013, Shimane Prefecture's "Takeshima Day" event was promoted to the Abe administration's "Takeshima Day." It was a result of change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Since then, Japan has increased the level of distortion of its past aggression. The "Takeshima Day" was a political performance that was used whenever Japan attempted to strengthen its claim over Dokdo.

The Takeshima Day is being used as a means to promote Japan's claim on the sovereignty over Dokdo. Japan's move toward the Takeshima Day since 2005 is a metaphorical representation of Japan's position on the territorial issues, including the Dokdo issue. The Takeshima Day event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20. The scale and directions of Japan's activities in the lead up to this event will provide tips to understand the country's attitude toward history and the Dokdo issue, which will help Korea to actively respond to what unfolds.

Keywords

Takeshima Day, Shimane Prefecture, Dokdo, territorial issue of Dokdo,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ew Doctrine for Japan, Correct History Planning Team, Korea-Japan relations, Lee Myung-bak

### 참고문헌

『국회회의록』 (2005년~2019년)』

『일본의회 회의록』, 2006년 3월 15일, 중의원-외무위원회 5호.

김재한, 조운수, 임지혜, 2013, 「민주정치와 일본의 독도정책」, 『한국정치학 회보』 47-5.

문상명, 2019,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모순-일본 의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51-1.

박창건, 2009, 「죽도(竹島)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 『한국과 국제 정치』 25-3.

배진수, 2016,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와 일본의 도발 패턴-시기별 · 이슈 별 국제정치적 변수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21.

이성환, 2015, 「일본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의 균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현혜경, 2013,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의 기념 의례 연구-‘죽도의 날’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3-2.

『경북일보』, 2019. 4. 17(박창건, 「[경북시론] 일본의 독도 정책-정치 행위로서의 항의」).

『경향신문』, 2005. 2. 26(김효중, 「여야, 독도망언 규탄 ‘한목소리」).

『경향신문』, 2005. 3. 18(미디어칸 뉴스팀, 「日 외상 담화 ‘기존입장 견지」).

『경향신문』, 2005. 3. 18(박래용, 「新독트린, 독립운동 심정으로 썼다」).

『경향신문』, 2012. 2. 20(이서화, 「일 ‘독도 일본땅 표기’에 MB ‘기다려달라’고 했다」).

『경향신문』, 2013. 2. 5(서의동, 「아베, 정권차원 영토 야욕 노골화」).

『국민일보』, 2005. 2. 3(김재산, 「日서 ‘독도 돌려달라’ TV광고」).

『동아일보』, 2012. 8. 18(배극인, 「212년 8월 18일자, [한-일 독도 충돌]영토 넘어 통화 스위프-안보리 어깃장까지… 日, 전방위 공세」).

『동아일보』, 2012. 12. 24(박형준, 「아베, 한국 이어 마에도 ‘화해의 손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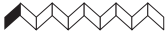
『매일신문』, 2004. 12. 22(허영국, 「독도의날 제정 · 1천만명 서명운동」).

『매일신문』, 2005. 1. 18(허영국, 「죽도 편입 원천적인 무효’ 독도수호대 성명서 발표」).

『문화일보』, 2013. 2. 5(최현미, 「日, 독도 전담부서 총리 관저에 신설」).

##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竹島の日]’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 『세계일보』, 2006. 4. 26(황용호, 「‘조용한 외교’ 집고 정면대응 선언」).
- 『연합뉴스』, 2004. 3. 4(신지홍, 「日 지방의원 ‘죽도의 날’ 제정 의견 제출」).
- 『연합뉴스』, 2005. 2. 4(미디어칸 뉴스팀, 「경북도지사, 시마네현지사에 항의서한」).
- 『연합뉴스』, 2005. 3. 17(연합뉴스, 「정부 한일관계 성명 전문」).
- 『연합뉴스』, 2006. 2. 22(신지홍, 「日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강행」).
- 『연합뉴스』, 2006. 4. 27(신호경, 「日 자위대도 2000년 독도주변 조사」).
- 『오마이뉴스』, 2004. 12. 11(김접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 『오마이뉴스』, 2005. 3. 23(김당,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 『프레시안』, 2005. 1. 14(김한규, 「日지방의회 ‘죽도의 날’ 제정 파문」).
- 『프레시안』, 2013. 2. 5(이재호, 「외교부 ‘일본, 독도 침탈 아직도 반성 안 해」).
- 『한겨레신문』, 2006. 2. 22(이재훈, 「정부, ‘죽도의 날’ 행사 유감 표명」).
- 『한국교육신문』, 2018. 2. 19(박은중, 「일본의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고시,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상(虛像)」).
- 『NEWSIS』, 2008. 7. 31(최철호, 「부시의 독도문제 원상회복 지시 배경은?」).
- 『NEWSIS』, 2019. 2. 22(김혜경, 「日 오늘 ‘죽도의 날’ 행사…“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



#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김병연 대구 다사고등학교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머리말

일본은 2017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2018년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 및 고시하였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명기하였다. 일본의 독도 관련 왜곡된 영토 교육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지리)에 처음으로 '죽도(竹島)'가 명기되었고, 이후 2009년 고등학교 개정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간접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어서 2014년 1월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토대로 일본의 고유 영토인 죽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고등학교 지리과 교과서가 2015년, 2016년, 2017년 검정에 합격되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교육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이나 학습지도요

---

\* 논문 투고일: 2019. 4. 21. 심사 완료일: 2019. 5. 20. 게재 확정일: 2019. 5. 21.

령 해설에 기반하여 편찬된 검정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수, 2013; 남상구, 2016; 박병섭, 2011; 심정보, 2008; 서종진, 2014; 신주백, 2010; 이우진, 2018; 황용섭, 2017; 홍성근, 2017; 홍성근·서종진, 2018). 또한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분석한 송호열(2011, 2012),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지리교과서에서 중등 지리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분석한 서태열(2012), 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관련 내용을 고찰한 심정보(2017),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특징과 이의 분석을 통한 교육적 논의를 시도한 연구(권오현·이종호, 2015, 2016; 김민정·이자원, 2013; 심정보, 2013; 이하나·조철기, 2011; 조철기, 2015)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는 일본의 지리 학습지도요령이나 교과서와 관련한 논의는 2008, 2009년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이고, 2012, 2013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여타의 사회과 과목에 비해 영토교육의 측면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일본 중등 지리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또한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5~2017년에 걸쳐 검정된 일본의 중·고등학교 지리교과서와 관련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분석하여 일본의 중등 지리교육에 반영된 일본의 왜곡된 독도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독도 영토교육의 방향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분석했다. 특히 일본 중·고등학교 지리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분석은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에 왜곡된 독도교육의 방향이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시기부터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분석 대상 교과서는 2015~2016년에 걸쳐 검정이 이루어진 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이고 해당 교과서들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에 반영된 일본의 왜곡된 독도인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II. 중학교 사회과 ‘지리분야’ 의 독도교육 내용 분석

### 1. ‘지리분야’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중학교의 경우 2008년에 개정된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2008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처음으로 독도가 명기된 교과는 ‘지리’이다. 이는 독도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명기되었다는 점 때문에 일본의 독도와 관련한 영토교육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사회편’의 ‘지리분야’에서 ‘(2)일본의 여러 지역 (가)일본의 지역 구성’ 단원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죽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고,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文部科學省, 2008)”고 기술되어 있다. 위의 진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약한 기술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어 일본은 독도를 러시아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곳으로 간주하는 북방 영토와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방 영토와 한국의 독도를 영토문제로서 동등한 자리에 놓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독도를 공식적인 영토문제로 거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4년 1월에 개정된 현행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지리분야’를 살펴보면 2008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비해 그 내용이 많이 증가하였고 ‘불법점거’, ‘고유 영토’, ‘한국에 항의’와 같이 강도 높은 용어와 서술을 사용하면 독도 관련 영토교육에 있어 그 내용을 상세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서 명기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2008년 학습지도요령 해설보다 강

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 4종 중 4종 모두 2014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기반해 ‘독도의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표 1〉 중학교 지리분야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독도 관련 내용 변화

시기	학습지도요령 해설
2008	북방 영토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독도(죽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 영토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2014	… 죽도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키면서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다루고,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영역에 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7	영역의 범위가 변화 및 특색에 대하여, 일본이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죽도와 북방 영토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때 센카쿠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이고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룰 것… 죽도와 북방 영토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어서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 이들 영토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루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하여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 文部科學省, 2008, 2014, 2017

2017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17년 3월 31일에 확정, 공시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6월 21일에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고시되었다. 현재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없지만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를 명기하였고 독도를 영토문제로서 다루면서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취급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살펴보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으며, ‘죽도와 관련한 영토문제에 대하여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2014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의 내용 논리는 2017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 중학교 지리분야 학습지도요령 내용 비교

시기	단원명	학습지도요령
2008		언급 없음
2017	A. 세계와 일본의 지역구성 (1) 지역 구성 ① 세계의 지역 구성 ② 일본의 지역 구성	죽도와 북방 영토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때 센카쿠제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룰 것.

자료: 文部科學省, 2008, 2017

## 2. 지리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가 명기되면서 교과서에서는 독도 관련 기술이 증가하였다. 2015년 김정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는 4종(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동경서적, 교육출판)으로, 이들 교과서는 독도 관련 내용이 2011년 김정 교과서보다 양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영토교육을 위한 시각적 자료로서 다양한 사진과 지도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하여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주장이 대립’, ‘한국의 점거(점령)’라는 표현에서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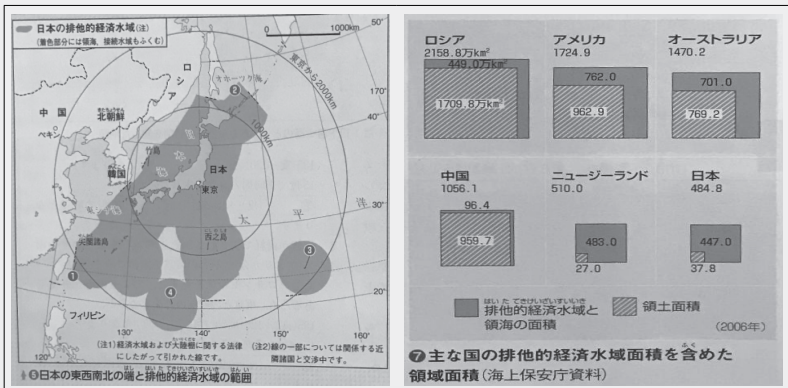
2015년 김정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서는 독도의 위치와 소속된 행정구역으로서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를 명기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죽도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나타낸 지도 내에 독도를 포함시키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황용섭(2017)은 2011년 김정본 교과서에서는 ‘경제수역’이라고 하고 2015년 김정본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확하게 표기한 것을 확인하면서 이것을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서 설명하고 있다.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한 영토교육은 ‘독도 영유권의 인식 강화’와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의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독도를 일본해에 위치한 자국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의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

##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위와 독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나 독도가 소속된 행정구역이 명기되어 있는 독도 관련 사진을 제시하여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의식을 명확히 주지시키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4종 교과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내에 독도를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국의 해양 범위를 인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내에 있는 자국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종 교과서에서 모두 <그림 2>와 같은 ‘주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국토면적이 약 38만km<sup>2</sup>임에 비해 배타적 경제수역(영해 포함)이 438만km<sup>2</sup>인 것을 타 국가와 비교 제시함으로써 경제수역이 일본의 범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되면 영해를 포함한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황용섭, 2017)”을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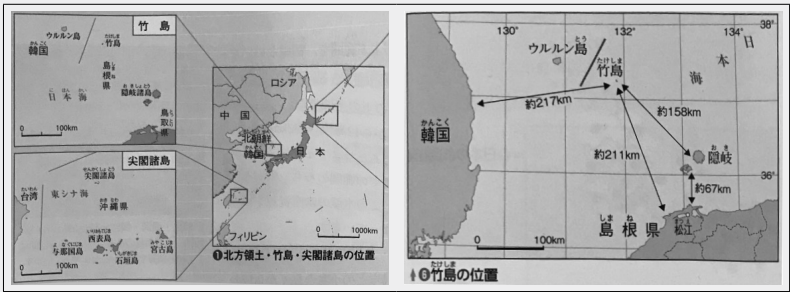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범위 (제국서원)

<그림 2> 주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 (교육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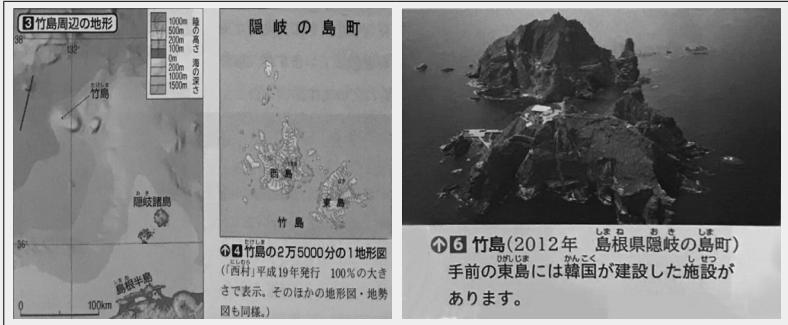
4종 교과서 모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설정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해 확인시키고 있다. 동경서적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교과서는 <그림 3>에서 보듯이 독도의 위치를 나타낸 별도의 지도를 통하여 제시

하고 있고, 특히 제국서원의 독도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에서는 독도가 본토를 기준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키에서 독도까지의 거리(158km)만을 제시하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87km)는 의도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다. 동경서적은 <그림 4>와 같이 ‘죽도 주변의 지형’을 나타낸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키노시마초’라는 제목을 단 지도 내에 독도라고 명기하고 있고 서도와 동도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독도의 행정구역명을 제시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처럼 죽도라는 제목을 단 독도 사진을 제시하고 일본의 영토로서 당연히 인식하게끔 그 아래에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라는 행정구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도와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보여주려는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독도의 위치(좌: 일본문교출판, 우: 제국서원)



〈그림 4〉 독도의 지형도(동경서적)

〈그림 5〉 독도 사진(교육출판)

다음으로 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독도와 관련된 서술에서 일본은 이미 과거부터 죽도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동경서적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교과서는 죽도 주변의 풍부한 어장에서는 17세기 초에 일본인이 어업 등에 이용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국서원에서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키섬 주민들이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 에도시대 초기에는 일본인에 의해 죽도에서 어업이 행해져 왔고, 메이지 30년대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 주민들에 의해 강치 사냥이나 전복, 꽃게잡이가 행해져 왔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동경서적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는데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주장해 죽도를 탈취하고 있다는 논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독도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시설을 만들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일본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한국에 대해 여러 번 엄중히 항의하고 있으며 또한 죽도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하도록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국이 영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국제법에 기반하여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표 3〉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

교과서	독도 관련 서술 내용
교육출판	<p>(본문)                      죽도 주변에서는 에도시대 초부터 일본인이 어업을 행해왔다. 1905년에 정부는 죽도를 국제법에 근거해 시마네현에 편입시켰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하였다. 1952년 이후, 한국이 죽도를 자국의 영토로서 주장하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점거해오고 있다. 일본은 이에 항의를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p> <p>(사진)                      죽도(2012년,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동도에는 한국이 건설한 시설이 있다.</p>
일본문교출판	<p>(본문)                      • (죽도) 죽도(시마네현)는 혼슈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일본해에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죽도 주변의 풍부한 어장에서 17세기 초에 일본인이 어업 등에 이용했다. 1905년에는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죽도를 취하고,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시설을 만들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몇 번이나 엄중히 항의했다.                      • (영토문제의 해결을 향해) 죽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p> <p>(사진)                      • 죽도(2012년,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동도에는 한국이 건설한 시설이 찍혀 있다.                      • 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제시하는 지도의 전시(2014년, 시마네현 마쓰에시)</p>
동경서적	<p>(본문)                      (영토를 둘러싼 문제) 또, 일본 해상의 죽도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하는 한편, 국제기관을 이용한 해결을 호소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일본 영토를 구성하는 섬들-독도, 북방 영토, 센카쿠 제도) 죽도는 오키제도의 북서쪽 약 150km에 있다.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해 있는 섬들로, 일본해 중앙의 바다에 있고, 거대한 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래된 화산이 토대가 되어 있지만 주위가 파도에 의해 침식된 것으로, 현재와 같은 단애에 둘러싸인 지형이 되었다. 죽도는 몇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심은 표고 168m의 서도(남도)와 표고 97m의 동도(여도)다. 죽도 주변의 바다는 동지나해에서 흘러오는 난류인 대마 해류와 사할린에서 흘러오는 한류인 리만 해류가 만나는 조목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와 오징어, 전갱이라 불리는 회유 어 등 풍부한 어업자원에 혜택을 받고 있다.</p> <p>(사진)                      죽도(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2012년)                      (지도)                      죽도 주변의 지형                      죽도의 25,000분의 1 지형도</p>

제국서원	<p>(본문)</p> <p>(죽도) 일본해에 있는 죽도는 17세기에는 일본인들이 어업을 행했다. 1905년에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했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반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해양경찰대를 배치하고, 등대와 부두 등을 건설해 불법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의 대화를 3번이나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p> <p>(사진)</p> <p>죽도(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2011년 촬영)</p> <p>오키노시마민들이 독도에서 고기잡이하는 모습(쇼와 초기 촬영)</p> <p>(지도)</p> <p>죽도의 위치</p> <p>(어업이 활발했던 과거의 죽도)</p> <p>죽도는 식수 등을 얻기가 어려워 사람이 살기에 불편하지만, 난류인 쓰시마 해류와 한류인 리만 해류가 만나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바다는 옛날부터 다양한 어패류 채취가 풍부한 어장이었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일본인에 의해 죽도에서 어업이 행해져 왔고 메이지 30년대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 주민들에 의해 강제 사냥이나 전복, 꽃게잡이가 행해져 왔다. 현재는 죽도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본의 어선은 거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다.</p>
------	--

### III. 고등학교 지리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교과서의 독도 교육 내용 분석

#### 1. 지리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일반적으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작성은 10년 마다 이루어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이루어진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에 이례적으로 2008 중학교, 2009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 내용의 핵심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독도가 처음으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명기되었다는 점 때문에 일본의 독도와 관련한 영토교육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은 독도를 러시아에 의해 불법점거 되고 있는 곳으로 간주하는 북방 영토와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표 1>에서와 같이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나 일본

의 영토문제를 언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독도’와 관련한 일본 고유 영토론 주장과 관련한 진술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표 4〉 2009 개정 지리 A/B 학습지도요령의 영토 관련 내용

과목	학습지도요령
지리A	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 간의 연결 등에 대해서 파악하게 한다.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
지리B	현대 세계의 민족, 영토문제를 대관시킨다. 영토문제의 현상과 동향을 다룰 때에 일본의 영토 문제도 언급할 것.

자료: 文部科學省, 2009.

2009년에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학습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에는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의 학습을 토대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과서 집필에 구속력을 가지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독도 교육의 준거를 중학교 학습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독도 교육 또한 중학교의 독도 교육의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2009 개정 지리 A/B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영토 관련 내용

과목	단원명	학습지도요령 해설
지리A	(1) 현대 세계의 특색과 제과제의 지리적 고찰 (가) 지구의와 지도에서 파악한 현대 세계	… 북방 영토 등 우리나라(일본)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하여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지리B	(2) 현대 세계의 계통지리적 고찰 (나) 생활문화, 민족, 종교	… 북방 영토 등 우리나라(일본)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하여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자료: 文部科學省, 2009.

더 나아가 2014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교육 방향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독도 관련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

##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에서 2008, 2009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차이를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영토교육 방향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지만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에 항의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정당한 주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와 같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직접적으로 명기한 것은 영토교육 강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2014 개정 지리 A/B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영토 관련 내용

과목	단원명	학습지도요령 해설
지리A	(1) 현대 세계의 특색과 제과제의 지리적 고찰 (가) 지구의와 지도에서 파악한 현대 세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북방 영토 및 독도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각각 러시아 연방과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바탕으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리B	(2) 현대 세계의 계통지리적 고찰 (나) 생활문화, 민족, 종교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북방 영토 및 독도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각각 러시아 연방과 한국의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바탕으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文部科學省, 2014.

201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18년 3월 30일에 확정 공표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7월 17일에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고시되었다. 201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처음으로 왜곡된 독도교육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지리뿐만 아니라 공민 분야, 역사 분야의 학습지도요령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역사 분야’의 ‘역사총합’과 ‘일본사탐구’에서는 “북방 영토를 언급하는 것과 함께 독도, 센카쿠 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민 분야’의 신설된 ‘공공’ 과목과 ‘정치경제’ 과목에서는 “우리나라(일본)가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북방 영토에 관해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 제도

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언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8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2014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언급되었던 독도교육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왜곡된 독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적 현실이 마련되었다. 이전 학습지도요령에서 지리 A, B의 구분이 지리A는 ‘지리총합’으로 변경되어 필수과목이 되었고, 지리B는 ‘지리탐구’로 변경되어 선택과목이 되었다. <표 4>와 같이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 점거’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어 2014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에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지리분야’의 내용이 “죽도와 북방 영토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일본)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때, 센카쿠제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룰 것”과 같이 제시되어 있어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서 밝히고 있는 독도교육의 논리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

<표 7> 2018 개정 지리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내용

학습지도요령	지리총합	2. 내용 A. 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파악하는 현대세계 (1) 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과 현대세계 3. 내용의 취급 (1) …중략… (2) 내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아. 내용의 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도록 한다. (아) (1)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도록 한다.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 파악과 함께,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룰 것. 또, 우리나라의 해양 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거론하며, 독도와 북방 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 그때,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룰 것……
	지리탐구	3. 내용의 취급 (1) …중략… (2) 내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아. 내용의 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도록 한다. (아)…중략… (이)…중략… (우)…중략… (예)…중략… (오) (5)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도록 한다.

##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지리탐구	「영토문제의 현상 및 요인, 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서는 그것을 취급할 때 일본의 영토 문제도 언급할 것. 또, 우리의 해양 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거론하며, 독도와 북방 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 그때,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룰 것.
--	------	--

자료: 文部科學省, 2018.

### <표 8> 2018 개정 지리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독도 관련 내용

학습 지도 요령 해설	지리총합/지리 탐구	내용취급
		유의점

'죽도'와 '북방 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이때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룰 것.

우리나라(일본)가 당연한 죽도와 북방 영토의 영토문제와 경제수역의 문제 등을 거론하고, 국경이 갖는 의외와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일본)가 당연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죽도와 북방 영토에 대해서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 영토문제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확하게 다루고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 文部科學省, 2018.

## 2. 지리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기반하여 집필된 2016~2017년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 검정 결과는 2016년 검정 합격본 이궁서점A/B, 제국서원A/B, 동경서적A, 제일학습사A 총 6종이고, 2017년 검정 합격본 제국서원A, 청수서원A, 동경서적B 총 3종이다. 9종의 지리 교과서를 살펴보면 2012~2013년의 검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9종 모두가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크게 지도, 내용기술, 사진에서 다루고 있다.

2006~2007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독도와 관련하여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

다. 또한 2012년 검정 통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점거’, ‘한국과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문제’ 등과 같은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6~2017 검정 지리 교과서는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제시되어 있는 ‘독도의 일본 고유 영토론’, ‘한국의 점거’ 또는 ‘한국의 불법점거’,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독도교육의 기본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전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교과서들보다 더욱 구체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필되었다.

지리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도와 사진을 통한 독도의 위치와 소속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의 형성을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2016~2017년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 교과서 가운데 ‘청수서원’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지리교과서에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나타낸 지도를 제시하고 있고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내에 위치시켜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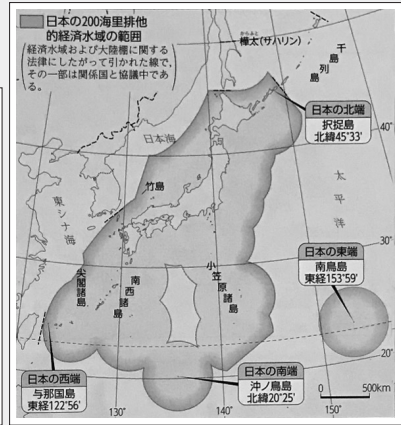
일본의 해양영토 교육은 자국 영역을 설명할 때, 동서남북단의 섬들과 주변 바다들을 함께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해양 영역을 부각시키고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산업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허은실·남상준, 2013). 지리 교과서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한 강조에 대하여 황용섭(2017)은 일본이 해양국이고 바다를 통해 자원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동서남북단의 섬들을 통해 경제수역이 확보되기에 본토로부터 떨어진 섬에 대한 영유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나타낸 지도 내에 독도를 위치시켜 나타내는 것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확인시키는 것과 동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서 광범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리A의 경우 동경서적, 청수서원, 제일학습사를 제외한 나머지 3

개 교과서, 지리B의 경우 제국서원만 독도(동도, 서도 포함) 전경이 나오는 사진을 제시하고 사진 설명에 독도의 행정 구역을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6). 특히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이나 지도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독도의 전경을 보여주고 독도가 ‘여도(女島)’라는 이름의 동도와 ‘남도(男島)’라는 이름의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그 주변에 작은 바위들이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에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표기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마치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 일본의 영역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주변수역에는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이 설정되어 있고,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홍성근, 2017).



〈그림 6〉 독도 전경 사진(이궁서점 지리A)



〈그림 7〉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제일학습사 지리A)

둘째, 죽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9종의 지리 교과서 가운데 제일학습사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서술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8종은 모두 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8종의 교과서 가운데 지리A의 동경서적, 청수서원, 지리B의 이궁서점과 동경서적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서술만 있고 그에 대한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은 없다. 지리A의 경우 제국서원과 이궁서점의 경우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서술과 함께 그에 대한 역사적, 국제법적 접근에 기반하여 독도의 ‘고유 영토론’을 설명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는 것은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론’에 입각하여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를 영유권 재확인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홍성근, 2017).

“시마네현의 죽도는 에도시대 초기에 요나고의 마을 사람들에 의해 어렵이 이루어졌고, 1905년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의 규정에 따라 시마네현에 정식 편입을 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지리A 제국서원 2017년 검정본)

“에도시대에 일본은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일본은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권 의사를 재확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에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이라고 명기되었다. 이때, 한국은 죽도도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가 되도록 연합국에 작업을 했지만, 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연합국은 포기해야 할 영토에서 제외했다.”(지리A 이궁서점)

“일본해에 있는 독도는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해, 일본 고유의 영토로 재확인되고 있다.”(지리A 제국서원 2016년 검정본)

“일본해에 있는 독도는 1905년 메이지 정부가 일본의 영토로 있는 것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다.”(지리B 제국서원 2016년 검정본)

셋째, 독도와 관련한 영토 주권 침해와 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확인시키고 있다. 9종의 지리교과서 내에 이와 관련한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교과서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독도 점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점거’ 또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교과서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9종 중 6종의 교과서(지리A의 경우 동경서적, 청수서원, 제국서원(2016, 2017년 검정본), 지리B의 경우 제국서원과 동경서적)이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하여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서술은 9종 중 4종의 교과서(지리A의 동경서적, 이궁서점, 지리B의 경우 제국서원, 동경서적)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독도 점거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해결 의지와 관련한 서술은 9종 중 3종의 교과서(지리A의 제일학습사, 청수서원, 제국서원(2016년 검정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해상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고 일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다.”(지리A 동경서적)

“일본의 영토에 있는 독도는 한국에 의해 점거되고 있고,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지리A, 제일학습사)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죽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제소를 세 번이나 제안하였지만, 한국이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지리A, 제국서원 2016년 검정)

“현재도 한국에 의한 점거는 지속되고 있지만,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 정부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지리B, 이궁서점)

〈표 9〉 지리A 과목의 독도 관련 교과서 서술 내용

교과서	목차	독도 관련 서술 내용
동경서적 (지리A)	제1편 현대 세계의 특징과 동향 제1장 지구와의 지도에서 파악하는 세계 2. 일본의 위치와 영역	(본문) 일본과 러시아와의 사이에 북방 영토문제, 한국과의 사이에 죽도를 둘러싼 문제가 있는 것과 함께… (난외주기) 일본해의 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어 일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다.
청수서원 (지리A)	제1편 현대 세계의 특색과 제과제의 지리적 고찰 제1장 지구와의 지도에서 파악하는 세계 4. 국가와 영역	(본문) 또,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죽도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섬을 점령하고 있고, 일본은 국제법에 준해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제국서원 (지리A)	제1부 현대 세계의 특색과 세계 제지역의 과제 제1장 여행으로 파악하는 현대 세계 ⑦ 일본의 영역과 영토문제	(본문) 시마네현의 죽도는 에도시대 초기에 요나고의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어렵이 이루어졌고, 1905년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의 규정에 따라 시마네현에 정식 편입을 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그 이후 한국 정부는 죽도가 한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죽도(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사진 하단에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해양경찰대를 두고, 등대와 부두를 건설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제국서원 (지리A)	제1부 세계 제지역의 모습과 지구적 과제 1장 지구와의 지도에서 파악하는 현대 세계 1절 지구상의 위치와 국가 4. 일본의 영역과 영토문제	(사진) 죽도(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한국이 해양경찰대를 두고, 등대와 부두를 건설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본문) 일본해에 있는 독도는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해 일본 고유의 영토로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죽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제소를 세 번이나 제안하였지만, 한국이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궁서점 (지리A)	제1장 구면상의 세계 제2절 국가와 국가의 관계 2. 일본의 위치와 확대	(본문) 죽도는 오키제도의 북서 약 158km의 일본 해상에 있는 군도로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해 있다(사진7, 지도8). 이미 에도시대에 일본은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일본은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에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이라고 명기되었다. 이때, 한국은 죽도도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가 되도록 연합국에 작업을 했지만, 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연합국은 포기해야 할 영토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1953년에 재일 미군 폭격 훈련 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한국의 연안경비대가 점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제일학습사 (지리A)	제1부 현대 세계의 특색과 제과제의 지리적 고찰 제1장 지구와의 지도에서 파악하는 현대 세계 4. 국가의 영역과 영토문제	(Geo Topic 일본의 영토) 일본은 현재... 한국과 독도(시마네현)의 영유권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영토에 있는 독도는 한국에 의해 점거되고 있고,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	---	--

〈표 10〉 지리B 과목의 독도 관련 교과서 서술 내용

교과서	목차	독도 관련 서술 내용
이공서점 (지리B)	제2편 현대 세계의 계통지리적 고찰 제4장 생활문화와 민족·종교 일본: 일본의 영역과 영토문제	(본문) 죽도는 오키제도의 북서에 있는 군도이고, 무인도이지만,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일본의 영토다. 그러나 1954년에 한국이 점거하고, 독도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후, 1965년에는 한국과의 사이에 죽도의 영유권문제는 보류하는 형태로, 일한기본조약이 맺어졌다. 현재도 한국에 의한 점거는 지속되고 있지만,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 정부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제국서원	제2부 현대 세계의 계통지리적 고찰 제4장 생활문화, 민족·종교 4절 민족·영토문제 4.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와 외국인과의 공생	(본문) 일본해에 있는 독도는 1905년 메이지 정부가 일본의 영토로 있는 것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죽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해양경찰대를 두고, 등대와 부두 등을 건설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그에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제소를 3번이나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응하고 있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진) 죽도(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동경서적	제2편 현대 세계의 계통지리적 고찰 제4장 생활문화, 민족·종교 4. 현대의 국가와 영토문제	(본문) 시마네현에 속한 일본해상의 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고, 일본은 이에 항의를 하고 있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의 중·고등학교 지리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담겨 있는 독도 관련 영토교육의 내용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2008, 2009 개정 시기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북방 영토를 불법 점거라는 차원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독도를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독도를 북방 영

토와 동일하게 공식적인 영토문제로 설정한 것이며,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형성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교과서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한국에 항의’, ‘독도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같은 용어와 서술을 사용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17, 2018년의 개정은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문제는 자국의 영유권 침해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문제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언급하면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4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개정에 기반을 두고 집필되어 2015, 2016년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 서술을 살펴보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일본은 이에 대해 한국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으며, 이의 문제에 대하여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경우, 독도 영유권 인식의 강화와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독도 영유권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해에 위치해 있는’과 같은 수식어와 함께 독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내에 독도를 포함시켜 제시한 지도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표시한 독도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 독도가 소속된 행정구역으로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라고 표기한 독도 사진을 제시함으로

써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역사적, 국제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전근대에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독도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고, 1905년에 국제법에 근거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독도 관련 영토 주권의 침해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경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 형성과 독도의 일본 고유 영토론에 대한 인식 강화, 독도와 관련한 영토 주권 침해와 이의 평화적 해결 방안과 관련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독도 영유권 인식 형성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내에 독도가 위치한 사진이나 독도가 속한 행정 구역을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로 표기한 독도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독도의 일본 고유 영토론은 역사적 근거를 통해 그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은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론'과 '1905년 독도 편입조치'를 제시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포기해야 하는 영토로서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영토주권 침해와 이의 평화적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독도 관련 영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했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면서 '독도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불법 국가'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긍정적 인식을 국내외(김영수, 2013)'로 보여주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도교육에 있어 일본의 왜곡된 인식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 영토 교육의 방향 및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리적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향후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

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과서의 독도 교육과 관련한 내용 요소와 기술 방식에 대한 성찰적 평가를 해나가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독도와 관련한 영토 교육은 지리교과와 내용 체계 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지식과 태도를 견지해 나갈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와 지적 능력을 지닌 이성적 시민 의식을 기르는 방향으로(박선미, 2009)’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천들이 지속될 때 지리교육을 통한 영토 교육으로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중·고등학교 지리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 관련 영토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다.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한국에 항의’, ‘독도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2016년 검정을 통과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일본은 이에 대해 한국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이의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 영토교육은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그리고 지리 교과서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독도, 지리 교과서, 영토교육,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 해설

##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ontents of Dokdo-related Territory Education in the Japanese Secondary Geography Education: Focusing on the Curriculum Guidelines, Commentaries and Textbooks

Kim, Byungyeon  
(Deagu Dasa High School)

Yi, Saangkyun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Japanese territorial education related to Dokdo in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geography curriculum guidelines, commentaries and textbooks of Japan. The curriculum guidelines and commentaries of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show a strong commitment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descriptions such as “Dokdo is integral part of Japanese territory,” “illegal occupation of Korea,” “protest to Korea,” and “peaceful resolution of the Dokdo issue.” According to the middle and high school geography textbooks that passed the screening in 2015 and 2016, the logic of Japan’s claim to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s as follows: Japan has been attempting to ref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resolve the Dokdo issue through peaceful means, however Korea has not responded. It can be considered that Japan’s territorial claim to Dokdo is clearly shown in its curriculum guidelines, commentaries and geography textbooks.

### Keywords

Dokdo, Geography Textbook, Territory Education, Curriculum Guideline(學習指導要領),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學習指導要領解説)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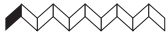
- 『일본 중학교 지리과 교과서』(2015년 개정본)
- 『일본 고등학교 지리과 교과서』(2016년 2017년 개정본)
- 권오현 · 이종호, 2016a, 「일본학술회의의 지리교육 개혁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3).
- 권오현 · 이종호, 2016b, 「일본 고등학교 지리 과목의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한 고찰: 지리역사과 지리B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4).
- 김민정 · 이자원, 2013, 「영토 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 비교 연구」, 『응용지리』 30호.
- 김영수, 2013,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독도 관련 교육과정과 주요 내용 분석」, 『사회과학교육』 52(1).
- 남상구, 2011,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호.
- 남상구, 2014, 「일본 초 중 고 교과서의 독도기술 현황과 전망」, 『교과서 연구』 76호.
- 남상구, 2016,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비교 검토」, 『독도연구』 20호.
- 박병섭, 2011, 「일본 사회과 교과서와 독도 문제」, 『독도연구』 11호.
- 박선미, 2009, 「독도교육의 방향: 민족주의로부터 시민적 애국주의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2).
- 서종진, 「아베 정부의 영토교육 강화와 검정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변화」, 『영토해양연구』 8호.
- 송호열, 2011, 「중학교 사회1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 송호열, 2012,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2).
- 서태열, 2012,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중등 지리 교과서에서의 독도 및 동해 교육」, 『한국지리학회지』 1(1).
- 신주백, 2010,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독도연구』 13호.

- 심정보, 2008,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 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3).
- 심정보, 2013, 「일본 시네마 현의 초중등학교 사회과에서의 독도에 대한 지역학습의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5).
- 이우진, 2018,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통해 본 일본의 영토교육」, 『독도교육』 24호.
- 이하나·조철기, 2011,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3).
- 조철기, 2015, 「일본 지리교육과정을 통해 본 개발교육의 도입과 전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 황용섭, 2017, 「일본 초·중학교 교과서 독도 관련 비교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56호.
- 홍성근, 2017,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4호.
- 홍성근·서종진, 2018,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6호.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2008, 2014, 2017)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2009, 2014, 2018)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정연식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머리말

독도를 부르는 오랜 이름은 ‘작은 섬’이라는 뜻의 솔섬[松島]이었다.<sup>1</sup> 조선에서는 15세기를 즈음하여 독도의 이름은 혼동에 의해 울릉도의 별명이었던 우산도(于山島)로 바뀌어 정착되었다. 일본에서는 마쓰시마[松島]로 부르다가 19세기 중엽에는 서양인들이 독도에 붙인 이름에 따라 리양코도(島)로 부르기 시작했고, 19세기 말에는 착오로 인해 울릉도의 별칭 죽도(竹島)가 독도의 이름으로 바뀌어 독도를 죽도(竹島)로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우산도, 솔섬으로 부르던 섬을 19세기 말쯤에 울릉도 주민들이 ‘독섬[獨島]’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죽도로 부르고 있다.

독도의 명칭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독도 영유

\* 논문 투고일: 2019. 4. 21. 심사 완료일: 2019. 5. 20. 게재 확정일: 2015. 5. 21

\* 이 논문은 2018년도 기획연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의 명칭문제”(NAHF-2018-기획연구-2)에 관한 주제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 정연식, 2019, 「울릉도, 독도의 옛 이름 대섬[竹島], 솔섬[松島]의 뜻」, 『역사학보』 241.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권 논쟁에서 ‘독섬, 독도(獨島)’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논점으로 대두된 지 오래다. 독도(獨島)의 이름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여러 글에서 되풀이해서 소개되었지만 논지와 관련되므로 간단하게 정리해 둔다.

- 1849년(헌종 15)에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쿠르바위(Liancourt Rocks)라고 이름을 붙였다.
- 1877년(고종 14) 3월에 일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서 죽도(竹島; 鬱陵島)와 송도(松島; 獨島)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하였다. 문서에는 울릉도를 기죽도(磯竹島)로 독도를 송도(松島)로 표시한 지도가 첨부되었다.
- 1900년 10월에 고종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울도군(鬱島郡)의 관할 범위를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하였다.
- 1904년 9월에 일본 군함 니타카호[新高號]의 보고서에 “리앙코루도암(岩)을 한인(韓人)들은 독도(獨島)라고 쓰고, 일본 어부들은 줄여서 리양코島(リヤンコ島)라고 칭(稱)한다”고 기록되었다.
- 1905년 2월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제40호로 오키도(隱岐島) 서북 85해리의 섬을 죽도(竹島)라고 칭하고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하였다.
- 1906년 4월의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에서 울도군(鬱島郡) 소속 독도(獨島)가 외양(外洋) 100여 리에 있다고 하였다.

한일 양국 사이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오랜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1947년에 울릉군청에서 독도가 울도군 소속이라는 심흥택보고서가 발견되었고, 1987년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과 무관하다는 태정관지령의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자 일부 일본 학자들은 태정관지령이 독도에 대한 조선의 확실하고 영구적인 영유권을 기술했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sup>2</sup> 그리고 1900년의 칙령에 등장하는 울도군 관할의 석도(石島)를 우리나라 학자들은 독도라고 주장하고, 일부 일본 학자들은 울릉도 옆의 관음도(觀音島)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더 합리적인가?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섬 가운데 ‘독도(獨島)’라는 이름을 지닌 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동해의 독도는 그 가운데 어느 사례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칙령의 석도(石島)가 독도인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해본다.

그리기 위해서는 섬의 이름을 전국을 대상으로 이른 시기에 상세하게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 지도로는 19세기 말에 김정호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동여도(東輿圖)>와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에서 한반도 전체를 측량하여 경도 15분, 위도 10분 단위로 제판한 5만분의 1 지형도를 기본 자료로 하고, 지명과 관계된 자료로는 한글학회에서 1966~1986년까지 남한 지역의 지명을 조사하여 20책으로 간행한 『한국지명총람』을 활용하였다. <동여도>는 이른 시기의 섬 이름을 간직하고 있고, 육지측량부지도는 간척사업으로 서해와 남해의 도서와 해안선의 상태가 변형되기 이전의 남북한 전역의 상태를 보여주며, 『한국지명총람』은 지도에 잘 표시되지 않는 여러 작은 섬의 이름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sup>3</sup>

2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유미림, 2015, 「태정관 칙령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부인」,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3 이 글의 지도는 모두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의 ‘지리정보-지도서비스(<http://map.ngii.go.kr/ms/map/NlipMap.do>)’에서 내려받은 것이다.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 지도의 도엽(圖葉) 이름은 <> 안에 한자로 표시하고 도엽번호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좌상(左上)에 스탬프로 찍은 번호를 작은 아래첨자로 표시하였다. 도엽번호 순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같은 위도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된다. 『한국지명총람』은 때로는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쓰지 않고 ‘총람 권수-쪽수’ 형태로 썼다.

## II. 동여도(東輿圖)의 독도(獨島)

지금은 독도(獨島)를 대개 ‘독도’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독섬’이라고 불렀다. 이에 관한 자료들은 여럿이 발견되었다. 울릉도에서 생활했던 일본인 어부 오쿠무라 료(奥村亮)는 한국인들이 독도를 도쿠손(トクソン), 즉 독섬으로 불렀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1948년에 우국노인회에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보내는 청원서에도 독도를 ‘Doksum’으로 썼으며,<sup>4</sup> 최남선은 1954년 12월 『서울신문』에 사람들이 독도를 ‘독섬’이라고 부른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sup>5</sup> 1904년의 니타카호 보고서에서 “한인(韓人)들이 독도(獨島)라고 쓴다”고 했던 것은 말로는 ‘독섬’이라고 부르고, 문자로 기록할 때에는 ‘독도(獨島)’라고 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독섬’이라는 호칭과 ‘獨島’라는 표기는 예전의 관례에 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독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예전에 어떤 섬들을 ‘獨島’라 표기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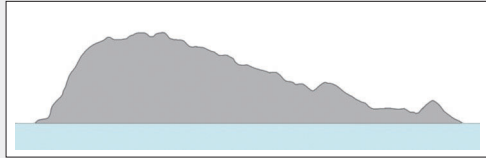
〈그림 1〉 태안의 독섬(釜島), 獨島①

- 《安興217》, 《居兒島203》, 『총람』 4하-15, 獨島 번호는 〈표 1〉의 번호
- 육지측량부지도(右) 지명은 〈東輿圖〉(左)에 제시된 것만 표시했다.

4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155쪽, 2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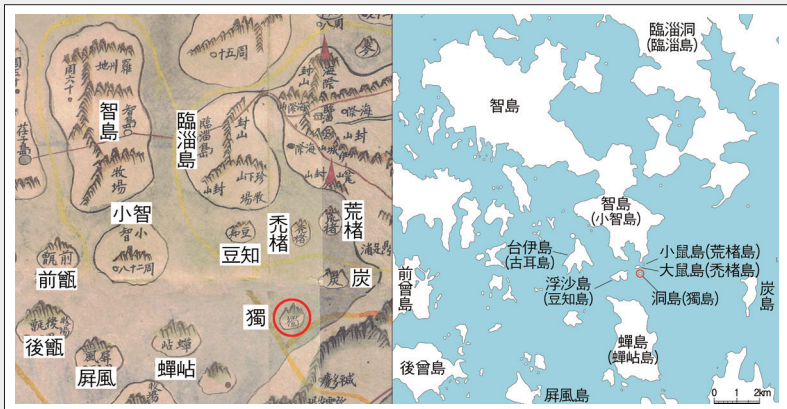
5 최남선, 2005, 『六堂崔南善全集』 14, 역략(‘獨島問題와 나’, 『서울신문』 1954년 12월 『送年爐邊餘談』).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861)는 니타카호 보고서보다 43년 전에 제작되었는데, 그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시기에 <동여도>(奎 10340)가 제작되었다.<sup>6</sup> <동여도>에서 섬들은 바다에서의 거리 측정이 부정확하여 형태나 크기가 실제와 다르기도 하고, 주위 섬들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어느 섬인지 곧바로 알아보는 어렵다. 그래도 이름이 크게 바뀌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는 찾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



〈그림 2〉 태안 독섬 응도(瓮島)

<동여도>에 ‘독(獨)’으로 표기된 獨島는 셋이 있는데 현재 충남 태안, 전남 신안, 전북 군산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그림 3〉 신안의 동섬(洞島), 獨島②

■ 《慈恩島<sub>965</sub>》, 《務女<sub>966</sub>》, 《智島<sub>977</sub>》, 《望雲<sub>978</sub>》, 『총람』 14-541

6 <동여도>의 제작 시기에 대해 이상태(1999)와 이기봉(2003)은 <동여도>를 밑그림으로 하여 <대동여지도>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아 각각 1856~1861년과 1856~1859년을 제시했고, 양보경(1995)은 1872년경으로 추정했으며, 오상학(2001)도 대동여지도 이후로 보았다(이기봉, 2003, 『<동여도> 해설』, 『동여도-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7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서 태안의 독도는 ‘獨’으로, 군산의 독도는 獨의 속자 ‘狃’으로 표기되었고, 신안의 독도는 지도 경계선 근처에 있어서 누락되었다.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우선 안흥진(安興鎭) 근처의 獨島(〈표 1〉의 ①)는 지금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있는 옹도(瓮島)다(그림 1). 육지측량부지도와 비교해 보면 섬의 위치, 형태, 크기가 실제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바도기섬[波濤只島] 서남쪽의 獨島가 옹도임은 분명하다. 그 섬은 『한국지명총람』에는 독섬 또는 옹도(瓮島)로 기록되어 있어 ‘독섬’의 ‘독’이 독, 항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섬은 자빠진 독처럼 생겼다(그림 2)).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옹부도(瓮浮島)’로 수록되었는데 바다에 떠 있는 독 모양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일 것이다.<sup>8</sup> 지금도 옹도의 정상 부에는 등대 옆에 커다란 독 조형물을 세워놓아 섬 이름이 옹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1940년대에 최남선은 동해의 섬을 ‘독섬’이라고 부른 것은 섬의 모양이 독[瓮]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독도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독이나 항아리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sup>9</sup> 최남선의 주장은 공감을 얻지 못해 그 뒤로 계승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동여도>에 獨島로 기록된 지도(智島) 남쪽의 獨島(〈표 1〉의 ②)는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의 동섬[洞島]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그림 3)). 『한국지명총람』에는 동섬, 동도(洞島)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고, 현재는 동섬으로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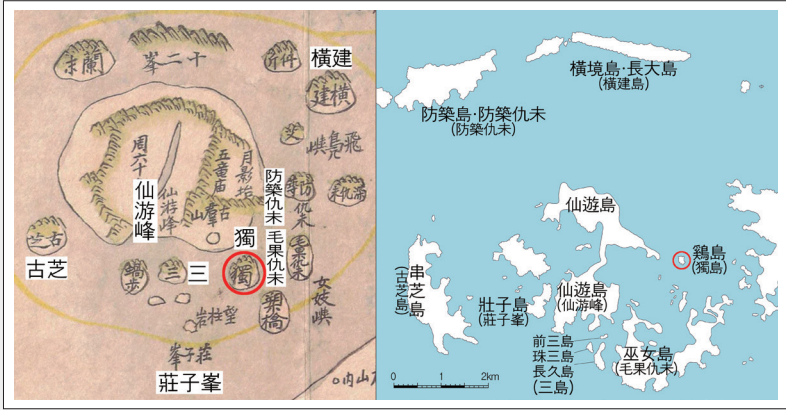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선유도(仙遊島) 동남쪽의 獨島(〈표 1〉의 ⑥)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의 닭섬[鷄島]을 가리킨다(그림 4). 닭의 중세국어는 ‘뚝’인데 그것을 ‘독(獨)’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여도의 獨島는 독섬[瓮島], 동섬[洞島], 닭섬[鷄島]을 달리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동해의 독섬이 독 모양이라서 독섬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남은 것은 동섬과 닭섬 가운데 어느 것이 동해의 독섬과 같은 성격

8 『東國輿地勝覽』 권19, 忠淸道 泰安郡 山川

9 최남선, 고려대학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1973, 『육당최남선전집』 2, 현암사, 697쪽 (‘울릉도와 독도’, 『서울신문』, 1953년 8월). 다만 동도(東島) 복판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서 물이 담긴 독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확인하기 어렵다.

의 섬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림 4〉 군산의 닭섬(獨島) 獨島⑥  
 ■ <<壯子島<sub>131</sub>>, <<末島<sub>145</sub>>, 『총람』 12-31

### III. 동섬·동섬·탄섬과 獨島

#### 1. 동섬·동섬·탄섬

육지측량부지도는 1904년에 처음으로 ‘獨島’라는 이름을 남긴 니타카호 보고서나, 1906년의 심흥택 보고서보다 약 10년 후에 만들어진 자료다. 그러므로 두 보고서와 거의 같은 시기의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지측량부지도에 ‘獨島’로 표기된 섬들을 찾아보는 것도 獨島의 의미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육지측량부지도에서 독도 자료를 찾아내어 동여도와 합한 것이 <표 1>이다.

앞에서 본 <동여도>의 독도 외에 육지측량부지도에는 충남 태안①, 전남 해남②, 전남 고흥③ 등 세 군데에 獨島가 있다. 그리고 <<鎮海<sub>087</sub>>>를 대신한 『鎮海』(1957)에 한글로 표시된 ‘독도’가 ‘獨島’로 추정되기에 경남 거제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③의 독도를 추가할 수 있다.<sup>10</sup> 그 결과 <동여도>와 육지측량부지도에 독도로 표기된 섬은 모두 6개다. 이 섬들의 우리말 이름은 모두 『한국지명총람』에서 확인되는데, 독섬, 동섬, 탄섬, 돌섬, 독섬, 닭섬 등 여섯 가지로 나타난다. 이를 A부류 ①의 독섬과 B부류 ②·③의 동섬, 탄섬과 C부류 ④·⑤·⑥의 돌섬, 독섬, 닭섬 세 부류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B부류의 ‘동섬’과 ‘탄섬’은 그리 희귀한 이름이 아니다. <동여도>의 독도는 육지측량부지도에는 ‘洞島’로 써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동도(洞島)’ 또는 ‘동섬’이라 했으며 현재도 동섬으로 부르는데, 그것을 ‘獨島’로 표기한 것이다. ‘동’ 음을 지닌 한자가 많은데 굳이 ‘獨’으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표 1〉〈東輿圖〉와 육지측량부지도의 ‘獨島’ 현황

	東輿圖 섬이름	陸地測量部 지도		『한국지명총람』		소재지
		섬이름	圖葉명칭	섬이름	권·쪽	
A	獨島①	獨島①독도	《居兒島 <sub>203</sub> 》	독섬, 瓮島	4하-15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B	獨島②	洞島 동도	《望雲 <sub>078</sub> 》	동섬, 洞島	14-541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	(獨島)③독도	『鎭海』	탄섬	8-61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C	-	獨島④독섬	《木浦 <sub>054</sub> 》	돌섬, 독섬	16-168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	獨島⑤독도	《居金島 <sub>033</sub> 》	독섬, 獨島	13-116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獨島⑥	鷄島 닭섬	《壯子島 <sub>131</sub> 》	닭섬, 鷄島	12-3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①에는 ‘瓮島’가, ⑥에는 ‘蘇島’가 竝記되었다.
- ③의 《鎭海<sub>057</sub>》은 부분 삭제되어 1957년판 『鎭海』(6919Ⅲ)로 대체했다.
- 소재지의 #는 현재 육지로 변한 섬 표시이며 이후의 표에도 적용한다.

우리말의 ‘동’은 꼬트머리의 작은 부분을 말한다. 옷의 끝부분을 ‘끝동’이라고 하고, 소맷부리 따위를 다양한 색깔의 천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색동옷’이라 하며, 기다란 담배대의 입을 대고 빠는 끝 부분에 끼우는 낫쇠

10 1957년에 삼능공업사에서 발행한 지도가 여럿이 남아 전하는데 지명이 추가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거의 없어 육지측량부지도를 거의 그대로 모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를 ‘동거리’라 한다. 그리고 끄트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도 ‘동’이라 부른다. ‘동떨어지다’의 ‘동’도 그런 뜻으로 추정된다.

‘동’은 산이름에도 붙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동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매우 많다. 모두 큰 산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동’과 관련되어 육지의 산에 붙인 여러 가지 이름은 바다의 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육지나 큰 섬에서 떨어져 나와 넓은 바다에 불룩 솟은 섬의 모습은 큰 산에서 떨어져 나와 넓은 평지에 홀로 불룩 솟은 작은 산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그런 섬을 ‘동섬’이라 불렀다. 신안의 동섬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동섬은 큰 섬이나 육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는 작은 섬을 가리키는 말이다.

큰 산이나 섬과 떨어져 있는 작은 동산, 동매, 동섬을 얹잡아 부를 때 똥매, 똥섬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산의 경우에는 ‘동, 똥’에 ‘매, 매, 뉘’가 조합된 ‘동매, 동매, 동뉘, 똥매, 똥매, 똥뉘’ 등 다양한 이름이 있고, 뒤에 산(山)이 중복되어 ‘동매산, 똥매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런 산들은 산이라고 부르기에다 몇쩍을 정도로 작고 낮아서 일반 지도에는 대개 등고선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축척 지도에서는 산 모양의 등고선이 표시되더라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한 예로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의 남양 마을 서쪽 남양들 논 한가운데에 있는 똥매산(똥매산)을 들 수 있다. 성주봉 기슭에서 600m쯤 떨어져 있는 똥매산은 해발고도 14m로 지표면에서의 높이가 8m밖에 되지 않는 산이다(그림 5)). 그래서 상세한 지명을 망라한 『한국지명총람』에도 산 이름은 없다. 1910년대 측량부지도에서 황무지 들판이었던 똥매산 주변은 1960년대 지도에서 논으로 변했는데 1970년대 1:5,000 지형도에서 처음으로 산 이름이 등장한다.

똥산, 똥섬은 판산, 판매, 판섬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구개 비음(velar nasal) [ŋ]과 치경구개 비음(alveolar nasal) [n]은 같은 비음으로서 조음 부위도 멀지 않아서 서로 비슷한 소리다. 그리고 소리만이 아니라 뜻도 비슷해서 판의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중세국어 ‘뽕’은 떨어져 남은 부스러기나 나머지 조각을 뜻하는 말이다.<sup>11</sup> 그러므로 동섬·뽕섬·뽕섬은 육지나 큰 섬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부스러기 같은 섬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도이리의 뽕섬과 고대면 옥현리의 뽕산이 그러한 예다(그림 6).



〈그림 5〉 함안 칠북면 덕남리의 뽕매산  
 ■ 국토지리정보원, 1994, 1:25,000지형도「昌原」(NI 52-2-18-3).  
 ■ 뽕매산 주변 지형과 해발고도 표시는 국토지리정보원, 1995, 1:5,000지형도「昌原(051)」(NI 52-2-18-051)으로 보완함.

이러한 섬들을 한자로 표기할 때에 여러 가지 글자가 사용되었다. 동산, 동섬, 뽕매의 동, 뽕에는 東, 洞, 同이 쓰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말을 한자의 음을 빌어 옮긴 것일 뿐 한자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동산, 동섬은 동리에 있는 ‘洞山, 洞島’도 아니고 동쪽에 있는 ‘東山, 東島’도 아니다. 조선시대 문헌이나 국어사전에서 동산을 ‘東山’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지만 동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을 동쪽에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그림 5).

뽕섬을 아예 분도(糞島)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인천시 중구 항동의 인천항 내항(內港) 안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糞島(《仁川276》)와 전남 완도군 고군면 가교리의 糞島가 그것이다(그림 8).

민간에서 화투의 봉황이 그려진 오동(梧, 梧桐)을 대개 ‘뽕’이라 부르듯이 오동의 속어가 뽕이다. 그리고 뽕을 은어(隱語)로 ‘떡’이라 하고, 오동의 옛말

11 『翻譯老乞大』下63 “또 이 한 가지 보 뽕니 언노라 ㅎ면(又要這一等的布零截); 『翻譯朴通事』上13 “일천 뽕 거시 ㅎ 무저비만 ㄱ트니 없스니라(千零不如一頓); 『朴通事諺解』中2 “내게 뽕돈이 이시니(我有零錢) ‘뽕돈’이란 우수리, 잔돈을 지칭한다.



〈그림 6〉 唐津의 판섬과 판산  
 ■ <唐津> 둥고선 간격 20m

이 ‘머귀, 머괴’다.<sup>12</sup> 그러므로 ‘梧, 梧桐, 먹, 머귀(머귀)’가 서로 넘나들고 먹의 변이음 ‘멍’도 어우러져, ‘오도, 오동도, 똥섬, 먹섬, 멧섬, 머귀섬’이 두루 통용되었다(〈표 2〉). 오동도의 경우에는 단순한 똥섬이 아니라 때로는 홀로 떨어져 있는 ‘외판섬’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을 것이다. 외판 작은 길을 ‘오솔길’이라 하듯이 ‘외’를 ‘오’로 표

현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전남 여수시 수정동의 오동도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리고 판산, 판섬의 ‘판’의 표기에는 ‘段, 端’이 쓰였다. 단(段)은 부스러기를 뜻하고, 단(端)은 끝을 뜻하기에, 끄트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부스러기 섬을 표현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섬, 똥섬, 판섬, 먹섬을 東島, 同島, 洞島, 桐島, 糞島, 梧島, 段島, 端島, 單島 등으로 표기했는데,<sup>13</sup> 이 모두에 통용될 수 있는 표기가 獨島다.

12 『月印釋譜』 7:54 “梧翁桐똥은 머귀니 습합歡환樹송 | 梧翁桐똥곤ㅎ니라”; 『訓蒙字會』 상5 “梧 머귀요, 桐 머귀 동”; 『新增類合』 상9 “梧 머귀 오, 桐 머귀 동”; 『石峯千字文』 33a “梧 머귀 오, 桐 머귀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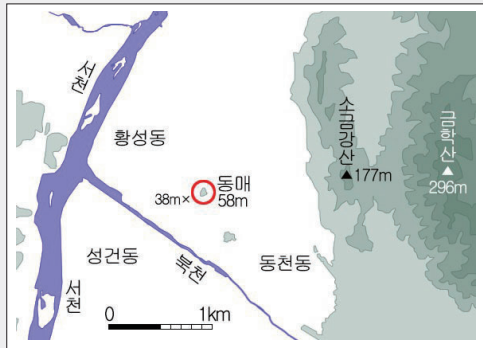
13 <南海072>의 東島, <荷衣島039>의 同島, <望雲078>의 洞島, <末島145>의 段島, <突山045>, <慈恩島065>, <智島077>, <居兒島203>의 端島.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표 2〉 梧島, 梧桐島와 먹섬, 동섬

육지측량부지도		『한국지명총람』		소재지
도엽 이름	섬 이름	섬 이름	권-쪽	
外烟島 <sup>175</sup>	梧島오도	오도	4상-40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大飛雉嶋 <sup>088</sup>	梧島오도	명섬, 목도, 오도	15-98	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
箕佐島 <sup>053</sup>	梧島오도	동섬, 명섬, 오도	14-495	#전남 신안군 압태면 수곡리
木浦 <sup>054</sup>	梧島오도	머개섬, 오도	14-510	전남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居金島 <sup>033</sup>	梧桐島오동도	먹섬, 오동도	13-113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外羅老島 <sup>034</sup>	梧桐島오동도	머구섬, 오동도	13-135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鹿頭 <sup>043</sup>	梧桐島오동섬	오동도	13-132	#전남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
高興 <sup>044</sup>	梧島오도	오도, 까막섬	13-166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突山 <sup>045</sup>	梧島오동섬	머구섬, 오도	15-66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곡리
竹圃里 <sup>046</sup>	梧島오동섬	오도, 오동도	15-25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尙州里 <sup>060</sup>	梧桐島오동도	오동도	15-13	전남 여수시 수정동
南海 <sup>072</sup>	梧桐島오동섬	명섬, 오동도	10-209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경주시 황성동의 황성공원에는 5천분의 1 대축척 지도에도 이름이 없는, 높이 20m의 작은 산이 있다(그림 7). 꼭대기에 김유신 기마상이 있는 이 산을 ‘동매’라고 부른다.<sup>14</sup> 황성동 동매는 소금강산 기슭에서 약 1km 떨어져 나간 작은 산이기에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그 동매를 한자로는 ‘獨山’으로 쓴다.<sup>15</sup> 한편 경기도 의정부 북쪽의 동두천시 이름은 중량천(中梁川)의 상류였던



〈그림 7〉 경주 황성동의 동매, 獨山

■ 국토지리정보원, 2013, 1:25,000 지형도「경주」, 등고선 간격 50m

14 국토지리정보원, 2006, 1:5,000 지형도「경주059」(N152-02-06-059), 여기서 높이(height)란 평균 해수면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하는 해발고도(altitude), 또는 표고(標高, elevation)가 아니라 지표면에서의 높이를 말한다.

15 한글학회, 1978, 『한국지명총람』 5(경북편 1), 200쪽; 김재식·김기문, 1991, 『경주풍물지리지』, 보우문화재단, 225쪽.



〈그림 8〉 古今島の 동섬(糞島), 동매산, 冬栢里  
 ■ <<契津031>>, <<馬良里032>>. 동고선 간격 40m.  
 ■ 지명은 국토지리정보원, 2003, 1:25,000 지형도 「古今」(NI 52-5-24-1)과 『총람』 15-301-303.

동두천에서 온 지명이 다. 동두천은 하천의 맨 끄트머리 상류의 하천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일 것이다. 동두천을 지금은 東豆川으로 표기하지만 19세기 후반의 <대동여지도>, <동여도>,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서는 독두천(獨豆川)으로 표기하였다.<sup>16</sup> 이처럼

끔 끄트머리의 작은 것을 뜻하는 우리말 ‘동’을 이따금 한자 ‘獨’으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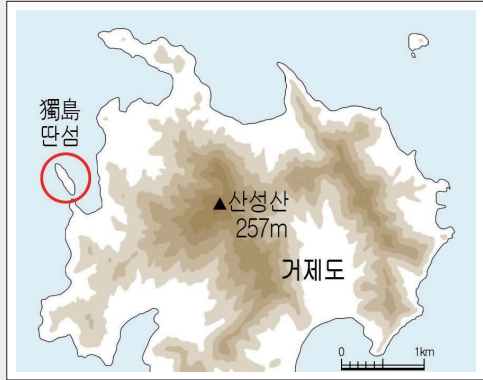
‘동’의 음을 지닌 한자가 많은데 왜 굳이 ‘獨’이라 썼을까? 독[tok]의 [k]는 연구개 폐쇄음(velar stop)이고 동[top]의 [p]은 연구개 비음(velar nasal)으로서 서로 비슷한 음소여서 [k]와 [p]은 『훈민정음』에서 모두 아음(牙音)에 속해 있다. 그래서 [k]와 [p]은 종종 변이음(allophone)으로서 서로 넘나들기도 한다. 그리고 ‘獨’은 ‘홀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홀로 떨어져 나간 작은 부분’을 지칭할 한자로 소리와 뜻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獨’을 선택한 것이다.

고금도 일대는 동섬, 동매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고금도 남서부 끝에는 봉황산 남서쪽에 작은 ‘동매산’이 있고, 덕암산 동쪽에 작은 ‘독매’가 있으며, 주위에 작은 섬으로는 동섬(糞島)과 작은섬(小島), 솔섬(松島)이 있다(그림 8)).

16 『東國輿地備考』 漢城府 山川 “中梁川 在都城東十三里 楊州獨豆川下流”.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는 ‘독두천(狹豆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狹’은 獨의 속자(俗字)다.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동섬[同島·洞島·桐島·東島], 똥섬[糞島], 먹섬[梧島·梧桐島], 판섬[端島·段島], 모두에 통용되는 표기가 獨島이다. 거제도 북쪽 끝의 판섬 독도도 그러한 예이며(〈그림 9〉),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의 병풍도 막개 남쪽의 동도도 판섬으로도 불렀다.<sup>17</sup>



〈그림 9〉 거제의 판섬 獨島  
■ 국립건설연구소, 1964, 1:50,000지형도「鎭海」(6919Ⅲ), 등고선 간격 40m.

## 2. 동막골과 동백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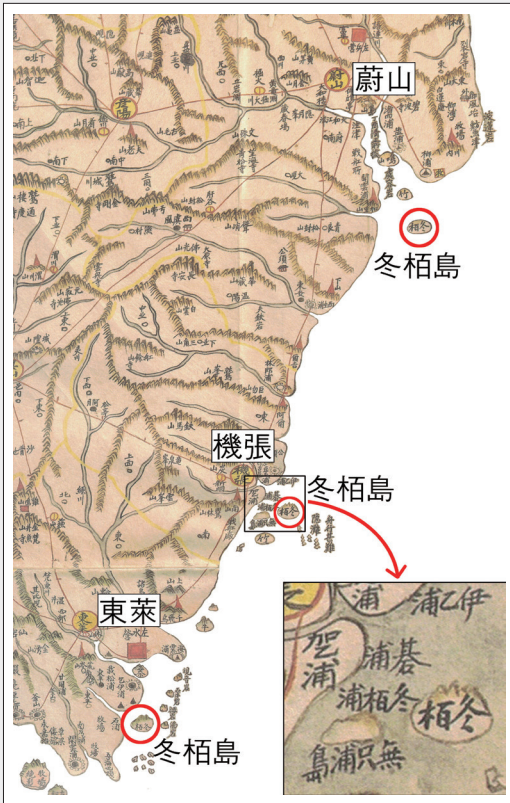
섬 이름 가운데 오동도가 오동나무와 무관하듯이 동백섬도 동백나무와 관련이 없다. 동백섬이라는 이름은 동막골이라는 이름과 연관된다. 전국에 널리 있는 ‘동막골’이라는 지명은 ‘동’과 ‘막’이 합성된 말로, 중심지에서 떨어진 *뜨터머리* 막다른 골[洞·谷]을 말한다. 서울의 동막리도 웅기점 독막[甕幕]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도성 남서쪽으로 더 이상 뻗어 나갈 수 없는 막다른 한강변에 떨어져 있는 동네라는 뜻의 이름이다. ‘독막로(獨幕路)’라는 길 이름은 동막을 독막(獨幕)으로 표기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리의 삼봉산 기슭의 막다른 고개는 독막재[獨幕峴]라 했다.

‘동’은 중성이 같은 비음을 지닌 ‘돈’과 혼용되고, ‘막’은 초성이 같은 순음을 지닌 ‘박, 북’과 뒤섞였다. 그래서 물의 동막골은 ‘돈박골, 돈북골’이 되기

17 한글학회, 1982, 『한국지명총람』 14(전남편Ⅱ), 544쪽.

도 했고, 바다의 동막섬은 ‘동복섬, 둔복섬, 둔백섬’이 되었다.<sup>18</sup> 나아가서 그런 이름들이 그럴싸하게 ‘동백(冬栢·桐栢)’으로 변하여 여러 곳에 동백리(冬栢里), 동백섬[冬栢島]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동여도〉에는 부산에서 울산에 이르는 곳에 동백섬이 셋이 있다(〈그림 10〉). 동백나무가 많아서 동백섬이라 했다는 해석도 있고 그랬을 가능성이



〈그림 10〉 동여도의 동백도와 동백포

전혀 없지는 않으나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장현(機張縣)의 동백도(冬栢島)가 있는 동백포(冬栢浦)는 동백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 아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에서는 동백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sup>19</sup> 세 동백섬은 육지의 막다른 끄트머리 지점 바닷가 쪽에 있는 섬이라서 동백섬이라 불렀을 것이

다. 동백섬은 육지의 막다른 곳 바닷가가 가까이 있는 섬도 있지만, 섬

18 예를 하나씩만 들자면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의 둔백섬,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의 둔복섬, 전남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의 동복섬(同卜島)을 들 수 있다(『총람』 8-298, 13-162, 16-159, <梨津031>). 둔복섬과 동복섬은 현재 물으로 변했다.

19 『東國輿地勝覽』 권22, 蔚山郡 山川 “冬栢島 在郡南三十里 冬栢滿島故名”: 권23, 機張縣 山川 “冬栢浦 在縣東九里”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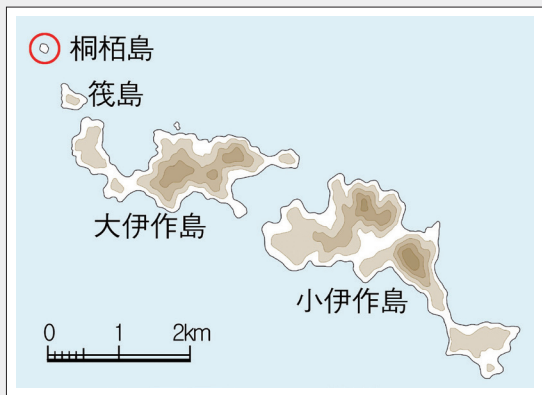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섬도 그렇게 불렀다. 인천 웅진군 자월면 이작리의 동백도(冬栢島)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그림 11).

그래서 동섬과 동백섬은 약간 다르다. 동섬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섬을 동백섬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것은 전남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의 소여자도 근처에 있는 동도와 돈복섬으로 알 수 있다(그림 12).

그렇다면 지금의 獨島도 동섬·똥섬·판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일까?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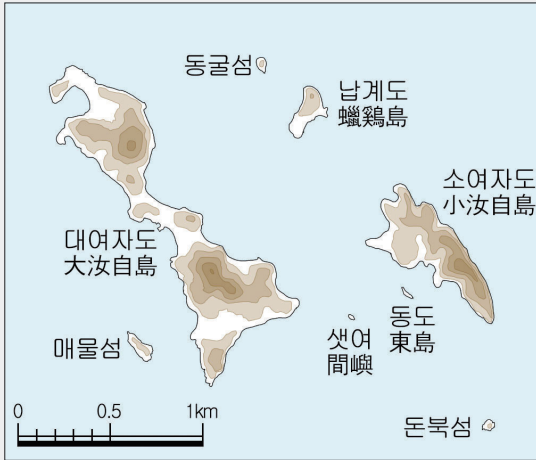
첫째로 독도는 ‘동섬, 똥섬, 판섬’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이름의 섬들은 대개 육지나 큰 섬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육지나 큰 섬의 부속물처럼 가까이 붙어 있다. 그래야 꼬트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섬이라는 뜻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런 이름의 섬들은 거의 다 큰 섬이나 육지에서 200m 이내의 거리에 있고 가장 멀리 있는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의 동섬도 기껏해야 지도(智島) 해안에서 430m 밖에 있다. 그런데 독도는 죽변항에서는 127km나 떨어져 있고, 울릉도에서도 87.4km나 떨어져 있다. 동백섬이라 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도나 육지에서 떨어져 나간 ‘동섬’이라고 볼 수가 없다.

둘째로 독도는 동섬, 똥섬, 판섬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크다. 독도의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는 길이가 대략 400m 내외이고, 해발고도도 99m와 169m에 이르며, 부속도서를 합한 총면적은 19만 m<sup>2</sup>에 이른다. 포털사이트에서 동섬·똥섬·판섬을 검색해보면 약 40개를 찾을 수 있는데 여수의 오동도



〈그림 11〉 웅진군의 동백도

■《仙甲島246》, 《豊島247》, 《德積島261》, 《靈興島262》 등 고선 간격 40m



〈그림 12〉 여수의 동섬(東島)과洞 북 섬

■ 국토지리정보원, 2014, 1:25,000 온맵지형도 「원창」·「신평」·「백일」·「화양」, 등고선간격 10m, 『총람』 15-65.

를 제외하면 기껏해야 길이가 200m 정도이고 높이도 모두 100m 이내로 독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sup>20</sup> 독도는 떨어져 나간 부스르기섬이 아니다.

셋째로, 독도를 ‘동섬, 똥섬, 판섬’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지금은 모두 ‘독도’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한자표기 ‘獨島’를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관행이 되어 그럴 뿐이고 본래 예전 호칭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독섬’이었고, ‘독섬’으로 불렀다는 구술(口述)과 기록도 남아 있다.

산의 경우에 ‘동떨어진 작은 산’을 ‘동매(동메)가 아니라 ‘독매’로 표기한 사례도 있으므로, ‘동떨어진 작은 섬’을 ‘동섬’이 아니라 ‘독섬’으로 부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실제로 산의 경우에는 〈그림 8〉의 고금도에서도 ‘독매’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독매’로 표기된 이름은 민간에서 부르는 ‘동매[torŋɐ]’를 한글로 적은 것일 뿐이다. [torŋɐ]로 부르고, [torŋɐ]로 들리는 산 이름을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동매’와 ‘독매’가 모두 가능한데 그중 독매를 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말 현대어는 말음이 내파(內破; 不破)하므로 -k 뒤에 n, m이 오면 앞의 -k가 뒤에 오는 비음 n, m에 동화되어 비음 -ŋ으로 변하기 때문이

20 여수의 오동도는 육지에서 750m 떨어져 있고, 동섬으로서는 매우 커서 면적이 13만㎡로 독도의 2/3 수준이지만, 높이는 42m에 불과하다. 거제도 북쪽 끝의 판섬(《鑛海》)은 길이가 약 400m에 이르지만 폭이 매우 좁다(그림 9).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다. 즉 흔히 자음접변이라고 하는 자음동화(consonant assimilation)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매[top-mɛ]’를 ‘독매[tok-mɛ]’로 오인하여 독매로 표기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독섬’은 그것과 경우가 다르다. ‘동매’와 ‘독매’는 모두 동매로 발음되지만 독섬은 독섬으로만, 동섬은 동섬으로만 발음된다. 독섬[tok-səm]은 -k 뒤에 s가 이어지므로 자음동화가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이다.

‘동산, 똥산’을 東山, 洞山으로 표기하는 것은 음을 충실히 표현한 것이지만 뜻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獨山이라는 표기가 더 어울린다. 동산, 똥산은 동쪽이나 동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홀로 떨어져 있는 산이기 때문이다. 현재 ‘독산’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獨山이라는 한자 표기가 익숙해진 뒤에 생긴 이름일 것이다. 독두천(獨豆川)도 마찬가지다. ‘동두천’을 한자로 표기할 때에 ‘동’의 뜻을 살려서 獨豆川으로 표기하지만 ‘독두천’이라 부르는 사람은 현재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떨어져나간 부스러기 동섬, 똥섬, 판섬이 아니다. 獨島는 동섬을 獨島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독섬을 獨島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한자 표기가 익숙해져서 이제는 동해의 ‘독섬’을 독도(獨島)로 부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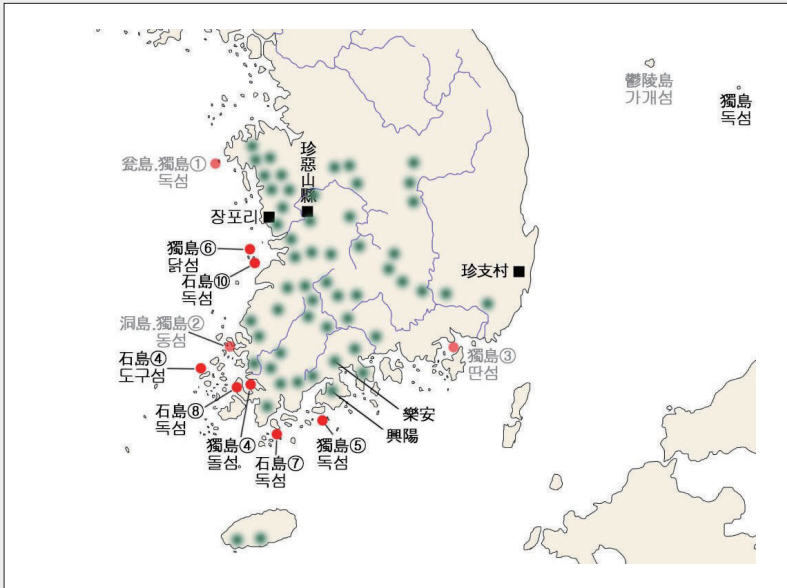
## IV. 돌섬[石島], 닭섬[鷄島]과 독섬

### 1. 돌섬[石島]과 독섬

처음에 보았던 동여도의 닭섬을 왜 獨島, 즉 독섬이라 했을까? 그 이유를 밝히기 전에 우선 독도와 돌섬[石島]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47년에 방중현은 독도의 ‘독’이 ‘돌’의 방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sup>21</sup>

<sup>21</sup> 방중현, 1947, 「독도의 하루」, 『경성대학 예과신문』 13호.



〈그림 13〉 방언 ‘독’ 사용 지역의 독섬(獨島·石島)

■ 육지에 반점 표시된 곳은 돌의 사투리로 ‘독’을 쓰는 곳, 이름을 흐릿하게 표시한 獨島는 돌섬과 무관한 獨島. 섬 번호는 〈표 3〉의 번호

이후로 칙령 41호의 石島에 관한 해석이 논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여러 학자들이 전라도 방언에서 ‘돌’을 ‘독’이라 하므로 칙령의 돌섬 石島는 독섬 獨島를 뜻한다는 견해를 꾸준히 제기했고, ‘독’이 ‘돌’의 방언임을 여러 지명에서 확인하기도 했다.<sup>22</sup>

일제강점기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의 여러 지역에서 돌을 ‘독’으로 발음하였다.<sup>23</sup> 그 지역

22 신석호, 1960, 『독도의 내력』, 『사상계』 85호, 128쪽;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7~200쪽.

23 〈그림 13〉에 표시된,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방언 ‘독’을 쓰는 지역으로 지목한 곳은 충청도(忠淸道)의 강경, 공주, 남포, 보은, 서산, 서천, 예산, 오천, 조치원, 청양, 청주, 해미, 홍산, 홍성, 전라도의(全羅道)의 강진, 고흥, 곡성, 구례, 군산, 김제, 나주, 남원, 담양, 목포, 무주, 벌교, 보성, 순창, 순천, 여수, 영광, 영암, 옥과, 운봉, 임실, 장성, 장수, 장흥, 전주, 정읍, 진안, 함평, 해남, 경상도(慶尙道)의 거창, 김천, 문경, 밀양, 상주, 양산, 창녕, 하동, 함창, 함천, 제주도(濟州島)의 대정군, 서귀포이다[小倉進平 著, 이상규·이순형 교역, 2009, 『조선 어방언사전』, 한국문화사, 288쪽(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은 <그림 13>의 지도를 보면 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여 충청도,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독’이라는 방언을 쓴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1882년에 울릉도 김찰사 이규원(李奎遠)이 울릉도에서 만난 주민들의 출신지는 대부분 전라도 흥양(興陽, 현 고흥), 낙안(樂安, 현 순천)이었고, 그곳은 사투리 ‘독’을 쓰는 곳이었다.

〈표 3〉 육지측량부지도의 獨島와 石島

육지측량부지도		『한국지명총람』		소재지
도엽 이름	섬 이름	섬 이름	권-쪽	
木浦054	*獨島④독섬	독섬·독섬	16-168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居金島033	獨島⑤독도	獨島·독섬	13-116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蘼島292	石島①돌섬	돌섬·石島	17-229	#경기 구리시 토평동
大阜嶋263	石島②돌섬	석도·모도·털미섬	18-121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江華309	石島③석도	돌섬	17-108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飛禽島052	*石島④석도	도구섬·道口島	14-462	전남 신안군 비금면 광대리
木浦054	石島⑤돌섬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蘆花島023	石島⑥석도	-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충도리
蘆花島023	*石島⑦석도	독섬·石島	15-321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충도리
右水營040	*石島⑧석섬	독섬	16-248	#전남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右水營040	石島⑨돌섬	석도	16-258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壯子島131	*石島⑩돌섬	독섬	12-30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狐島176	石島⑪석도	石島	4상-405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外烟島175	石島⑫석도	石島	4상-40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於靑島159	石島⑬-	돌섬·석섬·石島	4하-15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 獨島의 변호는 <표 1>과 같게 하였다.
- 육지측량부지도 한글 표기 섬 이름은 가타카나 표기를 옮겨 쓴 것.
- \*는 돌섬을 獨島로, 또는 독섬을 石島로 표기한 사례.

‘돌’의 사투리 ‘독’이 전라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는 ‘독살’이라는 고기 잡는 시설이 있다(그림 13).<sup>24</sup>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해안선에서 약간 떨어진 바다쪽에 돌담을 빙 둘러 쌓아놓고 밀물 때 물려 들어온 물고기들이 썰물 때에 돌담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나가게 하여 물고기를 잡는 시설물을 ‘독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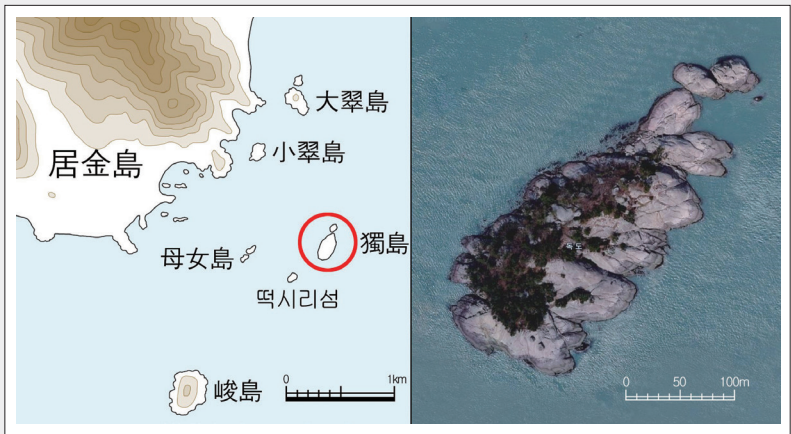
24 이용한, 2001, 『사라져가는 토종문화를 찾아서, Ⅱ』, 실천문화사, 133쪽.

이라 부르고 한자로는 석전(石箭)이라 쓴다.<sup>25</sup> ‘石箭’을 ‘독살’이라 하므로 ‘石島’도 ‘독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해의 獨島를 石島라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차례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獨島’로 기록된 섬을 ‘돌섬’으로 부르거나, ‘石島’로 기록된 섬을 ‘독섬’으로 부른 사례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육지측량부지도의 獨島, 石島를 찾아서 <표 3>에 제시했다.<sup>26</sup>

우선 獨島부터 살펴보자면 앞에서 <표 1>에서 제시한 육지측량부지도의 獨島 가운데 A류의 獨島 ①은 ‘독섬[瓮島]’으로, B류의 獨島 ③은 ‘판섬’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그것들을 제외하면, C류 獨島 ④와 獨島 ⑤가 남는다. <木浦<sup>054</sup>>의 獨島 ④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에 섬으로 있다가 지금은 육지로 변했는데, 『한국지명총람』에 돌섬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돌섬을 ‘獨島’로 표기한 사례에 해당된다.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에 있는 <居金島<sup>033</sup>>의 獨島 ⑤는 『한국지명총람』에 ‘독섬’이라 하였는데 독섬이 동섬을 뜻하는지 돌섬을 뜻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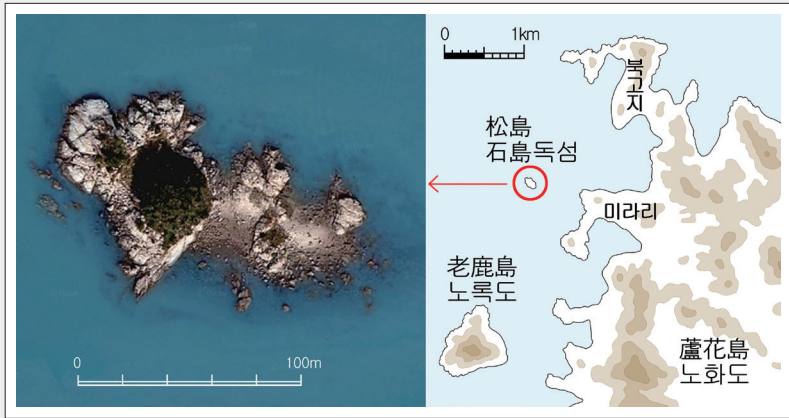


<그림 14> 고흥의 獨島⑤  
 ■ <居金島<sup>033</sup>> 등고선 간격 40m, Daum지도 스카이뷰(2009)

25 돌로 만든 어살[漁箭]은 석전(石箭) 또는 석방렴(石防簾)이라 하고, 나무나 대나무 울타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살은 죽방렴(竹防簾)이라 한다.

26 19개 가운데 북한의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에 있는 <沛川里<sup>440</sup>>, <雲霧島<sup>452</sup>>, <天台洞<sup>464</sup>>, <津江浦<sup>372</sup>>, <靑丹<sup>326</sup>>, <椒島<sup>387</sup>>의 석도(石島)는 분석이 불가능하여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그림 15〉 노화도 서쪽의 독섬 石島  
 ■ 《居金島<sup>7033</sup>》 등고선 간격 40m, Daum지도 스카이뷰(2009)

불분명하다(그림 14). 그런데 주변 섬의 배치를 보면 獨島 ⑤는 거금도 해변에서 가장 멀지도 가장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있고, 거의 비슷한 거리에도 독도보다 훨씬 작은 떡시리섬이 있으므로 동섬이나 탄섬일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사진에서 명백히 돌섬으로 보이므로 돌섬을 獨島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石島로 표기된 섬을 살펴본다. 〈표 3〉에서 육지측량부지도에 石島로 표시된 섬은 19개가 있는데<sup>27</sup> 그중 남한에 있는 13개 석도 가운데 완도, 해남, 군산의 石島 ⑦, ⑧, ⑩에는 ‘독섬’이라는 별칭이 있어서 돌섬[石島]을 ‘독섬’으로 부른 사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신안의 石島 ④는 ‘도구섬’으로 부르므로 그것도 ‘독섬’과 같은 부류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sup>28</sup>

그리고 〈표 3〉에 제시된 石島 외에도 육지측량부지도에 松島(솔섬)으로 표기된 전남 완도군 노화도 고막리의 섬에 대해서는 『한국지명총람』에 ‘石

27 《釜山》의 흑석도(黑石島), 《廣梁灣西部<sup>402</sup>》의 결석도(結石島), 《身彌島<sup>463</sup>》의 부석도(腐石島)는 제외한다. 《安邊<sup>439</sup>》에도 ‘돌섬’이 있으나 한자 표기가 석도(石島)인지는 불확실하여 제외한다.

28 돌의 방언으로 ‘독’ 외에 ‘도구’도 있다.

島'와 '독섬' 두 이름이 등재되었으며,<sup>29</sup> 지도에서 줄곧 '독섬'으로 표기되어 왔다. 그 섬은 위성사진으로도 돌투성이 돌섬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그림 15)),

## 2. '돌·독'의 어원 \*turk

돌섬을 어떤 이유로 독섬으로도 부를 수 있었을까? 돌[石]은 '돌'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고어사전』에 보이는 '돌'의 중세국어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sup>30</sup>

- (가) 돌: 石 돌 석 -『訓蒙字會』
- (나) 돛: 石은 돌히오 壁은 바르미니 -『釋譜詳節』
- (다) 돛: 돛이 아니라(匪石) -『女四書諺解』

(가)에 보이듯이 돌[石]은 대부분 '돌'로 나타난다. 『훈몽자회(訓蒙字會)』, 『석봉천자문(石峯千字文)』, 『신증유합(新增類合)』 등의 사전에서도 '石'을 모두 '돌 석'으로 풀이하였다. 그런데 (나)에 보이듯이 '돌' 뒤에 조사가 붙어 곡용(曲用)하면 '돌ㅎ' 형태의 '돌히, 돌홀, 돌콰'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에 보이듯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문헌에서는 '돛'으로도 나타난다.

이 세 가지 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돛'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돌의 아주 오랜 고어가 '도락[\*turak]'이기 때문이다.<sup>31</sup> '도락'이 '돛'이 되고,

29 한글학회, 1983, 『한국지명총람』 15(전남편Ⅲ), 315쪽. 인용하는 돌섬을 독도(獨島)로 독섬을 석도(石島)로 표기한 사례 다섯을 들었다(신용하, 1996, 앞의 책, 197쪽). 그 가운데 고흥군 오천리의 獨島⑤(그림 14), 완도군 충도리의 石島⑦, 완도군 고막리의 石島(그림 15) 셋은 인정되지만,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의 상독도(上獨島), 하독도(下獨島)는 <箕佐島053>에 上獨島(ウットンソム), 下獨島(アレトソム)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돌섬'이 아니라 '돛섬', 즉 '돛섬·탄섬'을 독도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30 『訓蒙字會』 상4, 『釋譜詳節』 9:24, 『女四書諺解』 2:12(남광우 編著, 1997, 『教學 古語辭典』, 교학사, 421~423쪽).

31 고대국어의 후설 고모음 \*u는 지금의 '우' 또는 '오'에 해당된다.

다시 ‘똥’을 거쳐 ‘돌’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그 흔적은 지금의 충남 부여군 석성면(石城面)에 관한 『삼국사기』 지리지의 글에 남아 있다.

(라) 石山縣 本百濟珍惡山縣 景德王改名 今石城縣<sup>32</sup>

이 글에서 석(石)이 진악(珍惡)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珍惡을 당시의 중국어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표 4>에 제시했다.<sup>34</sup>

우선 악(惡)부터 보자면, 惡에는 ‘나쁘다’는 뜻의 입성 오각절(烏各切), ‘미워하다’는 뜻의 거성 오로절(烏路切), ‘어떻게’라는 뜻의 평성 애도절(哀都切), 세 가지 음이 있는데<sup>35</sup>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나쁘다는 뜻의 오각절음을 취했다. 惡의 성모 영모(影母)는 예전에는 주(周) 시기 상고음을 \*ʔ-로 상정했으나 판우윈[潘悟雲]은 한장어(漢藏語) 비교, 해성(諧聲) 체계를 통해 \*q-로 재구했고 정장상팡[鄭張尙芳]도 그에 따랐다.<sup>36</sup> 그런데 구개수 폐쇄음 \*q-는 한(漢) 시기에 성문 폐쇄음 \*ʔ-로 변했다. 그러므로 당시 음으로 재구하자면 \*ʔak이 된다. 그리고 영모(影母) ʔ는 한국한자음에서 거의 묵음(默音)으로 실

32 『삼국사기』 권36, 지리지3 熊州 扶餘郡

33 돌을 ‘진악(珍惡)’으로 표기한 사실에 관해서는 오래전에 알려져 있었고, 독도와 관련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서종학, 2008, 『獨島·石島의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36-3, 47쪽).

34 B. Karlgren, 1957,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GSR No. 453i·805h; 董同龢, 1944, 『上古音韻表稿』,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217·163쪽; 王力, 1987, 『漢語語音史: 王力文集10』,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610·638·614·625쪽; 周法高, 張日昇·林潔明 編, 1973, 『周法高上古音韻表』, 臺北: 三民書局, 208·38쪽; 方桂, 1980, 『上古音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49·58쪽; S. A. Starostin(斯·阿·斯塔羅斯金), 林海鷹·王冲 譯, 2010, 『古代漢語音系的構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1989, *Reconstruction of Old Phonological System*, Moscow: Nauka), 279·273·311·243·245쪽; A. Schuessler, 2009, *Minimal Old Chinese and Later Han Chinese: A Companion to Grammata Serica Recens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328·68; W. H. Baxter, 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pp.427·488; 鄭張尙芳, 2013, 『上古音系(第2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565·514·250·257·261·247·173쪽; 潘悟雲, 2000,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87·262·283·336·88쪽.

35 『廣韻』上平聲 模11 烏小韻, 去聲 暮11 汙小韻, 入聲 鐸 19 惡小韻

36 潘悟雲, 1997, 『喉音考』, 『民族語文』 1997年 第5期(2002, 『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潘悟雲卷』,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10~220쪽 재수록).

현되었고, 이는 일본의 오음(吳音), 한음(漢音)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악(惡)은 삼국시대 초기에 백제에서 \*ak으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표 4〉 珍, 惡의 재구

연구자	珍		惡			
	陟鄰切, 知母 眞韻 平聲 開口 3等		烏各切, 影母 鐸韻 平聲 開口 1等			
	上古	中古	上古	中古		
Karlgren	*tʰiən	ʃ/4	tʰiēn	*ʔāk	ʃ/33	ʔāk
董同龢	*tʰiən	文	tʰiēn	*ʔāk	魚	ʔāk
王力	*tʰiən>tʰien	文	tin	*ak>ak	鐸	ak
周法高	*tʰjən	文	tʰim	*ʔak	鐸	ʔak
李方桂	*trjən	文	tʰjēn	*ʔak	魚	ʔāk
Starostin	*tər>*tən	文A	tʰin	*ʔāk>*ʔāk	鐸	ʔāk
Schuessler	*trən>*tʰin	文(1)	tʰin	*ʔāk>*ʔak	鐸	ʔāk
Baxter	*trjin/*tər	文	trin	*ʔak	鐸	ʔak
鄭張尚芳	*ʔʰiun>*tuun	文1	tʰim	*qaag>*ʔak	鐸	ʔak
潘悟雲	*kʰiun>*tuun	文1	tʰim	*qak	鐸	ʔak

- 상고음은 하나만 제시된 것은 先秦音이다. 왕리의 상고음은 周秦漢>魏晉南北朝, 스타로스틴은 先秦>漢, 슈에슬러는 先秦>後漢이다.
- 중고음은 南北朝~中唐의 전기중고음이다. 단 왕리는 隋~中唐의 음이다.
- 칼그렌과 동통허의 t는 tʰ로, i는 iʳ로 대체했다. ts-는 IPA로는 tʰ-에, t-는 tʰ에 해당한다. 백스터의 珍[\*tər]은 최근 에 수정한 재구음이다.
- ā, a:, aa는 장모음, ä는 단모음이다. â는 대체로 a와 같다.

문제는 한국한자음으로 ‘진[tʰin]’으로 읽는 진(珍)이다. 진(珍, 珍)이 고대 우리말 ‘돌’의 표기수단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유가 불분명했다. 경구개음 성모를 지닌 tʰin은 초기에는 아마도 치경음 성모를 지닌 tsin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ts-나 tʰ-나 모두 ‘돌’의 성모 t-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珍을 돌[\*tur]로 읽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珍의 음은 우리말에서 구개음화가 진행되기 전인 16세기까지만 해도 『신증유합』, 『석봉천자문』 등에 ‘딘[tin]’으로 표기되어 있다.<sup>37</sup> 그리고 珍은 중고

37 『新増類合』(1576) 상권 26葉 “珍 珍 보비 딘”; 『石峰千字文』(1583) 3葉 “珍 보비 딘”. 이토 지유카(伊藤智由香)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六祖法寶壇經諺解』(1496), 『訓蒙字會』(1527), 『小學諺解』(1586)를 비롯하여 16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음에서 진운(眞韻)으로 진섭(臻攝)에 속하지만 상고음 운부는 진부(眞部)가 아니라 문부(文部)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상고음에서 珍은 ‘진’보다는 ‘둔’에 가깝게 읽었을 가능성을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국어 한자표기에서 일부 \*n은 \*r과 통한다.

초기에 칼그렌(B. Karlgren)은 \*에 3등개음 j(i)를 결합시킨 \*tj-가 구개음화에 의해 t-로 변한 것으로 추정했다.<sup>38</sup> 1971년에 리광구이(李方桂)는 권설음화(捲舌音化) 작용을 하는 개음 성격의 r을 상정하여 3등개음 j와 함께 결합한 \*trj-로 재구했다.<sup>39</sup> 그런데 그 전에 풀리블랭크(E. G. Pulleyblank)는 3등개음이 상고음에는 없었고 만당(晩唐) 시기 후기중고음에 가서야 나타났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수용되어 점차 정설로 자리 잡으면서 3등개음 j가 삭제되기 시작했다.<sup>40</sup> 따라서 리광구이의 \*trjən은 \*trən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마침내 개음 \*j-는 정상상광과 판우원의 재구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1987년에 정장상광은 l과 d의 중간쯤의 폐쇄음화 성격을 지닌 l'을 상정하고, 그것이 설근음(舌根音) k-계 또는 순음(唇音) p-계 뒤에 놓여 개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인 \*k'이 \*k로 변했다고 주장하였다.<sup>41</sup> 한편 판우원은 2001년에 정장상광이 제시한 l'까지 고려하면 상고음에 유음(流音)이 너무 많다고 반대하면서 지조(知組)가 설근음과 해성(諧聲)하는 것에 착안하여 \*krl-로 재구했다.<sup>42</sup> 그 과정을 표에 제시하였다.

세기까지의 모든 문헌에서 예외 없이 ‘딘[tin]’으로 나타나 있다(伊藤智ゆき, 2007, 『朝鮮漢字音研究(資料篇)』, 東京: 汲古書院, 1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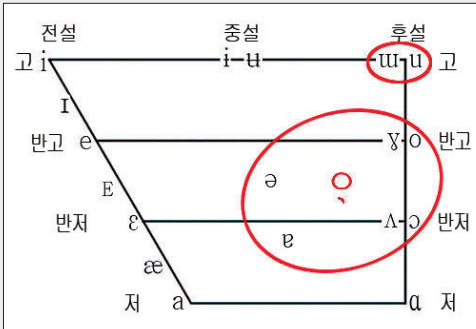
38 B. Karlgren, 최영애 역, 1985, 『고대한어음운학개요』 민음사, 32~33쪽(B. Karlgren 1954,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Chines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 26,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39 李方桂, 1980, 앞의 책, 15쪽.

40 E. G. Pulleyblank, 1962a,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Asia Major*, Vol.9, No.1, London: Percy Lund, Humphries & Co., pp.98~114.

41 鄭張尚芳, 1987, 「上古韻母系統和四等, 介音, 聲調的發源問題」, 『鄭張尚芳語言學論文集』上, 368쪽.

42 潘悟雲, 2002, 「流音考」, 『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潘悟雲卷』,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336~339쪽. 潘悟雲은 \*k·l-의 변화 과정을 \*k·l->\*k·r->\*k·t->t-로 설명했다.



〈그림 16〉 모음사각도의 ɯ·u와 ə  
 ■ 나란히 짝을 이룬 발음기호는 왼쪽 비원순모음, 오른쪽 원순모음

다음은 주요 모음이다. 20세기 말에 대세를 이룬 상고 6모음 체계에서 \*i, \*e, \*a, \*o, \*u 외에 또 하나의 모음을 스타로스틴(S. E. Starostin)은 \*ɔ로 보았고 보드만(N. C. Bodman)과 백스터(W. H. Baxter)는 \*ɨ로 보았으며 정장상광과 관우원은 \*ɯ로 보았다. 그래서 진(珍)

을 정장상광은 \*kri'un으로 관우원은 \*kriɯn으로 재구했다. 그 내용은 〈표 4〉 珍의 재구에 담겨 있다.

후설 원순 고모음 [u]와 짝을 이루는 후설 비원순 고모음 [ɯ]는 일본어에서는 대표적으로 す[su]에 나타나는 음인데, す는 영어로는 'su'로 표기하고 우리말로는 '스'로 표기한다. 결국 \*ɯn은 \*un에 가까운 음이다(〈그림 16〉).

마지막으로 운미 \*-n에 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스타로스틴은 『시경(詩經)』의 압운(押韻)이 작용한 전고전상고음시기(BC10~BC6세기)에 문부(文部) 3등자가 \*-ar이었고 고전상고음 전기(BC5~BC3세기)에 \*-r이 \*-n으로 변했다고 하였다. 그러한 글자 중의 하나였던 '珍'도 초기의 \*tar에서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 초까지는 \*tan으로 있었는데 단모음 ə에 개음 -j-가 개입하기 시작하여 중고음에서 \*j-ɰ-로 변했다고 보았다.<sup>43</sup>

한편 백스터는 초기 연구에서 설정했던 3등개음 j를 철회했다.<sup>44</sup> 그 후 2005년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상고에 \*-r이 존재했고 그것이 중원(中原)에서는 \*-n이 되었고 산둥반도(山東半島) 지역에서는 \*-j로 변했다고 하였

43 S. A. Starostin, 林海鷹·王冲譯, 2010, 앞의 책, 273쪽, 301쪽, 311~312쪽.

44 潘悟雲, 2002, 앞의 책, 326쪽.

다. 근래에 백스터는 사가르(L. Sagart)와의 공동저술에서 스타로스틴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중원에서 \*r\*~\*n\*과 함께, 늦어도 한(漢)시기까지 산둥반도지역 제(齊), 송(宋), 진(陳), 서(徐) 등에서는 \*r\*~\*j\*가 진행되었다고 보았다.<sup>45</sup> 한편 판우윈도 초기의 \*r\*이 후기상고음 단계에서 중원방언으로는 \*n\*이 되었고 동이백월(東夷百越) 지역에서는 \*l\*이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sup>46</sup> 결국 珍의 초기 음은 \*tar\* 또는 그와 가까운 음이었다는 견해가 차츰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珍을 ‘돌’로 읽는 것은 오래 전의 한자음이 전해진 것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부의 경우 주대(周代) 『시경』 시기의 \*r\*도 한대(漢代)에는 \*n\*으로 변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진을 돌로 읽는 것이 오래 전의 \*tar\*에서 왔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돌’을 ‘珍’으로 표기한 것은 고대국어 표기에서 일부 \*r\*을 \*n\*으로 표기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어 상고음에서 유음 운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체로 칼그렌 이후 리팡구이에 이르기까지 \*r\*이 존재했다고 파악했고, 1974년에는 슈에슬러(A. Schuessler)가 유음운미를 \*l\*로 수정했다.<sup>47</sup> 그런데 유음 운미가 후기상고음에서는 사라졌다. 야콘토프(S. E. Yakhontov)는 유음 운미의 탈락 또는 \*l\*로의 변화가 이미 기원전에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sup>48</sup> 덩방신(丁邦新)은 그보다 더 늦은 시기로 보아 전한까지 남아 있다가 후한 때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보았다.<sup>49</sup> 그리고 정장상광은 진·한·위 시기에 \*l\*로

45 William H. Baxter & Laurent Sagart, 2014,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52~255.

46 潘悟雲, 2007, 「上古漢語的韻尾\*~l與\*-r」, 『民族語文』 2007年 1期, 13~14쪽.

47 A. Schuessler, 1974, "Final -l in Archaic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Vol.2, No.1.

48 S. E. Yakhontov, J. Norman tr., 1978~1979, "Old Chinese Phonology," *Early China*, Vol.4, p.37.

49 Ting Pang-hsin, 1975, *Chinese Phonology of the Wei-Chin Period: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Taipei: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pp.239~240, Yakhontov와 丁邦新이 설정한 상고기 유음 운미는 \*l\*이 아니라 \*r\*이었다.

바뀌어 사라졌다가 육조시대에는 그 흔적마저 없어졌다고 보았다.<sup>50</sup> 결국 유음 운미 -n은 대체로 후한 시기를 전후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에서 유음 운미가 소멸되자 외국어의 유음 -r/-l을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 가운데 흔히 사용된 것이 \*n, \*t로 유음을 표현하는 것이다.<sup>51</sup> \*n을 활용한 鮮卑(Serbi), 安息(Arśak), 罽賓(Kaspir)이나<sup>52</sup> \*t를 활용한 涅槃(nirvāna), 薩雲若(sarvajña), 弗沙(puruṣa), 優鉢(utpala) 등이 그 예다.<sup>53</sup> 한자를 표기수단으로 쓰고 있던 한반도에서도 한국어의 유음 \*r을 표현하기 위해 중국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賓汶을 比勿이라고도 하고, 阿乙兮를 安賢이라고도 한 것처럼 -n로 -r을 표현하거나,<sup>54</sup> ‘말’을 末[mat]로, ‘물’을 勿[mut]로 쓰듯이 -t로 -r을 표현했다.<sup>55</sup>

珍도 마찬가지다. 삼국이 초기에 발흥할 때에는 중국어의 유음 운미가 사라져서 고대국어의 유음 발음을 지닌 \*tur를 표현하기 위해 珍[\*tʷən]을 사용하였고, \*turak을 珍惡[\*tʷənak]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고대국어의 \*u는 현대어에서 ‘우’, 또는 ‘오’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tur을 가장 가깝게 표현할 한글표기로 ‘돌’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돌을 뜻하는 珍惡은 \*turak으로 읽는다.

돌을 뜻하는 \*turak은 알타이어에서 갈라져 나온 말로 추정된다. 스타로 스티온의 ‘돌’을 뜻하는 원시알타이어 \*tiōl'a를 제시하고 이것이 오래 전 튀르

50 鄭張尙芳, 2002, 앞의 책, 182쪽.

51 정연식, 2017, 「신라 경주의 東川 沙梁과 西川 及梁」, 『한국문화』 58, 123쪽.

52 B. Karlgren, 張世祿 譯, 2015, 『漢語詞類』, 太原: 山西人民出版社(1933, "Word Families in Chines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5,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48~49쪽; E. G. Pulleyblank, 1962a, op. cit., p.77; 1962b,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II," *Asia Major*, Vol.9, No.2, p.218; W. South Coblin, 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p.72.

53 俞敏, 1999, 『俞敏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18~19쪽.

54 『三國史記』 권34, 地理志1 尙州 "安賢縣 本阿尸兮縣 一云阿乙兮 景德王改名 今安定縣"; 권37, 地理志4 都督府一十三縣 "賓汶縣 本比勿"

55 E. G. Pulleyblank, 1991,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Vancouver: UBC Press, p.218, p.327. 폴리블랭크의 전기중고음(EMC)으로 재구했다.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크어의 \*dal’, 통구스-만주어의 \*žola, 일본어의 \*(d)isi가 되었고 원시 몽골어에서 \*tilayun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sup>56</sup>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disi) \*jisi) isi가 되었다고 한다.<sup>57</sup> 중세한국어로 제시한 \*tor(h)는 조사가 붙어 곡 용을 하면 ‘돌히, 돌봐’ 등으로 ‘h’가 나타나는 현상을 제시한 것이다.

### 〈표 5〉알타이 여러 언어의 ‘돌’

	튀르크어	통구스어	몽골어	한국어	일본어
원시어	*dal’	*žola	*tilayun	-	*(d)isi
고대어	*taš	-	-	*tōr	*isi
중세어	taš	-	*čilaʒun	tōr(h)	isi
현대어	taš	žolo	šulū(n)	tol	ishí

■ S. A. Starostin 著, 김영일 譯, 1996, 『알타이어 비교연구』, 대일, 76~77쪽, 576쪽

■ 현대어의 경우에는 튀르크어는 터키어, 통구스만주어는 에벤키어, 몽골어는 부리아트어, 일본어는 도쿄어로 하였다.

원시몽골어 \*tilayun의 유성 연구개 마찰음(voiced velar fricative) [ɣ]는 유성 연구개 폐쇄음(stop) [g]와 아주 유사하여 [ɣu]는 [gu]와 [øu]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소릿값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유성음 /g/가 다른 음소와 대립된 독립 음소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g/는 [k]로 실현된다. 그리고 -n은 〈표 5〉에도 보이듯이 종종 탈락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원시몽골어의 \*tilayun과 고대국어의 \*turak(珍惡)은 아주 가까운 음이다. 우리말의 ‘돌’이 원시몽골어 \*tilayu와 같은 조어(祖語)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turak은 어중음(語中音)탈락(syncope)에 따라 \*turk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신라 초기 6촌 가운데 하나였던 觜山 珍支村에 있다.

珍支村의 珍은 앞서 보았듯이 \*tur로 읽었다. 그리고 고대어 한자표기에

56 S. A. Starostin 著, 김영일 譯, 1996, 『알타이어 비교연구』, 대일, 76~77쪽, 576쪽(1991, *The Altaic Problem and the Origin of the Japanese Language*, Moscow: Nauka).

57 S. A. Starostin, A. V. Dybo, O. A. Mudrak, 2003,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 Leiden·Boston: Brill, p.167.

서 支, 只를 \*ki로 읽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sup>58</sup> 따라서 珍支는 \*turki로 읽어야 한다.

정조 때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는 경주부 외방면(外方面)의 리(里) 이름으로 ‘上疇只里, 下疇只里’가 있다. 한국한자 ‘疇(돌)’이 石을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쓰던 글자다. 그리고 백제, 신라 지역에서 ‘支’와 마찬가지로 ‘只’도 우리말 속음(俗音)으로 읽을 때에는 지[ci]로 읽지 않고 ‘한기부[漢只部], 두드리기[豆等良只], 마지기[斗落只]’처럼 기[\*ki]로 읽는다. 따라서 ‘疇只’도 ‘돌기’로 읽는다. 그런데 돌기리[疇只里]는 지금의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石溪里)에 해당된다. 따라서 석계리(石溪里)의 石溪라는 지명이 ‘돌기(疇只)’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그림 18).

그에 덧붙여 『삼국사기』에서 珍支村을 于珍村이라고도 했다는 것은, 중세국어 ‘우’가 위를 가리키므로 于珍<sub>우</sub>돌은 지금은 ‘상석(上石)’이라 부르는 ‘上疇只’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7〉 경주 외동읍 石溪里의 돌마을[石村] 돌기촌[珍支村]

■ 국립건설연구소, 1970, 1:25,000지형도 「입실」, 등고선 간격 100m. 1964년에 조성된 上石 서쪽의 石溪池는 표시하지 않았다.

58 鮎貝房之進, 1972, 『雜攷(俗字攷·俗文攷·借字攷)』, 豊島區: 國書刊行會, 808쪽; 송기중, 2004, 『고대국어 어휘 표기 한자의 자별 응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64~166쪽; 김우림, 2015,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3~205쪽.

그것은 『호구총수』의 ‘돌기[兪只]’와 일치한다. 그리고 鶯山 돌기촌[珍支村]은 당연히 鶯山 기슭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말의 ‘수리, 술[述]’이 일반적으로 ‘山’을 지칭하므로 경주 치술령(鶯述嶺)은 치산(鶯山)의 고개[嶺]이다. 그리고 鶯山을 ‘자산’ 또는 ‘취산’으로 읽으므로 鶯山이 鶯山/鶯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치술령의 동쪽 기슭에 바로 경주시 외동읍(外東邑) 석계리(石溪里)가 있다. 그러므로 珍支村의 珍支가 玨支/玨只와 같은 \*turki를 표현한 글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鶯山 珍支村은 치술령 기슭의 석계리를 가리키며 특히 석계리 중에서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上石 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珍支村은 돌마을이다.

그런데 왜 돌[石]을 ‘珍, 玨’로 표기하지 않고 ‘珍支, 玨只’로 표기했을까? 지금의 강원도 통천군에 있었던 통일신라 습계현(習谿縣)의 고구려 시절 이름이 습비곡현(習比谷縣)이었고,<sup>59</sup> 신라 6부 가운데 하나인 습비부(習比部)를 습부(習部)로도 썼다. 그리고 혁거세의 비(妃) 알영(關英)은 아리영(娥利英)이라고도 했다. 결국 같은 우리말을 습(習), 알(闕)로 쓰기도 하고, 습비(習比), 아리(娥利)로 쓰기도 한 것이다.

어떤 음절의 발음이 외파할 때에 소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두 글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영어는 발음이 외파하므로 cake[keik]을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케이익’이라고도 하고 ‘케이크’라고도 한다. 프랑스어는 외파가 영어보다 강하다. 그래서 프랑스어의 호수 lac[lak]은 ‘락크’로 읽고 여성을 가리키는 femme[fam]은 통상 ‘팜’이라 하지 않고 ‘팜므’라 한다.<sup>60</sup> 그런데 우리나라 고대국어는 영어보다는 프랑스어처럼 외파가 아주 강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sup을 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두 음절 쫘비로 표현하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turk을 ‘돌기(돌그)’처럼 발음했고 이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turk를 珍支[\*turki]라 쓴 것이다.<sup>61</sup>

59 『삼국사기』 권35, 지리지2 溟洲 金壤郡

60 이하의 서술은 대체로 정연식, 2018, 「신라 초기 습비부(習比部) 고라촌[高耶村]의 위치」, 『한국사연구』 183에 따른다.

61 다만 중성모음(neutral vowel) schwa ㅚ를 쓰지 않고 왜 긴장도가 높은 전설 고모음 ㅣ를 사용했는지는 아직도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h 음소는 s 또는 k와 관련이 깊으며 대개 s 또는 k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2</sup> 중세국어의 torh도 \*turk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절음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고대국어에서는 \*-rk의 두 음소가 모두 확실히 구현되었지만,<sup>63</sup> 절음화가 완료된 뒤로는 ‘리, 려, ㄹ, ㄹᄡ’ 겹받침의 두 음소 가운데 하나는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12세기의 『계림유사(鷄林類事)』에서는 고려인들이 석(石)을 ‘突(돌)’이라 한다고 전했다. 결국 珍支, 玆只로 표현된 \*turk가 중세국어에서 tor(h)로 변하여 ‘돌히, 돌콰’처럼 뒤에 조사가 붙으면 h가 구현되고 그렇지 않으면 묵음으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결국 돌의 고행은 \*turak이었고 그것이 어중음탈락에 의해 \*turk가 되었는데 더 오랜 형태의 \*turak은 백제 부여의 지명에 남았고, 새로운 형태의 \*turk은 신라 경주 외동읍의 지명으로 남았던 것이다.

그런데 \*turk의 겹자음 -rk는 후에 -rh로 변했고, 고려 후기에 진행된 절음화에 의해 -rh의 이어지는 두 자음 음소를 모두 발음할 수 없게 되자 -r로 발음되었으나, 다만 뒤에 조사가 붙어 곡용할 때에는 -rh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곡용 여부에 무관하게 완전히 tor가 되었고, 말음의 -r이 이음화하여 -l로 구현됨으로써 지금의 돌[tol]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고대국어 \*turk의 -rk가 절음화에 따라 말음의 자음을 하나만 발음할 수 있게 되자 -r만 발음하여 지금의 ‘돌’이 되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돌[鷄]’을 현재 ‘닥’으로 발음하는 것처럼, -r이 아니라 -k를 발음하여 지금의 ‘독[tok]’이라는 방언이 생겨난 것으로 짐작된다.

의문이다. 그래서 고대국어의 \*가 정확하게 [인지도 의문이다.

62 김동소, 2011, 『한국어의 역사(수정판)』, 정림사, 62~66쪽.

63 중국에서는 주진(周秦)의 상고음에서도 외파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어의 절음화는 고대어에 한자가 들어올 때 입성(入聲) 한자음을 받아들이면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박은용, 1970, 「중국어가 국어에 미친 영향(음운편)」, 『효성여대연구논문집』 70; 김영진, 2002, 「국어의 內破화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이회).

### 3. 돌섬[鷓島]과 돌섬[石島]

앞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때로는 닭섬[鷓島]을 獨島로 표기하기도 했다. 닭섬이 어떻게 해서 獨島로 표기되었을까?

육지측량부지도에 이름이 기록된 섬은 2,780개가 있고 서(嶼)·암(岩)·초(礁)·여(洳)·탄(灘) 등으로 기록된 암초, 바위, 여울들이 428개다. 이름이 둘인 섬이 89개이므로 섬 이름은 모두 2,869개다. 그 가운데 큰섬 대섬[竹島]과 작은섬 솔섬[松島]이 100개와 79개로 가장 많다. 그리고 큰섬을 뜻하는 대섬[竹島]과 대도(大島)를 합하면 모두 111개, 작은섬을 뜻하는 솔섬[松島], 까치섬[鷓島], 소도(小島)를 합하면 모두 112개다.<sup>64</sup> 큰섬 111개와 작은섬 112개에 비해 돌섬[石島]은 20개에 그치고 있다. 상식적으로 예상컨대 돌섬이라는 이름이 큰섬, 작은섬보다는 적을지라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적다.

그것은 우리가 돌섬이라는 뜻으로 붙인 섬 이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닭섬[鷓島]이다.

돌섬의 고어는 ‘돌섬’이었고 그와 가장 유사한 이름을 지닌 섬을 찾는다면 단연 ‘돌섬[鷓島]’이다. <표 6>에서 石島 20개와 鷓島 26개를 합하면 모두 46개로서 목섬[項島] 41개와 비슷하다. 鷓島가 ‘돌섬’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이 결과가 자연스럽다.

우리나라 섬 가운데는 동물 이름이 붙은 섬들이 적지 않다. 소섬[牛島], 말섬[馬島], 양섬[羊島], 노루섬[獐

<표 6> 육지측량부지도 섬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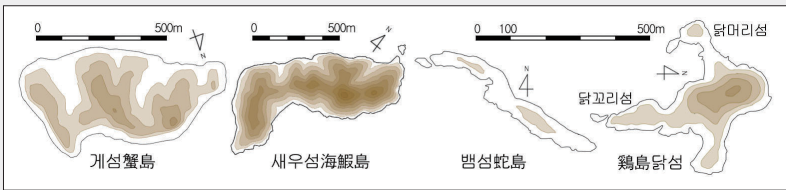
순위	이름	○島	*○島	計
1위	竹島	75개	25개	100개
2위	松島	63개	16개	79개
3위	項島	32개	9개	41개
4위	長島	24개	6개	30개
★5위	鷓島	21개	5개	26개
6위	鳥島	14개	9개	23개
★7위	石島	20개	-	20개
8위	鷓島	19개	-	19개
9위	牛島	17개	-	17개
10위	馬島	6개	11개	17개
11위	獐島	12개	4개	16개
12위	茅島	13개	2개	15개
13위	小島	14개	-	14개
14위	草島	6개	8개	14개
15위	鼠島	10개	3개	13개
16위	猪島	10개	2개	12개
17위	大島	10개	1개	11개

■ ○島는 ‘竹島’처럼 순수한 이름, \*○島는 ‘上竹島’처럼 앞에 ‘大, 中, 小, 上, 下, 內, 外’가 붙은 이름을 말한다.

64 정연식, 2019, 앞의 글, 152~153쪽에서 일부 섬 이름이 누락되어 숫자를 수정하였다.

島, 돌섬[猪島], 뱀섬[蛇島], 개섬[狗島], 새섬[鳥島], 까치섬[鶻島], 닭섬[鷄島], 쥐섬[鼠島], 개구리섬[蛙島], 게섬[蟹島], 새우섬[蝦島·鰳島], 파리섬[蠅島], 모기섬[蚊島]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소섬, 말섬, 돌섬, 개구리섬, 쥐섬, 파리섬 등은 어떤 뜻인지 지금으로서는 짐작이 되지 않는다. 다만 까치는 작다, 노루는 늑다(延), 새는 사이(間)로 짐작된다. 그러나 게섬, 새우섬, 뱀섬의 경우에는 실제로 섬의 형상이 해당 동물과 비슷하다(그림 18).

그렇다면 닭섬도 닭과 관련이 있을까? 鷄島 중에는 실제로 닭처럼 생긴 섬도 있다. <그림 18>의 끝에 제시된 전남 고흥 거금도 동북쪽의 鷄島는 실제로 닭처럼 생겼고 주변에 닭머리섬, 닭꼬리섬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鷄島들도 닭과 관련이 있을까?



<그림 18> 동물 이름 섬들

- 개섬: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새우섬: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뱀섬: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닭섬: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 국토지리정보원, 2014, 1:5,000 온맵지형도, 등고선 간격 10m. 왼쪽부터 「순천078」, 「고흥029」, 「통영054」, 「거금010」

육지측량부지도에 鷄島로 표기된 섬은 모두 21개이고, 앞에 글자 하나가 더 붙은 鷄島가 7개가 있어 모두 28개다(표 6). 그 가운데 검토에 부적합한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의 닭섬의 목록을 <표 7>에 제시하고,<sup>65</sup> 그 24개 가운데 현재 육지로 변한 4개를 제외하고 남은 20개 계도의 모양을 <그림 19>에 제시했다.

65 '鷄島' 28개 가운데 앞에 일반적인 大, 小, 上, 下가 아니라 특별한 글자가 붙은 <麗水059>의 蠟鷄島, <鎮興里461>의 敏鷄島와, 북한 지역이라서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는 <浦川里090>, <夢金浦356>의 鷄島를 제외한다.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표 7〉 육지측량부지도와 『한국지명총람』의 닭섬[鷄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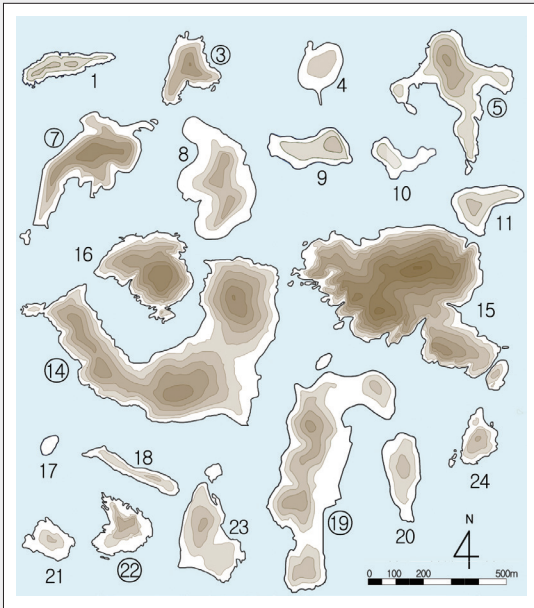
육지측량부지도		『한국지명총람』		소재지
도엽 이름	섬 이름	섬 이름	권·쪽	
巨次群島 <sup>020</sup>	鷄島①계도	鷄島, 닭섬	16-38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리
仁智里 <sup>029</sup>	鷄島②달섬	鷄島, 닭섬	16-48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盧花島 <sup>023</sup>	鷄島③계도	닭섬	15-304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梨津 <sup>031</sup>	鷄島④닭섬	鷄島, 닭섬	15-307	전남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居金島 <sup>033</sup>	鷄島⑤닭섬	鷄島, 닭섬	13-114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高興 <sup>044</sup>	鷄島⑥계도	鷄島	13-158	#전남 고흥군 접암면 여호리
突山 <sup>045</sup>	上鷄島⑦웃닭섬	上鷄島	15-65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下鷄島⑧아래닭섬	下鷄島	15-65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箕佐島 <sup>053</sup>	鷄島⑨닭섬	鷄島, 닭섬	14-485	전남 신안군 안좌면 탄동리
	鷄島⑩닭섬	-	-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鷄島⑪닭섬	鷄島, 닭섬	14-486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木浦 <sup>054</sup>	鷄島⑫닭섬	鷄島, 닭섬	15-226	#전남 영암군 산호읍 나불리
	鷄島⑬닭섬	鷄島, 닭섬, 닭섬	15-234	#전남 영암군 산호읍 나불리
彌勒島 <sup>062</sup>	鷄島⑭닭섬	楮島, 닭섬	10-185	경남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舊助羅 <sup>063</sup> (栗浦)	大鷄島⑮대덕도	大鷄島, 큰닭섬	10-195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小鷄島⑯소덕도	小鷄島, 작은닭섬	10-195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務安 <sup>066</sup>	鷄島⑰닭섬	닭섬	14-17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巨濟島 <sup>075</sup>	鷄島⑱달섬	鷄島, 닭섬	8-42	경남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鎭海 <sup>087</sup> (鎭海)	鷄島⑲기도	鷄島, 닭섬, 닭섬	10-9	경남 창원시 구산면 내포리
	小鷄島⑳소기도	小鷄島, 작은닭섬	10-10	경남 창원시 구산면 내포리
壯子島 <sup>131</sup>	鷄島㉑닭섬獨島⑥	鷄島, 닭섬	12-31	전남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末島 <sup>145</sup>	鷄島㉒닭섬	鷄島	12-29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安眠島南部 <sup>190</sup>	鷄島㉓닭섬	鷄島, 닭섬	4하-45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白牙島 <sup>245</sup>	鷄島㉔계섬	鷄島, 닭섬	18-124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 기본적으로 지워진 <舊助羅<sup>063</sup>>는 1963년판「栗浦」로, <鎭海<sup>087</sup>>는 1957년판「鎭海」로 대체함.

〈그림 19〉를 보면 앞서 제시한 고흥의 5번을 포함하여 3번, 7번, 14번, 19번, 22번은 닭의 형상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제시된 20개 가운데 나머지 14개는 닭과 무관해 보인다. 그렇다면 왜 닭섬이라 불렀을까?

닭섬이라는 이름, 鷄島라는 표기는 대섬, 솔섬이 그랬듯이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둘’의 고대국어가 ‘도락’이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했다. 중세국어에 ‘둘[tolk]’이 있었음도 알고 있다. 또한 고대국어로 ‘둘[\*turk]’이 있었음은 珍支村이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데 ‘둘’과 음이 아주 비슷한 중세국어로 ‘똥[telk]’이 있다. ‘둘’과 ‘똥’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고대 이전의 원시어로 돌아가면 둘은 더 유사하다.



〈그림 19〉 닭섬(鷄島)의 여러 모양

- 국토지리정보원, 2014, 1:5,000 은택지형도. ①「늘옥080」, ③「완도075」, ④「완도038」, ⑤「거금010」, ⑦「여수054」, ⑧「여수064」, ⑨「하의007·008」, ⑩「자은093」, ⑪「자은083」, ⑭「통영096·097」, ⑮「매물012·022」, ⑯「매물013」, ⑰「목포057」, ⑱「거제001」, ⑲·⑳「마산062」, ㉑「신시078」, ㉒「신시058·068」, ㉓「고남018」, ㉔「백야069」. 등고선 간격 10m.
- 번호는 〈표 7〉의 번호이며, 번호에 ○표한 점은 닭 모양의 섬

중세국어 ‘뚝’을 IPA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대국어에서는 더욱 복잡해진다. 우선 고대국어에 모음 ‘으’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며, 존재했다고 보는 연구자들의 견해도 서로 달라서 그 소릿값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나를 주장한 바를 보면 \*o, \*ɔ, \*ʏ, \*ə, \*ɐ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sup>66</sup> 〈그림 16〉을 보면 고대국어에 ‘으’가 독립된 음

소로 존재했다고 믿는 연구자들이 각각 제시한 모음들은 대개 반고~반저 상태에서 중설~후설에서 형성되는 모음들이다. 그것들은 \*u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뚝’과 ‘뚝’은 서로 가까운 음이다.

어원을 캐어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더욱 그렇다. 닭을 뜻하는 원시알타이어는 \*č̣oro 또는 \*č̣orok ʷ였고, 원시통구스어에서는 \*turakī, 원시몽골어에서는 \*turayu로 나타난다. 그것들은 ‘뚝’의 고어 \*turak, \*turk과 매우 유사하며 중세국어 ‘뚝’과도 아주 유사하다(〈표 7〉). 중세국어에서 ‘뚝’과 ‘뚝’의 넘나듦은 고대국어에서는 더 쉬웠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뚝섬을

66 박창원, 2002, 『고대국어 음운』, 태학사, 148~150쪽; 김동소, 2011, 앞의 책, 80쪽.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독섬이라고도 불렀고 한자로 石島, 鷄島, 獨島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처음에 제시했던 군산의 독섬이 어째서 동여도에 獨島로 표기되었는지는 이제 이로써 설명된다. 군산의 독섬(鷄島<sup>2)</sup>)은 ‘독섬’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절음화에 따라 겹자음을 받음할 수 없게 되자 대개 독은 ‘닥’으로, 독은 ‘돌’로 받음했지만 일부 방언에서는 독을 ‘독’으로 받음했고 그것이 獨島로 표기된 것이다. 실제로 군산의 독섬은 닭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겼다. 그리고 섬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다(그림 20).

〈표 8〉 ‘닭’과 ‘돌’의 비교

원시알타이어 닭 *t'ōro(k'V), 돌 *tiōl'a					
	튀르크어	통구스어	몽골어	한국어	일본어
원시어	닭 *torgaj 돌 *dal'	*turākī *žola	*turayu *tilayun	*tārk (*turak)	*tōri *(d)isi
고대어	닭 *toriya 돌 *taš	-	*tura'un -	*tārk (*turk)	*tori *isi
중세어	닭 - 돌 taš	-	- *čilaun	tārk tōr(h)	tōri isi
현대어	닭 turgaj 돌 taš	turākī žola	turlāg šulū(n)	tak[talk] tol	tōri ish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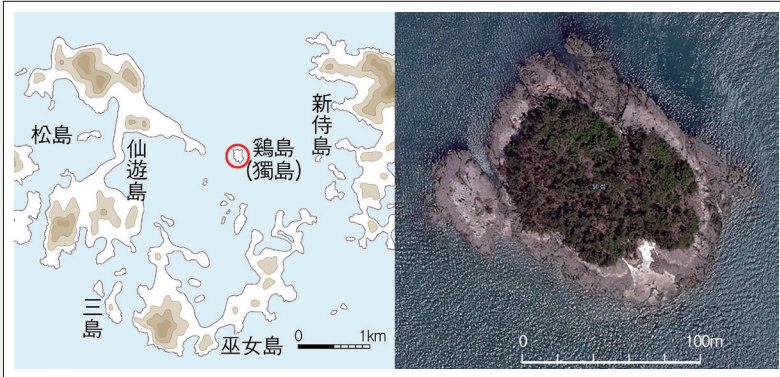
■ Starostin · Dybo · Mudrak, op. cit., p.1462; Starostin, 김영일 역, 앞의 책, 76~77쪽, 576쪽.

■ 윗줄의 ‘닭’은 원시알타이어는 새, 터키어는 작은새 · 종달새, 통구스어와 몽골어는 까마귀, 한국어는 닭, 일본어는 새를 뜻한다.

지금은 ‘닥’으로 발음하는 것으로는 돌만이 아니라 닥(楮)도 있다. ‘닥섬’ 또는 ‘딱섬’이라 부르는 楮島는 육지측량부지도에 9개가 남아 있는데,<sup>67</sup> 이것이 독섬과 상통할 수도 있으므로 楮島도 돌섬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의 딱섬 楮島는 《彌勒島 062》에 ‘닭섬鷄島’이라는 이름이 병기되어 있다.<sup>68</sup> 그리고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선리의 楮島(《望雲<sup>078</sup>》)는 현재 닭섬으로 부르고 있다.

67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의 《蘆花島<sup>023</sup>》의 저도(楮島)는 가타카나로 ‘돛섬’으로 써어있고, 『한국지명총람』에도 돌섬, 楮島로 표기되어(『총람』 15~320) ‘楮島’가 잘못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외했다.

68 한글학회, 1980, 『한국지명총람』 10권, 185쪽.



〈그림 20〉 선유도리의 獨島(鶏島<sup>21</sup>)

■ <<壯子島<sup>151</sup>>> 등고선 간격 40m, Daum 지도 스카이라이프(2009)

그러나 ‘닥[楮]’과<sup>69</sup> ‘닭[鷄]’의 경우, 절음화 이후에는 음이 아주 유사하지만 절음화 전에는 발음이 외과하여 겹자음이 모두 받음되었으므로 음이 상당히 달랐다. 섬에 이름이 붙여진 시기는 당연히 절음화 전이었을 것이므로 ‘楮島’와 ‘鷄島’가 같은 뜻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지명 표기의 보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절음화가 완결된 뒤에 일부 닥섬과 닭섬이 뒤섞였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V. 고종 칙령의 石島

1900년의 칙령 제41호 제2조에는 “군청 위치(郡廳位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할 사(事)”라 하였다. 이 조항에서 석도가 독도인지 관음도인지 논쟁거리가 되었다.

울릉도 주변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가운데 큰 섬이 죽

69 『訓蒙字會』 上:10, 『新增類書』 上:9 “楮 닥더”

도와 관음도(觀音島)다. 그런데 칙령에서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차례대로 언급했으므로 그것이 크기순으로 울릉도와 죽도와 관음도를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일본 학자들은 석도가 울릉도 가까이에 있는 섬이고 주위에 있는 섬들 가운데 죽도를 제외한 큰 섬은 관음도이므로 석도는 관음도를 지칭한다고 주장했다.<sup>70</sup>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첫째, 울릉도 동북쪽 해상의 섬 관음도에는 말 그대로 ‘가는섬[細島]’ 또는 ‘관음도(觀音島)’라는 이름도 있고 ‘목섬[項島]’이라는 이름도 있는데,<sup>71</sup> 이런 기존의 명칭들을 다 제쳐놓고 굳이 石島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작명을 하여 칙령에 썼을까?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관음도를 다른 섬들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石島로 표기했을까? 울릉도 주변의 섬들 가운데는 ‘구멍바위’, ‘판바위’, ‘삼선암’, ‘북저바위’ 등의 돌섬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이름의 섬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관음도를 특정하기에는 ‘石島’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셋째, 관음도는 울릉도에서 70m 거리에 있어 울릉도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섬이다. 군 행정구역을 설정하면서 울릉도에서 2km 떨어진 죽도를 울도군(鬱島郡)에 포함할 때에는 70m 거리의 관음도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관음도가 울도군의 관할에 속한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울도군의 관할 구역 설정에서 독도를 제외하거나 또는 독도를 의식하지 않고, 울릉도에 가까운 주변 여러 섬들도 포함시킨다는 것을 표현하자면 ‘울릉전도와 죽도와 석도’로 표현하지 않고 아마도 ‘울릉전도와 주

70 예컨대 下條正男, 2008, 『獨島呼稱考』, 『人文·自然·人間科學研究』 19, 拓殖大學人文科學研究所.

71 정영식, 2019, 앞의 글, 186~189쪽. 목섬[項島]이란 큰 섬 옆에 바싹 붙어 좁은 물길을 형성하는 작은 섬을 말하며, 섬목[島項]은 작은 섬과 함께 좁은 물길을 형성하는 큰 섬의 일부분이다. 1882년에 이규원(李奎遠)이 작성한 ‘울릉도외도(鬱陵島外圖)’와 일부 지도에서는 관음도(觀音島)를 ‘항도(項島)’로 표기해야 하는데 ‘도항(島項)’으로 잘못 표기하여 혼란을 가져왔다. 『韓國水産誌』(1910)에서 관음도를 지칭하는 ‘서항도(鼠項島)’는 ‘가는섬[細島]’과 ‘목섬[項島]’을 결합시킨 ‘세항도(細項島)’의 변이음을 기록한 것이거나 음을 잘못 듣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항도(細項島)라는 이름은 <慈恩島<sup>065</sup>>에 보이며 현재 지도에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에 ‘세목섬’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다.

변의 여러 섬들’ 또는 ‘울릉전도와 울릉도 주변의 죽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을 뜻하는 다른 표현을 썼을 것이다.

넷째, 석도를 관음도나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주변의 죽도를 제외한 나머지 돌섬들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황제의 칙령에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고 막연하게 ‘竹島와 石島’로 기록하여, ‘竹島와 나머지 여러 石島’로 해석하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굳이 그런 뜻이라면 주변에 ‘암(岩)’자가 붙은 섬들이 많았으므로 ‘石島’보다는 ‘岩島’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竹島와 石島’의 석도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썼을까? 칙령의 요지는 울릉도와 그 가까이 있는 주변의 여러 섬들과 울릉도에서 멀리 떨어진 섬까지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우선 울릉도 자체를 ‘울릉전도’로 언급하고, 다음에 주변의 가까운 섬들을 대표하여 그 가운데 가장 멀리 있고 가장 큰 ‘죽도’를 언급한 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石島’를 언급한 것이다. 물론 그 석도는 독도를 말한다.

칙령이 작성된 시기에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으로 불렀다. 그리고 ‘독섬’이 ‘돌섬’을 뜻한다는 것도 명확했고 주민들 일부는 돌섬으로 부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獨島’라는 한자 표기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나 등장했다더라도 일반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사투리 이름 ‘독섬’을 뜻을 분명히 하여 ‘石島’라 했을 것이다. 칙령의 석도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VI. 맺음말

‘獨島’라는 이름은 예전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경우에 쓰였다. 첫째, 독 모양의 섬 독섬(筈島)이나 둘째, 동섬·똥섬·판섬이나 셋째, 돌섬이라는 뜻의 방언 독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동해의 獨島가 어떤 뜻의 이름인지

는 독도가 독모양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남은 두 가지 중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지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작은 산을 동산, 동매, 똥매, 판산이라 하고, 섬 가운데도 큰 섬 가까이나 육지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섬을 동섬, 똥섬, 판섬, 먹섬으로 불렀다. 본래 ‘동’은 꼬트머리 작은 부분이나 떨어져 나간 작은 부분을 지칭하며, 똥은 그것을 알잡아 보아 된소리로 발음한 것이고, 판(𪎮)은 남은 부스러기를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러한 산은 獨山이라 했다. 섬도 東島, 洞島, 同島, 糞島, 端島, 段島, 梧島, 梧桐島로 표기하는데 때로는 獨島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동해의 獨島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섬, 똥섬, 판섬은 대개 육지나 큰 섬 가까이에 있고, 아주 작은 섬이다. 그런데 독도는 동해안이나 울릉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일반적인 동섬, 똥섬, 판섬보다는 훨씬 크다. 그리고 동해의 독도를 독섬으로 불렀다는 자료는 꽤 있으나 동섬, 똥섬, 판섬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없다.

한편 예전 지도에는 독섬을 石島로 표기하거나 돌섬을 獨島로 표기한 것들이 여럿이 있다. 그것은 獨島가 돌섬의 방언 독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는 증거이다. 우리말에서 ‘돌’의 초기 형태는 원시 몽골어 \*turaγu에 뿌리를 둔 \*turak이었고 그것이 \*turk으로 변했으며 중세국어에서 다시 tor(h)가 되었다가 현대어에서 tol로 정착되었다. 초기에는 우리말의 말음이 외파(外破)하여 말음의 겹자음이 모두 충실하게 발음되었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절음화가 진행되면서 말음이 내파(內破: 不破)하여 겹자음 가운데 하나는 발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뚝[鷓]’은 ‘닥’으로 발음하고 ‘뚝[石]’은 ‘돌’로 발음하게 되었는데 방언에서는 ‘뚝’이 때로는 ‘독’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닭섬[鷓島] 중의 일부도 예전의 뚝섬을 표현한 이름으로 추정된다. 닭섬은 모양이 닭과 유사하여 닭섬으로 부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닭과 무관하다. 중세국어 ‘뚝’이 원시 알타이어 \*torokV에서 왔고 그것이 돌의 고대국어 \*turak과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에 뚝섬을 뚝섬으로 표현한 것이다.

결국 ‘독섬 獨島’는 ‘돌섬’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칙령 제41호의 石島도 독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칙령에서 울릉전도, 죽도와 석도를 언급한 것은 울도군 관할 구역으로 울릉도와 울릉도 주변의 여러 섬을 대표하는 죽도와 울릉도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를 두루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국문초록

독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독도(獨島)’는 우리말 ‘독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고지도에 獨島로 표기된 섬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독 모양의 웅도(瓮島)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독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육지나 큰 섬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섬을 가리켰다. ‘동’은 떨어져 나간 작은 조각을 말하며 한자로는 이따금 ‘독(獨)’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육지나 큰 섬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섬은 獨島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독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도는 떨어져 나간 작은 섬 ‘동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육지나 울릉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독도는 돌섬을 가리켰다. ‘독’은 돌을 뜻하는 방언이다. ‘돌’의 원시 한국어는 원시 알타이어의 \*tiol’a에서 기원하였고, 원시 몽골어의 \*turaγu와도 관련이 있는 ‘도락[\*turak]’이었다. [\*turak]은 어중음탈락(syncope)에 의해 고대 한국어에서 [\*turk]이 되었고, 중세 한국어에서 [tor(h)]가 되었으며, 근대 한국어에서는 돌[tol]로 변했다. 고대 한국어에서는 말음의 겹자음이 모두 발음되었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오직 하나만 발음되었다. 그러므로 \*turk는 tor가 되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tok로 발음되었다. 독도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1900년의 칙령에 나타나는 석도(石島)는 동해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獨島, 동섬, 돌섬, 고대국어, 상고음, 알타이어

## Abstract

### The Meaning and Derivation of “Dokseom (獨島)”

Chung, Yeon-sik  
(Seoul Women's University)

What's the meaning of the name of Dokdo(獨島) in the East Sea? Dokdo(獨島), a notational nam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ent by the name of Dokseom in Korea.

Old maps of Korea had three types of dokdo: First, dokdo referred to jar-shaped islands. This obviously does not correspond to Dokdo in the East Sea. Second, dokdo referred to separated scrap islands. Korean “동[doŋ]” means separated scrap, and it was sometimes written as “獨[dok]” in Chinese characters. Thus, small islands near the land or a big island could be described as “獨島.” This does not correspond to Dokdo either, as Dokdo is too big and too distant from the land or Ulleungdo(鬱陵島) to be considered as Dongseom.

Third, dokdo meant stone islands. “독[tok]” is a dialect of “돌[tol],” meaning stones. The Proto-Korean of [tol] was [\*turak] derived from Proto-Altaic \*tiŋ'a and related with Proto-Mongolian \*turaχu. Proto-Korean [\*turak] changed to [\*turk] by syncope in Old Korean and it changed to [tor(h)] in Middle Korean, and [tol] in Modern Korean. Each consonant in ending cluster could be expressed in Old Korean, but only one consonant could be expressed in Middle Korean. So [\*turk] was pronounced as [tor] in Middle Korean, but in some regions it was pronounced as [tok]. This case corresponds to Dokdo.

Thus, this paper asserts that “Stone Island[石島]” in 1900's Royal Decree indicated Dokdo.

#### Keywords

Dokdo, Dongseom, Dalseom, Old Korean, Old Chinese, Altaic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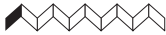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동소, 2011, 『한국어의 역사(수정판)』, 정림사.
- 김무렵, 2015,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 김영진, 2002, 「국어의 內破化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이회.
- 김재식·김기문, 1991, 『경주풍물지리지』, 보우문화재단.
- 남광우 編著, 1997, 『敎學 古語辭典』, 교학사.
- 박은용, 1970, 「중국어가 국어에 미친 영향(음운편)」, 『(효성여대)연구논문집』 70.
- 박창원, 2002, 『고대국어 음운』, 태학사.
- 방종현, 1947, 「독도의 하루」, 경성대학 예과신문 13호.
- 서종학, 2008, 「‘獨島’·‘石島’의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36-3.
- 송기중, 2004, 『고대국어 어휘 표기 한자의 자별 용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석호, 1960, 「독도의 내력」, 『사상계』 85호.
-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 유미립,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 유미립, 2015, 「태정관 지령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부인」,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 이기봉, 2003, 「《동여도》 해설」, 『동여도-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 이용한, 2001, 『사라져가는 토종문화를 찾아서, 끈』, 실천문학사.
- 정연식, 2017, 「신라 경주의 東川 沙梁과 西川 及梁」, 『한국문화』 58.
- 정연식, 2018, 「신라 초기 습비부(習比部) 고라촌[高耶村]의 위치」, 『한국사연구』 183.
- 정연식, 2019, 「울릉도, 독도의 옛 이름 대섬[竹島], 솔섬[松島]의 뜻」, 『역사학보』 241.
- 최남선, 1973, 『육당최남선전집』(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집위원회 편). 현암사.
- 최남선, 2005, 『육당최남선전집』, 역락.
- 한글학회, 1966~1986, 『한국지명총람』 20권.

-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 董同龢, 1944, 『上古音韻表稿』,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 潘悟雲, 2000,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潘悟雲, 2002, 『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潘悟雲卷』,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 潘悟雲, 2007, 「上古漢語的韻尾\*-l與\*-r」, 『民族語文』 2007年 1期.
- 小倉進平, 이상규·이순형 교역, 2009, 『조선어방언사전』, 한국문화사(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 王力, 1987, 『漢語音史: 王力文集10』,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 俞敏, 1999, 『俞敏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 伊藤智ゆき, 2007, 『朝鮮漢字音研究(資料篇)』, 東京: 汲古書院.
- 李方桂, 1980, 『上古音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鮎貝房之進, 1972, 『雜放(俗字攷·俗文攷·借字攷)』, 豊島區: 國書刊行會.
- 鄭張尙芳, 2012, 『鄭張尙芳語言學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 鄭張尙芳, 2013, 『上古音系(第2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周法高, 張日昇·林潔明 編, 1973, 『周法高上古音韻表』, 臺北: 三民書局.
- 下條正男, 2008, 「獨島呼稱考」, 『人文·自然·人間科學研究』 19, 拓殖大學人文科學研究所.
- Baxter, William H., 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Baxter, William H. & Sagart, Laurent, 2014,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blin, W. South, 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 Karlgren, Bernhard, 張世祿 譯, 2015, 『漢語詞類』, 太原: 山西人民出版社(1933, "Word Families in Chines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5,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 Karlgren, Bernhard, 최영애 역, 1985, 『고대한어음운학개요』 민음사(B. Karlgren 1954,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Chines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 26,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 Karlgren, Bernhard, 1957,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 Pulleyblank, Edwin G., 1962a·b,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I·II,” *Asia Major*, Vol.9, No.1·2, London: Percy Lund, Humphries & Co..
- Schuessler, Axel, 1974, “Final -L in Archaic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Vol.2, No.1.
- Schuessler, Axel, 2009, *Minimal Old Chinese and Later Han Chinese: A Companion to Grammata Serica Recens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tarostin, S. A. Dybo, A. V. Mudrak, O. A., 2003,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 Leiden·Boston: Brill.
- Starostin, Sergei A. (에스·아·스타로스틴), 김영일 譯, 1996, 『알타이어 비교연구』, 대일(1991, *The Altaic Problem and the Origin of the Japanese Language*, Moscow: Nauka).
- Starostin, Sergei A. (斯·阿·斯塔羅斯金),林海鷹·王冲 譯, 2010, 『古代漢語音系的構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1989, *Reconstruction of Old Phonological System*, Moscow: Nauka).
- Ting Pang-hsin, 1975, *Chinese Phonology of the Wei-Chin Period: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Taipei: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 Yakhontov, Sergei, E., Norman, Jerry tr., 1978~1979, “Old Chinese Phonology,” *Early China*, Vol.4.
-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 지리정보-지도서비스(<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안동립 동아지도 대표

신원정 서울대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최재영 서울대 지리교육과 강사

## 1. 머리말

독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마라도, 최북단의 유원진, 최서단의 마안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영토의 4극 중 최동단에 위치해 있으며, 지리적·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역사학, 국제법, 정치외교학은 물론 지리학에서도 한일 양국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근대 지리교육의 시작과 함께 영역성의 표출로서 지리교과서에 기술되어 왔다.<sup>1</sup> 또한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되었고 1999년부터는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보호되어 왔으며, 2005년 이전까지는 섬 전체가 공개제한지역이었기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했다.<sup>2</sup>

\* 논문 투고일: 2019. 3. 28, 심사 완료일: 2019. 5. 16, 게재 확정일: 2019. 5. 21.

1 심정보, 201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독도 인식』, 『문화역사지리』 30(1), 150쪽.

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독도천연보호구역」,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6,03360000,37> (검색일: 2019.4.21).

독도는 다양한 지형이 발달해 있을뿐더러 자연 그대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연구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해안 지형은 그 독특한 형태와 웅장한 경관으로 인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예컨대 백령도의 두무진, 거제 해금강, 소매몰도 등대섬, 양양 하조대, 부산 태종대, 부안 채석강·적벽강 등은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독도 역시 다른 지역들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해안 지형들이 발달해 있다. 해안 지형 중에서도 특히 해안 절벽(cliff)과 관련된 해안 침식 지형은 해식 동굴을 비롯하여 노치(notch), 시스택(sea stack), 자연교 혹은 시아치(sea arch) 등으로 구분된다. 독도는 외해에 둘러싸인 도서 지역으로 파랑에 의한 지형 발달이 일어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암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안 침식 지형의 발달이 탁월하다. 이에 독도는 2000년 환경부고시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지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sup>3</sup> 2012년에는 환경부고시 제2012-249호에 따라 울릉도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되어 독도의 독립문 바위, 솟돌바위, 천장굴, 삼형제굴 바위가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의 지질 명소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독도에는 천혜의 자연 지형이 상당수 분포하며, 교육적, 학문적, 관광적 가치가 높은 지형 및 지질 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지니는 지형학적 연구 가치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지형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이는 1980년대까지 독도에 대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고 1982년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지답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더욱 제한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따라서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전영권(2005)은 현지조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구체적 지형 발달을 논의하기보다는 독도의 개략적인 지형 분포에 대해 살펴보았다.<sup>5</sup> 이후 황상일·박경근(2007)과 황상일 외(2009)는 각각 동도와 서도의 타포니

3 배병일, 2016, 「독도 관련 법령의 체계성과 정합성」, 『독도연구』 21, 286쪽.

4 박경근·황상일, 2008, 「독도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地理學論究』 27, 54~55쪽.

5 황상일·박경근, 2007, 「독도 동도 서쪽 해안의 타포니 지형 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423쪽.

지형 발달을 논의하였고, 강지현 외(2016)는 침식 및 풍화 지형 외에도 퇴적 지형에의 관심을 촉구하며 독도에 형성되어 있는 역빈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상의 지형뿐만 아니라 강지현 외(2008)의 지형 연구는 독도 수면 아래의 독도해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김창환 외(2012)는 독도 화산체 정상부 해역의 해저 지형을 연구하였다.

해식 동굴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해식 동굴의 지형적 특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해안 지형들과 함께 해안 경관을 하나의 특성으로 다루어 왔다.<sup>6,7,8</sup>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암석해안의 경우 주로 해안 침식 문제에 관한 연구,<sup>9,10,11</sup> 암석 특성에 따른 차별 침식,<sup>12</sup> 해안 관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해식 동굴 그 자체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다. 반면 해외의 경우 과거에서부터 해식 동굴의 분포와 형태적 특성에 대한 기술,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로서의 특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up>13,14</sup> 특히 레이스(Lace, M. J., 2008)는 푸에르토리코에 발달한 총 67개의 해식 동굴을 조사하여 동굴의 위치, 방향, 크기, 높이, 기반암 종류 등을 목록화하여 분류하고, 형태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sup>15</sup>

6 고의장, 2001,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에 대한 지형학적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35(2), 127~138쪽.  
 7 고의장, 2003,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에 대한 지형학적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37(3), 295~305쪽.  
 8 박종관, 2009, 「굴입도의 지질, 해안경관 특성 및 그 활용 방안」, 『한국지형학회지』 16(1), 34~41쪽.  
 9 임동일·정희수·추용식·박광순·강시환, 2002, 「한국 서해 남부 함평만의 해안선 변화 연구 I. 해안 절벽의 침식과 후퇴」, 『한국해양학회지』 7(3), 148~156쪽.  
 10 우한별·장동호, 2010, 「다중시기 항공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한 해안침식 변화 연구 : 태안반도를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17(4), 71~83쪽.  
 11 장동호·박지훈, 2012, 「침식기준목을 이용한 파도리 해식에 사면의 침식·후퇴율 산정」, 『한국지형학회지』 19(3), 71~82쪽.  
 12 신원정·김종연, 2018, 「대청도 미아동, 농여, 지두리의 해안 지형에 대한 연구: 암석 차이에 의한 차별침식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28(3), 167~185쪽.  
 13 Jones, R., 1965, "Observations of the Geomorphology of a coastal cave near Wynyard",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Tasmania*, 99, pp. 15~16.  
 14 Todaro, M. A., Leasi, F., Bizzarri, N. and Tongiorgi, P., 2006, "Meiofauna densities and gastrotrich community composition in a Mediterranean sea cave", *Marine Biology*, 149, pp. 1079~1091.  
 15 Lace, M. J., 2008, "Coastal Cave Development in Puerto Rico",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4(2),

이 연구의 주제인 독도의 동굴에 관하여 전영권(2005)은 독도의 주요 지형 6가지 중 하나로 해식 동굴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해식 동굴로 천장굴을 소개하고 있으며 해식아치 역시 주요 지형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배수경·추장오(2016)는 울릉도와 독도에 분포하는 지질명소의 지질유산적인 가치를 논하면서 독립문 바위 및 삼형제굴 바위에 발달한 동굴, 그리고 독도 중앙에 위치한 천장굴의 지형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독도에는 이외에도 다수의 동굴이 존재하며, 이 동굴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지형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의 목표는 독도에 존재하는 동굴의 지리적 분포와 각 동굴의 지형적 특성을 확인·분석하는 것에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독도의 여러 지형 경관들 중 하나로 해식 동굴을 다루었을 뿐, 동굴 지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었으므로,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독도의 각종 해식 동굴을 확인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식 동굴의 경우, 해안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으로서 동굴의 형성은 침식의 방향이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독도는 암초로 이루어진 섬인 데다가, 한반도의 최동단으로 연안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해안 침식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섬을 구성하고 있는 기반암의 특성상 다수의 절리가 발달되어 있어 침식에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도의 침식 특성을 파악하고, 해안 침식에 따른 앞으로의 지형 변화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식 동굴이나 시스템 등과 같은 침식 지형의 분포나 특성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해식 동굴의 분포, 특성 등이 세밀하게 조사된다면, 이후 해안 침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동굴의 명칭조차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동굴의 현황을 여러 사진 자료와 함께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독도 지형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II. 독도의 지형 및 지질 개관

『독도지리지』(국토지리정보원, 2011)<sup>16</sup>의 첫 장 ‘독도의 지리적 개요’<sup>17</sup>에 따르면, 독도는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 도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도와 서도의 지리적 위치는 각각 N 37° 14′ 26.8″, E 131° 52′ 10.4″와 N 37° 14′ 30.6″, E 131° 51′ 54.6″에 해당하며, 독도의 총 면적은 187,554m<sup>2</sup>로 동도는 73,297m<sup>2</sup>, 서도는 88,740m<sup>2</sup>, 부속도서는 25,517m<sup>2</sup>로 이루어져 있다.<sup>18</sup> 서도의 정상부는 해발고도 약 168.5m, 동도는 약 98.6m로 동도에 비해 서도의 면적이 더 크고 정상부도 더 높다. 동도의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하여 등대 및 경비대 관련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약 20~30cm 두께의 초본으로 피복된 토양층도 나타나는 데 반해, 서도는 사면 경사가 가파르고 토양층이 거의 없어 식생이 서식하기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sup>19</sup>

동도와 서도의 사면에서는 애추(talus), 주상절리(columnar joint), 탄낭 구조(bomb sag) 등과 같은 산지 지형 및 화산 지형이 발달해 있으며, 해안에서는 해식애(sea cliff), 해식동(sea cave), 파식대(shore platform), 시아치, 노치, 시스텍, 자갈 해변(shingle beach) 등의 다양한 지형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0,21</sup> 또한 해식애 벽면에는 타포니(tafone)와 같은 풍화혈도 발달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22,23</sup>

한편 독도의 지질은 크게 8개의 암석 단위로 구분된다. 하부조면암용암,

16 국토지리정보원, 2011, 『독도지리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17 이민부·김영훈, 2011, 「독도의 지리적 개요」, 『독도지리지』, 국토지리정보원, 17~27쪽.

18 이민부·김영훈, 2011, 위의 글, 19~20쪽.

19 황상일·윤순옥, 2011, 「독도의 지형」, 『독도지리지』, 국토지리정보원, 87쪽.

20 전영권, 2005, 「독도의 지형지(地形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19~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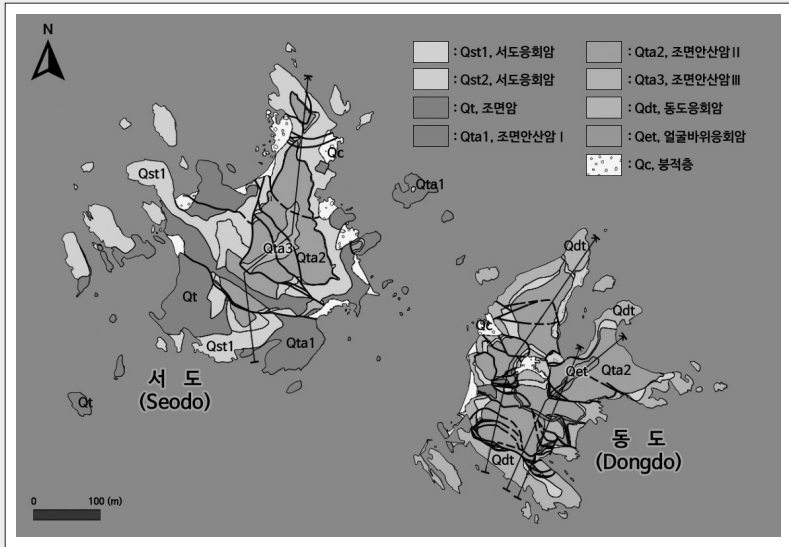
21 김창환, 2013,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사지리학회지』 23(4), 177~190쪽.

22 황상일·박경근, 2007, 위의 글, 355~370쪽.

23 황상일·박경근·윤순옥, 2009, 「독도 서도 북서 해안의 Holocene 기후변화와 타포니 지형 발달」, 『한국지형학회지』 16(1), 17~30쪽.

##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괴상응회각력암층, 층상라필리응회암 및 응회암층, 조면암산암용암, 스코리아성라필리응회암층, 상부조면암용암, 조면암관입체와 조면암맥 순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Sohn and Park(1994)<sup>25</sup>에서 K-Ar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독도는 약 460만 년 전~250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한국해양연구소(2000)<sup>26</sup>는 말기의 조면암 용암이 약 220~21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독도는 조면암 및 화산쇄설암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현 해수면 위로 노출된 암체의 경우 신생대 제3기 플라이오세(Pliocene)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 1) 독도(서도와 동도의) 지질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4 지광훈·장동호·박노옥, 2007, 『위성에서 본 한국의 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8~201쪽.

25 Sohn, Y. K. and Park, K. H., 1994, "Geology and Evolution of Tok Island",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30(3), pp. 242~261.

26 한국해양연구소, 2000, 『독도 생태계 등 기초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617~618쪽.

### III.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 독도 동굴에 대한 현지 조사는 2005년부터 보통 3박 4일간에 걸쳐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독도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울릉군수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였으며, 서도의 주민 숙소에서 체류하며 조사하였다. 카약을 동원한 동굴 조사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의 경우 4월 27~29일까지 2박 3일간 허가를 받고 입도하였으나 파도가 심하여 4박 5일간 조사가 이루어졌다. 카약을 타고 동굴에 들어가는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 3명이 각자의 1인용 카약을 타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도에 분포하는 동굴의 위치를 지도화한 후, 각 동굴의 형태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 후 기반암의 종류, 동굴의 입구 방향, 형태적 특징에 따른 분류를 통해 독도 동굴의 종합적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식동(sea cave)은 파랑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동굴을 뜻하나, 본 연구에서는 노치(notch), 자연교(natural arches) 혹은 시아치(sea arches)를 비롯한 해안에 형성되어 있는 형태적인 동굴을 모두 포함하여 ‘동굴’로 지칭하였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동굴 이름은 천장굴, 물굴, 가재굴을 제외하고는 기존 명칭이 없기에 임의적으로 붙인 것임을 미리 밝힌다.

### IV. 독도 동굴의 분포 특성

조사 결과 독도에는 총 21개의 동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도에 13개, 동도에 8개의 동굴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기존에는 동도에 6개, 서도에 9개, 그리고 삼형제 바위동굴까지 총 16개의 굴이 분포

##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한다고 알려졌으나,<sup>27</sup> 이 연구에서는 군함바위 동굴을 3개로, 삼형제 바위굴을 2개의 굴로 세분화하였고, 천장굴 동굴을 하나의 동굴로 구분한 뒤, 3개의 동굴을 추가하여 총 21개의 동굴로 재구분하였다. 약 15년간의 현지 조사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동굴은 21개가 전부이며, 동굴들의 위치 분포는 <지도 2>에 표시하였다.

동굴은 동도와 서도 모두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나, 동도의 북서 해안과 서도의 동쪽 해안(②와 ⑩ 사이)에서는 밀집도가 낮았다. 독도의 해안 동굴은 형상적 특성에 따라 관통 동굴 14개, 막장굴 5개, 수중굴 1개, 수직 동굴 1개로 구분되며 각 동굴의 지형적 특성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표 1> 독도의 서도와 동도에 분포하는 동굴들

서도의 동굴 (13곳)	① 탕건봉굴 ② 가제굴 ③ 물굴 ④ 군함바위동굴1 ⑤ 군함바위동굴2 ⑥ 군함바위동굴3 ⑦ 상장군바위동굴 ⑧ 코끼리바위굴 ⑨ 코끼리바위 속동굴 ⑩ 주민속소 수중동굴 ⑪ 몽돌밭 막장굴 ⑫ 삼형제굴1 ⑬ 삼형제굴2
동도의 동굴 (8곳)	⑭ 천장굴 ⑮ 천장굴입구동굴 ⑯ 천장굴속동굴 ⑰ 구부두굴 ⑱ 독립문바위 해식애 ⑲ 독립문바위굴 ⑳ 동도부두굴 ㉑ 등대굴

<표 2> 형상적 특성에 따른 동굴 구분

관통동굴 (14개)	① 탕건봉굴 ④ 군함바위동굴1 ⑤ 군함바위동굴2 ⑥ 군함바위동굴3 ⑦ 상장군바위동굴 ⑧ 코끼리바위굴 ⑨ 코끼리바위 속동굴 ⑫ 삼형제굴1 ⑬ 삼형제굴2 ⑮ 천장굴입구동굴 ⑯ 천장굴속동굴 ⑰ 구부두굴 ⑱ 독립문바위굴 ⑳ 동도부두굴
막장굴 (5개)	② 가제굴 ③ 물굴 ⑪ 몽돌밭 막장굴 ⑭ 독립문바위 해식애 ㉑ 등대굴
수중굴 (1개)	⑩ 주민속소 수중동굴
수직동굴 (1개)	⑭ 천장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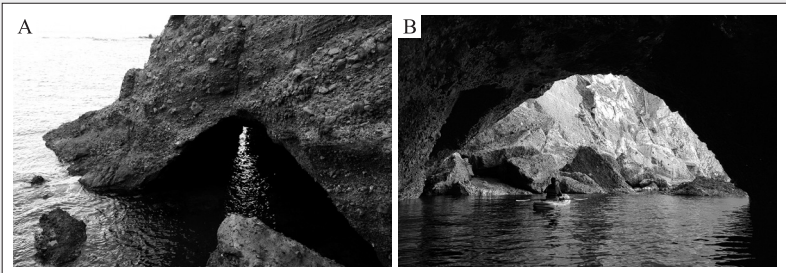
27 『공감신문』, 2016. 9. 28(이효웅, 「독도는 동굴섬...16개의 굴이 있다. 동도 6개, 서도 9개, 그리고 삼형제 바위동굴...카약 타고 찍은 사진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6057> (검색일: 2019.4.21).



## V. 각 동굴의 지형적 특성

### 1. 서도의 동굴 특성

#### 1) 탕건봉굴



(사진 1) (A) 탕건봉굴의 외부 모습, (B) 탕건봉굴의 내부 모습

탕건봉굴은 서도의 북측 헤드랜드(headland) 서사면에 분포하는 굴로, 탕건봉(97.8m) 하부에 형성된 해식 동굴이다. 탕건봉 상부에는 조면안산암의 주상절리가, 하부의 응회암 해식애에는 타포니가 발달해 있는데, 탕건봉굴은 이 응회암 하부에 형성되어 있다. 응회암은 화산쇄설물이 굳어져 형성된 암석인데 상대적으로 풍화, 침식에 약한 응회암 부분에 동굴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탕건봉굴이 형성된 응회암은 다양한 크기의 각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굴 인근에는 사면에서 붕괴된 것으로 보이는 거력들이 발견된다. 탕건봉굴은 남쪽 입구와 북쪽 입구가 연결된 관통 동굴로 굴의 길이는 약 21m이며, 해식동굴이자 시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굴의 남쪽 입구는 직선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어 절리 혹은 층리와 같은 선이 동굴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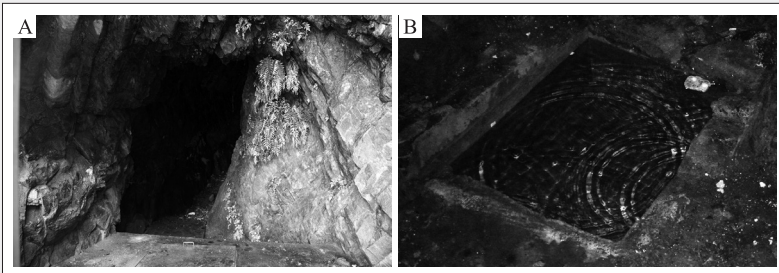
## 2) 가제굴



〈사진 2〉 (A): 가제굴 내부에서 본 모습, (B): 가제굴 내부의 배석진 집터

가제굴은 서도 탕건봉 아래에 있는 막장 동굴로 응회암 하부에 형성되어 있다. 굴 안쪽 바닥에 분포하는 모래에는 바닷물이 스며 있다. 가제굴의 높이는 약 2~3m이며, 깊이는 깊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직 높이에 비해 수평적으로 더 넓은 형태를 하고 있다. 가제굴의 입구에는 응회암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역들이 퇴적되어 있으며, 입구의 너비가 굴 내부보다 더 좁다. 굴의 명칭인 ‘가제’는 바다사자를 칭하는 용어로 독도의 바다사자인 강치를 잡았던 흔적인 가제뼈가 나와 가제굴이라 한다. 한편 굴 입구에는 어부 배석진 씨가 석축을 쌓아 방을 만들어 해녀들과 생활하였던 곳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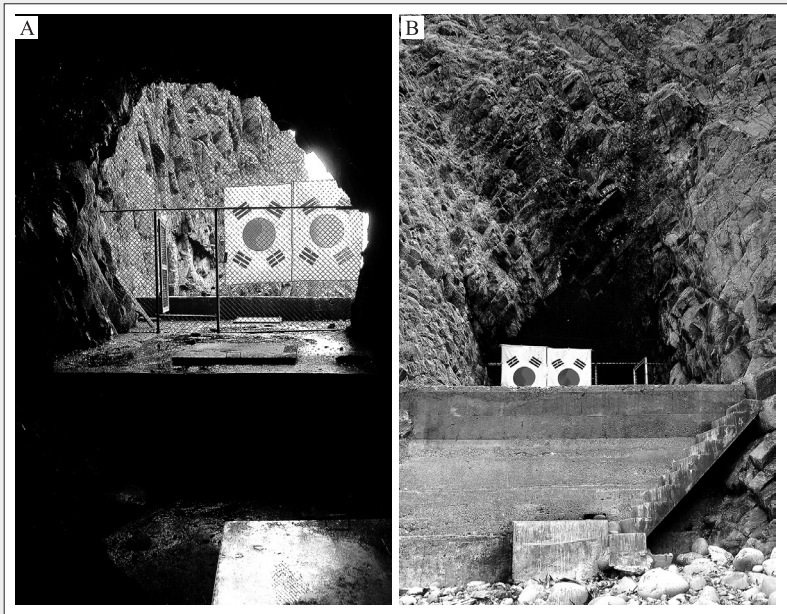
## 3) 물굴



〈사진 3〉 (A): 물굴 입구의 모습, (B): 물굴 내부의 물 저장 시설

##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서도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막장 동굴로 굴의 높이는 약 7m, 깊이는 약 18m에 달한다. 몽돌해안 배후에 발달되어 있으며 탕건봉굴, 가제굴과는 달리 주상절리에 형성되어 있는 동굴이다. 동굴 주변에는 주상절리의 밀도가 높아 이러한 균열들이 동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물골은 독도에서 유일하게 식수가 나오는 곳으로, 과거에는 어민들의 급수원 기능을 한 굴이기도 하다.



〈사진 4〉 (A): 굴 내부에서 본 외경. (B): 물골 입구의 모습

물골 일대에는 조면안산암과 라필리웅회암이 분포하며 조면암이 소규모의 암주상으로 나타난다. 조면안산암과 조면암의 경우, 절리를 통한 지하수의 이동이 용이한 반면, 투수성이 낮은 응회암은 불투수층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물골 상류에 모인 강수는 조면안산암에 발달한 절리를 따라 하류로 이동하다가 응회암 분포 지역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하류로 이동하지 못하고, 안산암과 응회암의 경계를 따라 물골 쪽으로 이동한다. 이후 조면

암 분포 지역에 다다르면 조면암에 발달한 절리를 따라 이동하다가 물골 동굴의 열린 공간을 만나 유출되는 것이다.<sup>28,29</sup> 주민들은 이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굴 입구를 막은 후 우물을 만들었으며,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이용하였다. 저수량은 약 40드림 정도로 양이 많은 편이나 독도에 담수화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우물로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 4)~6) 군함바위굴 1, 2, 3

군함바위는 서도의 남서쪽에 있는 높이 38.2m의 바위섬, 즉 시스텍으로 그 아래에는 3개의 해식 동굴이 발달해 있다. 군함바위의 상부에는 층상라 피리응회암이 분포하며, 응회암의 평행 층리를 따라 다수의 타포니가 발달해 있다.<sup>30</sup> 군함바위 서쪽 해안에는 평평한 파식대가 발달해 있으며, 동쪽의 해식에 부분은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함바위굴 1, 2, 3은 모두 전면부와 후면부가 뚫려 있는 시아치 형태로, 시스텍 하부에는 다수의 절리가 형성되어 있다. 세 개의 군함바위굴은 모두 남-북 방향으로 뚫려 있으나, 서로 간에 각각 다른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 크기 역시 차이가 있다.

1굴의 경우 수직적으로 좁고 긴 형태를 하고 있으며, 굴의 길이는 약 16m이다. 군함바위 1굴은 그 형태로 볼 때 절리를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굴은 높이가 1.2~1.5m로 세 동굴 중 가장 낮다. 카약을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며, 굴 천정에 손이 닿는다. 동굴 길이는 약 30m로 군함바위굴들 중에 가장 길며, 높이에 비해 폭이 넓은 형태를 지닌다. 독도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동굴들이 좁고 긴 형태를 보이는 데 반해, 군함바위굴 2는 얇고 넓은 형태로 발달되어 있어 형상적으로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3굴은 길이 약 18m로 1굴 및 2굴과 동일하게 남북 방향으로 뚫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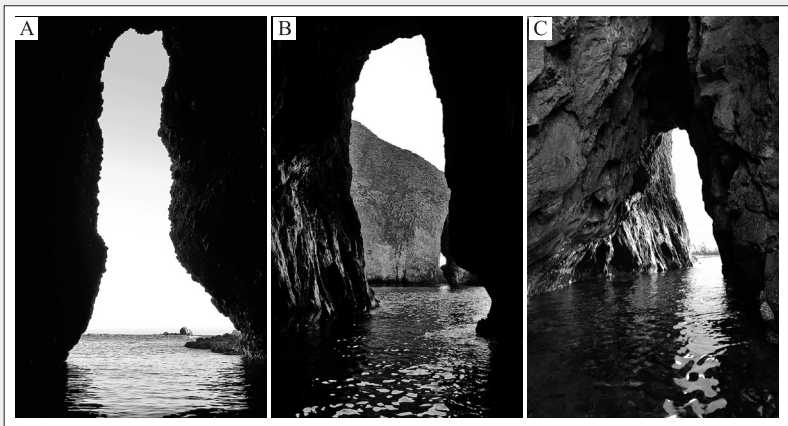
28 장운득·황상일, 2017, 『독도의 자연이야기: 지질/지형 경관』, 문화재청·경상북도, 21쪽.

29 조병욱 외, 2011, 「독도 서도 물골 지하수의 유출특성」, 『지질공학회지』 21(2), 127~128쪽.

30 황상일 외, 2009, 앞의 글, 22~23쪽.

##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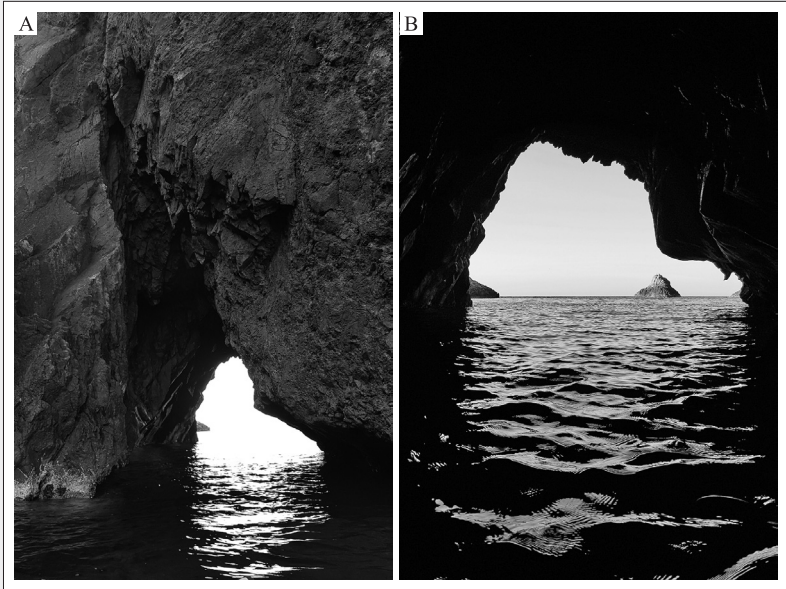
굴 외부의 입구 모습과 내부의 형태가 차이를 보이는데 외부의 경우 수직적으로 좁고 길고, 내부는 보다 얇고 넓은 모습을 나타낸다. 해식에 외부에서는 굴 상부에 수직의 절리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절리선을 따라 침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3굴이 나타나는 해식애의 경우 상부는 응회암, 하부는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식동굴은 모두 조면암 부분에 발달되어 있다.



〈사진 5〉 (A), (B), (C): 군함바위굴 1의 모습들



〈사진 6〉 군함바위굴 2의 내부



〈사진 7〉 (A): 군함바위굴 3의 외부 모습, (B): 군함바위굴 3의 내부 모습

### 7) 상장군바위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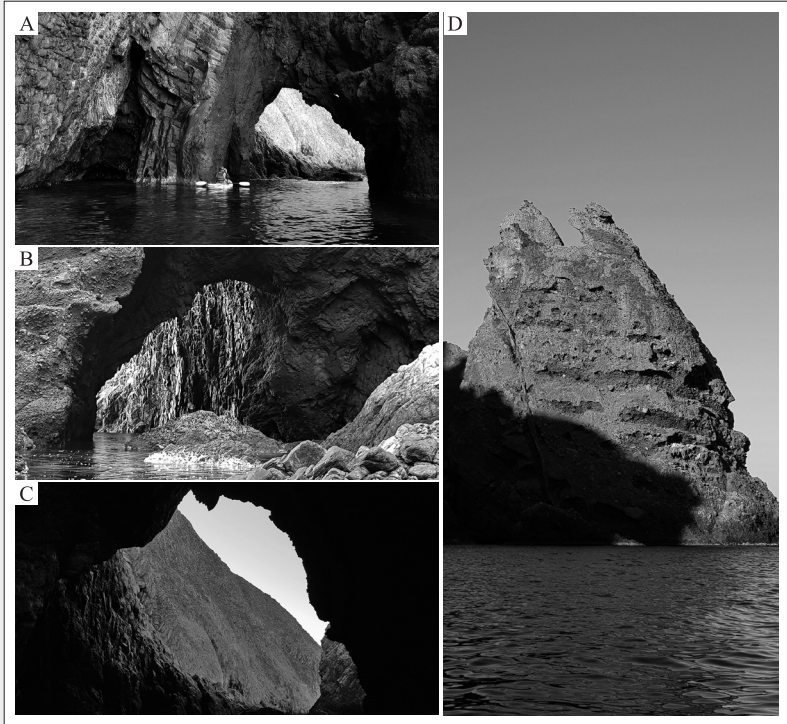
상장군바위굴은 서도 서북쪽의 상장군바위(63.3m) 측면에 형성된 동굴로 상장군바위 하부에는 남북 방향의 해식 동굴이 형성되어 있다. 굴의 길이는 약 18m이며, 굴 외부에서 보면 응회암과 조면암의 경계를 따라 침식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암석의 경계 및 질리의 분포가 상장군바위굴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동굴 외에도 상장군바위굴 주변에는 다수의 와지가 확인된다.

한편 상장군바위의 동굴 반대편 사면에는 대규모의 타포니들이 발달되어 있어 독특한 형상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해안에서는 파랑의 침식 작용과 함께 소금 결정에 의한 물리적 풍화 작용 역시 발생하게 되는데,<sup>31</sup> 상장군바위 타포니는 이러한 염풍화 작용으로 인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타

31 Strahler, A. H., 2013. *Introducing Physical Geography* (6th Edition), New Jersey: Wiley, p. 538.

##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포니는 전반적으로 가로로 긴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응회암의 퇴적 층리를 따라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8〉 (A), (B), (C): 상장군바위의 내·외부 모습들, (D): 상장군바위에 발달한 타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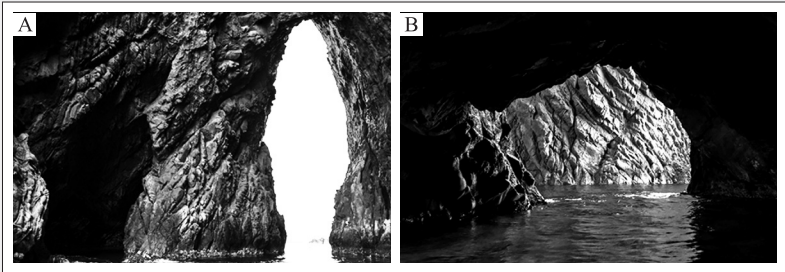
### 8) 코끼리바위굴



〈사진 9〉 (A): 코끼리바위굴 서측, (B): 코끼리바위굴 동측

서도 서남 측 해안에 위치한 코끼리바위에 형성된 굴로, 마치 코끼리 코와 같은 모양으로 형성된 해식 동굴이다. 지형적으로는 시아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굴의 길이는 약 18m이며, 코끼리바위의 남동쪽 허부는 응회암으로, 상부는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코끼리바위굴은 좁고 긴 형태를 하고 있어, 주상절리의 절리선을 따라 침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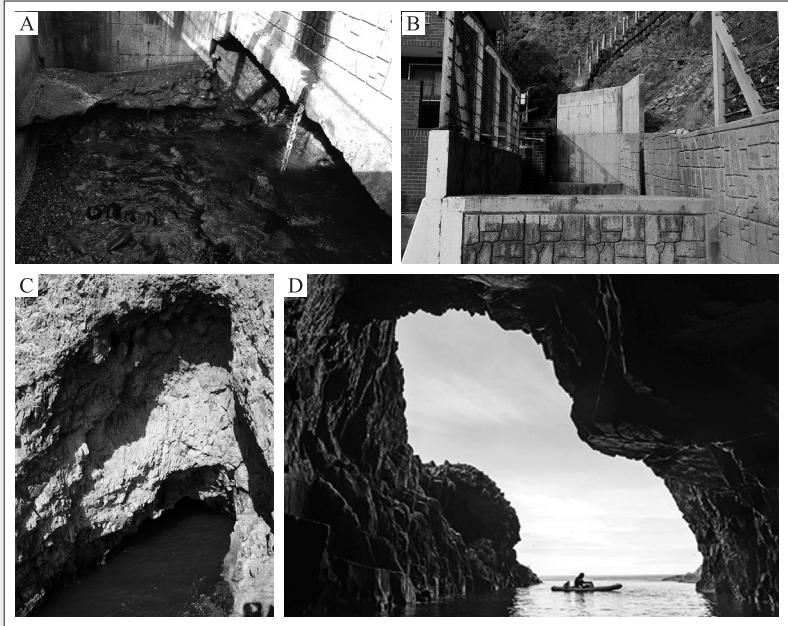
### 9) 코끼리바위 속 동굴



〈사진 10〉 (A): 코끼리바위 속 동굴(좌측) (사진제공: 이효웅), (B): 코끼리바위 속 동굴 내부 (사진제공: 이효웅)

코끼리바위굴 입구 좌측에는 작은 동굴이 추가적으로 분포하며, 굴의 길이는 약 18m이다. 동굴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뚫려 있다. 코끼리바위 속 동굴 입구는 좁고 긴 형태의 코끼리바위굴과는 달리 높이에 비해 폭이 더 넓은 형태를 지닌다.

10) 주민 숙소 수중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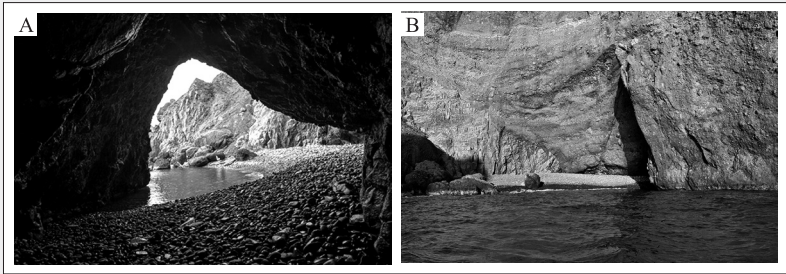
(사진 11) (A): 주민 숙소 옆으로 이어지는 동굴, (B): 주민 숙소 옆의 굴 막이 웅벽, (C): 수중동굴 입구, (D): 수중동굴 내부의 모습 (사진 제공: 이효웅)

서도 남쪽 건조장 터 아래에 분포하는 동굴이다. 굴 입구는 넓으며 들어가면 수중으로 주민 숙소 옆으로 뚫려 있다. 굴의 길이는 약 56m로 수중으로 관통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파도가 치면 수중으로 파도가 들이쳐 몽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데 파도가 강한 날은 잠들기가 힘들 정도로 우르르 광광하며 큰 소리가 난다.

11) 몽돌밭 막장굴

몽돌밭 막장굴은 서도 동쪽 해안의 자갈 해변 근처에 위치한다. 몽돌 해안이라 불리는 자갈 해변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동굴은 해변 북서쪽에 돌출되어 있는 헤드랜드 안쪽에 발달해 있다. 몽돌밭 막장굴은 응회암에 발달한 해식굴로 굴 내부 벽면에는 화산력들이 박혀 있다. 다른 굴에 비해 상대

적으로 길이가 짧으며, 굴 내부에는 몽돌밭의 자갈들이 동굴 내부까지 이어진다. 막장굴이 분포하는 서도 동쪽 해안의 경우, 자갈 해변과 해식동이 모두 발달한 것으로 보아 해안의 퇴적 작용과 침식 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사진 12〉 (A): 몽돌밭 막장굴 내부 모습 (사진 제공: 이효웅), (B): 몽돌밭 막장굴 입구

## 12) 삼형제굴1

삼형제굴은 서도 동쪽 바다에 위치한 삼형제굴바위(높이 44m)에 형성된 동굴로, 차별 침식의 결과 암석의 단단한 부분이 남아 하나의 시스텍을 이루고 있다. 바위의 하부는 조면안산암, 상부는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형제굴바위는 조면암맥이 침식되어 생긴 시스텍이라 할 수 있다.<sup>32</sup> 조면안산암의 하부에는 수직 혹은 고각의 절리들이 다수 발달해 있어<sup>33</sup> 침식에 취약한 조건을 지닌다. 삼형제굴바위에는 세 개의 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뚫려 있는데, 삼형제굴바위라는 명칭 역시 지형의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형적으로는 세 개의 해식동이 서로 통하게 뚫려 있어 하나의 시아치를 이룬다. 이 글에서는 삼형제굴을 삼형제굴1과 삼형제굴2로 구분하였다. 북쪽과 남쪽으로 각각 뚫려 있는 두 개의 굴을 삼형제굴2로 칭하였다.

삼형제굴1은 삼형제굴바위의 세 갈래 동굴 중에서 남서쪽으로 뚫린 해식

32 장운득·황상일, 2017, 앞의 글, 15쪽.

33 배수경·추창오, 2016,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유산적 가치와 관리현황」, 『지질학회지』 52(5), 739~7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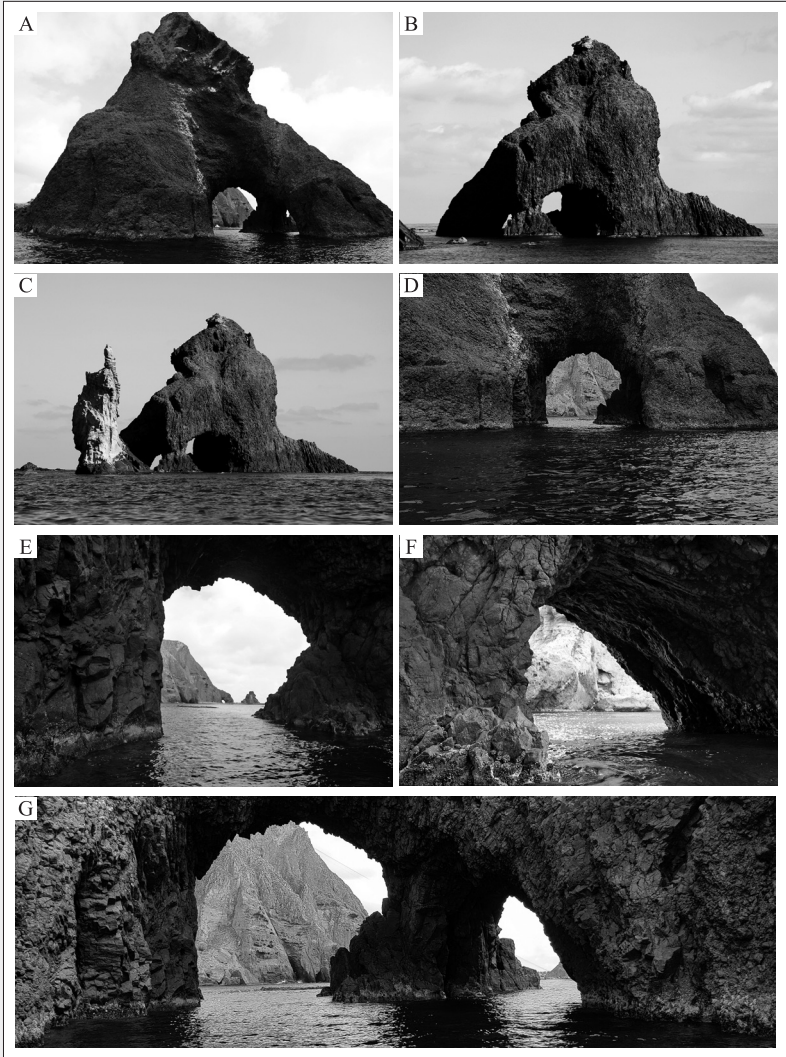
동굴로 길이는 약 20m이다. 삼형제굴1은 삼형제굴2에 비해 다소 입구의 크기가 작다. 삼형제굴1, 2는 모두 조면안산암에 발달한 것으로 동굴 주변에는 다각형의 주상절리가 다수 발달해 있다. 이러한 주상절리는 동굴의 형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절리가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침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삼형제굴1의 내부에서는 촛대바위가 잘 보인다.

삼형제굴바위의 경우 바위의 동쪽사면에는 굴의 발달이 미약한 반면,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동굴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 굴에 비해 북쪽 굴의 규모가 더 크다.

### 13) 삼형제굴2

삼형제굴2는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뚫려 있는 두 개의 동굴로, 굴의 길이는 약 19m이다. 독도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굴이 수직으로 좁고 긴 형태를 나타내는 데 반해, 삼형제굴2의 남동쪽 굴은 둥근 형태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삼형제굴을 둘로 구분을 하였지만, 결국 하나로 통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굴로 볼 수도 있고, 외관상으로는 세 개의 굴이 뚫려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굴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의 여지가 크다 할 수 있다.



〈사진 13〉 (A): 삼형제굴바위의 북측 사면, (B): 삼형제굴바위의 남측 사면, (C): 삼형제굴바위의 전경과 촛대바위, (D): 북측에서 바라본 삼형제굴바위, (E): 삼형제굴2의 입구 모습, (F): 삼형제굴1의 입구 모습, (G): 삼형제굴1, 2의 모습. 사진 우측이 삼형제굴1, 좌측 굴이 삼형제굴2에 해당.

## 2. 동도의 동굴 특성

### 1) 천장굴

천장굴은 동도 중앙부에 발달한 동굴로 동도의 대표적인 동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동굴과는 달리 천장이 뚫려 있는 수직 동굴로, 굴 아래에는 바닷물이 유입된다. 천장굴 상단부의 외경 둘레는 약 316.3m이고, 하단부 둘레 길이는 약 149.8m이다. 외경의 고도는 일정하지 않으며,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 굴의 서측 사면에서는 단층선들이 관찰된다. 천장굴의 깊이는 최대 약 96.8m, 최소 약 40m이며, 지름은 약 102m에 달한다.

천장굴의 경우 과거에는 독도의 화산 분화구인 것으로 해석되었으나,<sup>34,35,36</sup> 이후의 연구에서는 여러 단층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반암이 함몰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sup>37,38</sup> 단층 작용에 의해 형성된 높은 밀도의 구조선들로 인해 천장굴을 형성하고 있던 기반암이 침식 및 풍화 작용을 받아 쉽게 제거되고, 상부의 기반암 역시 무너지면서 이러한 동굴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천장굴 주변에는 서북서-동남동 혹은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대를 비롯한 다수의 단층들이 나타나며 이것이 오목한 와지 형태의 침식 지형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해식동은 다수의 절리 혹은 단층이 밀집되어 있거나 약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흔히 관찰되는데,<sup>39</sup> 독도의 천장굴 역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장굴 내부의 서측 사면 하부에는 암설과 모래들이 퇴적되어 있는

34 박동원·박승필, 1981,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19, 37~50쪽.

35 이수광·박혜숙, 1981, 「독도의 해저지형」,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19, 237~242쪽.

36 김우관, 1996,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 『자연실태종합보고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 10, 31~55쪽.

37 손영관·박기화, 1994, 「독도의 지질과 진화」, 『지질학회지』 30(3), 242~2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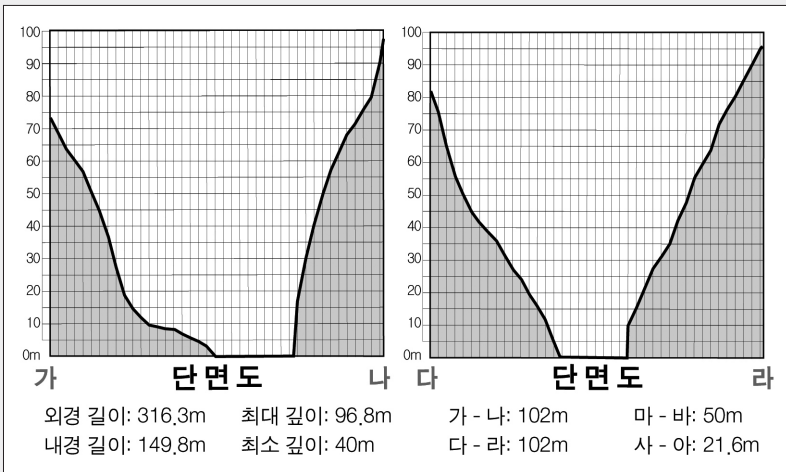
38 전영권, 2005, 앞의 글, 26쪽.

39 Bird, E. C. F., 2008, *Coastal Geomorph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New Jersey: Wiley, pp. 67~106.

데, 전영권(2005)<sup>40</sup>에서는 이를 일종의 사력빈 해안이라 하였다. 천장굴 내부의 자갈들은 원마도와 분급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1</sup> 굴 내부의 사면에서도 일부 와지들이 관찰되나, 구체적인 형태 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굴 내부는 바람이나 파도, 해풍의 영향이 적어 식생이 정착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에 굴 내부의 서측면 즉, 동쪽을 바라보는 양지쪽 사면에는 사철나무와 해국, 갯재비쭉이 서식하며 군락을 이루고 있다. 반면 굴 내부의 남측 사면(북쪽을 바라보는 사면)에는 땅채송화가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도 3) 천장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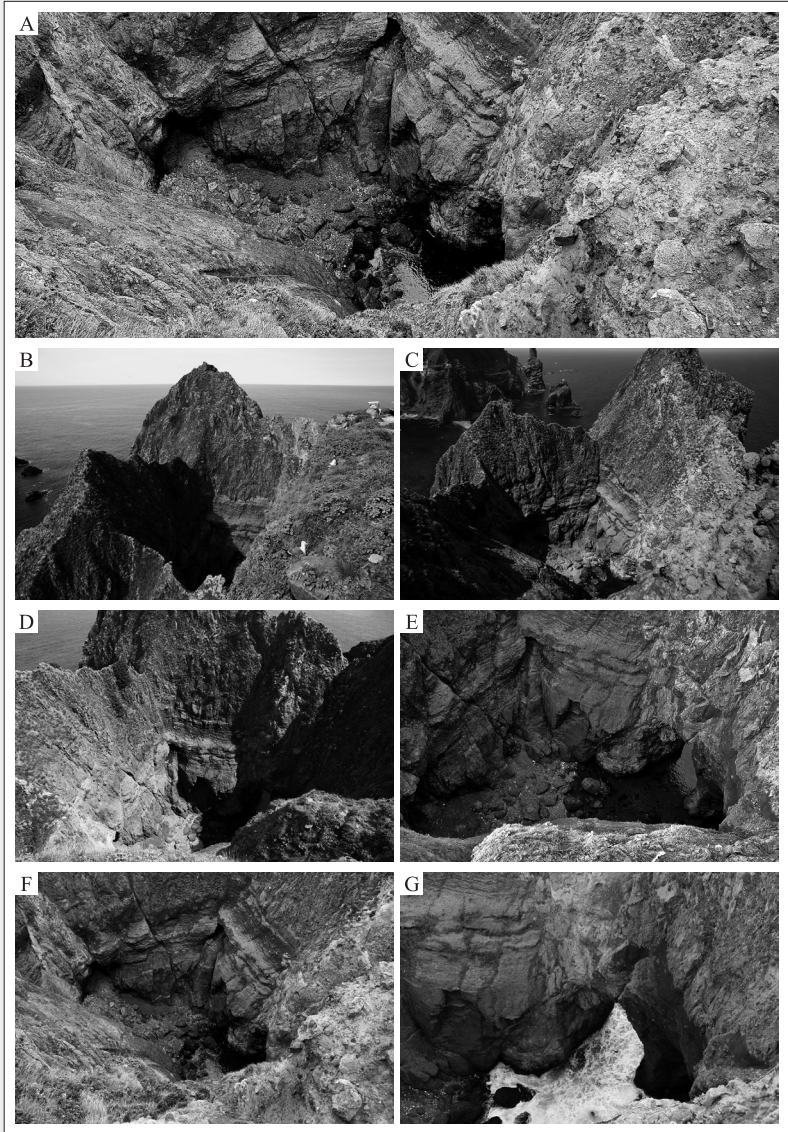


(그림 1) 천장굴 사면의 단면도

40 전영권, 2005, 앞의 글, 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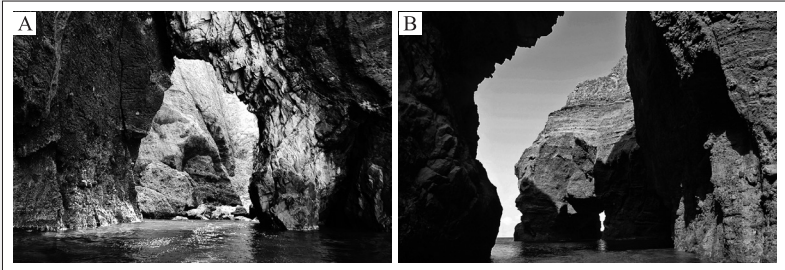
41 배수경·추창오, 2016, 앞의 글, 739~761쪽.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사진 14〉 (A) 상부에서 내려다 본 천장굴의 모습, (B), (C), (D): 천장굴의 외경, (E): 천장굴 하부의 모습, (F): 천장굴 내부의 모습, (G): 바닷물이 유입되는 천장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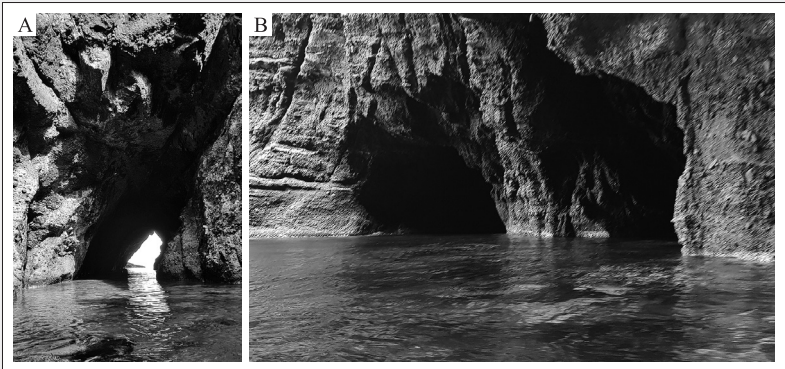
## 2) 천장굴 입구 동굴



〈사진 15〉 (A): 천장굴 입구 동굴의 모습, (B): 천장굴 입구 동굴의 내부

천장굴 동쪽 하부에는 두 개의 동굴이 발견되는데, 각각 천장굴 입구 동굴과 천장굴 속 동굴로 칭하였다. 먼저 천장굴 입구 동굴은 천장굴 하부에 동북쪽으로 뚫린 해식 동굴로 시아치의 형태를 띤다. 굴은 폭에 비해 높이가 더 높으며 길이는 약 25m이다. 천장굴 입구 동굴은 천장굴 안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통로가 되며 굴 주변에는 조면암 암맥도 관찰된다.

## 3) 천장굴 속 동굴



〈사진 16〉 (A): 천장굴 속 동굴의 내부, (B): 천장굴 속 동굴의 입구

천장굴 내부에서 동쪽으로 낮고 길게 뚫린 응회암 동굴로 그 길이가 약 60m에 달한다. 굴의 높이가 낮아 접근이 어려우며 카약으로도 진입하기가 어렵다. 굴 내부에서는 일부 층리 혹은 절리를 따라 침식된 부분이 확인된다.

#### 4) 구부두굴



〈사진 17〉 (A) 구부두굴 내부의 모습, (B) 구부두굴 입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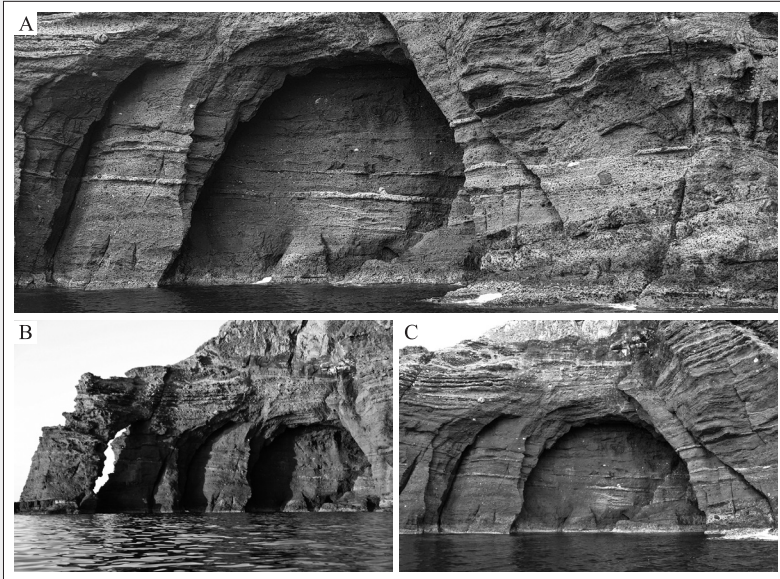
동도 동북쪽 구부두 옆으로 뚫린 해식동굴로 굴의 길이는 약 11m이다. 동도옹회암에 발달해 있으며, 구부두에서는 천장굴 입구 동굴이 잘 보인다.

#### 5) 독립문바위 해식애

독립문바위 해식애는 동도의 북동쪽 해안에 발달해 있으며, 독립문바위 옆에 형성된 파식굴이다. 독립문바위 해식애의 하부는 괴상옹회각력암층, 상부는 층상 라필리옹회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안으로도 상하부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된다. 하부 옹회암층의 경우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화산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상부 옹회암층은 입자가 작은 화산회로 이루어져 있으며,<sup>42</sup> 동굴은 하부의 괴상옹회각력암층 부분에 형성되어 있다.

독립문바위 해식애에는 수직 형태의 굴이 다수 발달해 있으며, 굴 하부에는 현 해수면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와지들이 관찰된다. 이후 침식이 더욱 진전되면 이 와지들은 노치의 형태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식애굴은 전반적으로 깊이에 비해 폭과 높이가 더 크며, 굴들의 높이는 독립문바위굴과 유사하다.

42 장윤득·황상일, 2017, 앞의 글,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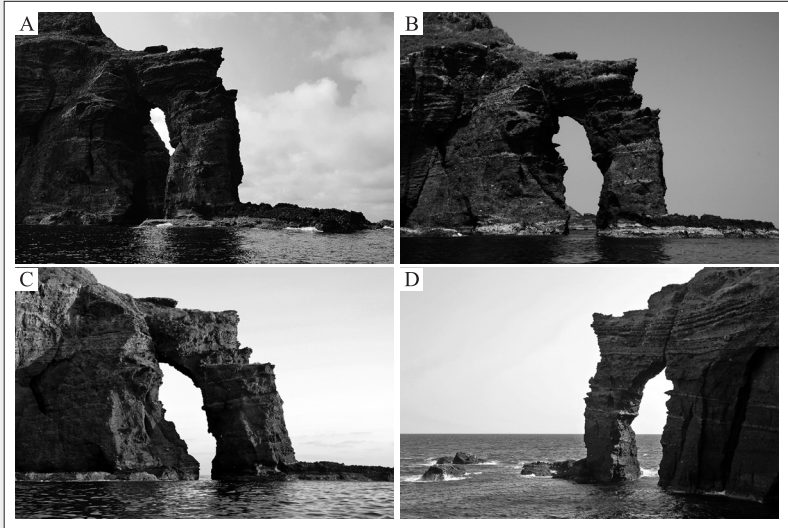


〈사진 18〉 (A): 독립문바위 하부의 전경, (B): 독립문바위의 전경, (C): 해식 작용을 받은 독립문바위

## 6) 독립문바위굴

동도의 동쪽 끝 헤드랜드에 위치한 시아치 지형으로 수직적으로 길게 뚫린 형태이다. 굴의 길이는 약 14m로 응회암층에 형성되어 있다. 독립문바위굴의 응회암은 수평 층리를 나타내는 데 반해, 굴은 수직의 형태를 나타내어 층리보다는 단층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굴 상부에 단층이 응회암층을 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층선을 중심으로 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굴의 형태 역시 이러한 구조선의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독립문바위굴은 양방향으로 형성된 해식 동굴이 이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는 굴의 상부 부분이 남아 아치모양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후 침식이 지속되어 상부가 붕괴되면 시스택의 형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독립문바위에는 해식애, 해식동, 시아치가 모두 발달해 있어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사진 19) (A): 독립문바위굴의 남동측 모습, (B), (C): 독립문바위굴의 남측 모습, (D): 독립문바위굴의 북측 모습

### 7) 동도부두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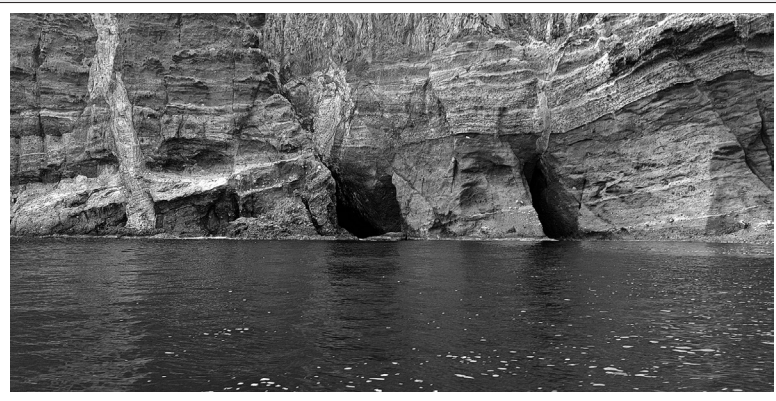
(사진 20) (A): 동도부두굴의 전경, (B), (C): 동도부두굴의 북측 입구

동도 서남측에 형성된 해식 동굴로, 굴의 길이는 약 14m이다. 동굴 주변에는 다양한 크기의 화산력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수직 절리가 발달해 있어 절리를 따라 침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선착장과 연결되어 있어 파랑에너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동도부두굴 주변 해식에, 특히 해식에의 상부 부분에는 벌집 모양의 타포니가 다수 발달해 있다. 동도부두굴의 타포니는 염풍화 작용과 더불어 화

산력들이 분리, 제거됨에 따라 더욱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동도부두굴은 침식 지형과 풍화 지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 8) 등댓굴

동도의 등대 동쪽 절벽 아래로 형성된 해식 동굴군이다. 크게 3개의 굴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상 발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등댓굴이 형성된 해식애는 정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으며, 독도 형성 마지막에 관입한 조면암 암맥이 나타난다. 등댓굴의 형성 역시 단층선을 중심으로 파식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층리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하지만 등댓굴 가까이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 규모 등에 대한 조사는 수행하지 못했으며 추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사진 21〉 등댓굴의 전경

## VI. 독도 동굴 특징에 대한 고찰

이 조사에서는 독도에 분포하는 동굴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아치 지형에 해당되는 관통동굴이 14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해식동에 해당되는 막장굴은 5개로 비교적 그 수가 적었다. 그러나 코끼리바위, 독립문바위 등은 전형적인 시아치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반해, 다른 관통동굴들은 아치형이면서 굴의 길이가 긴 관개로 동굴과 시아치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지형학적으로는 시아치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그 구분이 불명확하여 관통동굴로 구분하였다.

또한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는 방향을 살펴보면, 수직으로 뚫려 있는 ⑭ 천장굴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 20개의 동굴 중 16개의 동굴이 북동-남서 혹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발달해 있었다. 특히 서도에 분포해 있는 ①~⑬까지의 동굴들은 모두 남-북 방향으로 발달해 있었고, 그중 약 62%가 북북서-남남동 혹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나머지 약 38%가 북북동-남남서 혹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동도의 경우 남-북 계열의 방향으로 형성된 동굴들도 있었으나, ⑮ 천장굴입구동굴과 ⑯ 천장굴속동굴, ⑰ 독립문바위 해식애의 경우 동남동-서남서 혹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방향성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기반암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독도의 동굴들은 응회암과 조면암 모두에 발달해 있었으나 응회암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침식에 취약한 응회암의 기반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면암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두 시아치 형태의 관통굴이 형성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암석의 종류와 동굴의 형태는 큰 관련성이 없었으며, 암종보다는 암석에 발달되어 있는 절리, 단층과 같은 구조선이 동굴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독도에 분포하는 동굴들의 경우 수직적으로 좁고 긴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구조선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독도에 분포하는 동굴의 형태적 특징

동굴 이름	관찰되는 지형	동굴의 방향	기반암	동굴의 형태
① 탕건봉굴	해식동, 시아치	NNW-SSE	응회암	삼각형 형태
② 가재굴	해식동	NE-SW	응회암	높이에 비해 폭이 더 넓은 형태
③ 물굴	해식동, 주상절리	NW-SE	조면암	등근 형태
④ 군함바위동굴1	시아치, 타포니	NNW-SSE	조면암	좁고 긴 형태
⑤ 군함바위동굴2	시아치, 타포니	NNE-SSW	조면암	얇고 넓은 납작한 형태
⑥ 군함바위동굴3	시아치, 타포니	NNE-SSW	조면암	절리선이 반영된 형태
⑦ 상장군바위동굴	시아치, 타포니	NNW-SSE	응회암, 조면암	높이와 너비가 비슷한 형태
⑧ 코끼리바위굴	시아치, 주상절리, 타포니	NW-SE	응회암, 조면암	좁고 긴 형태
⑨ 코끼리바위 속동굴	시아치	NW-SE	조면암	높이에 비해 폭이 더 넓은 형태
⑩ 주민숙소 수중동굴	해식동	NE-SW	-	
⑪ 몽돌밭 막장굴	해식동, 자갈해빈	NNW-SSE	응회암	삼각형 형태
⑫ 삼형제굴1	시아치, 시스택, 주상절리	NE-SW	조면안산암	삼각형 형태
⑬ 삼형제굴2	시아치, 시스택, 주상절리	NW-SE	조면안산암	등근 형태
⑭ 천장굴	침식와지, 해식동	-	응회암	와지 형태
⑮ 천장굴입구동굴	시아치	ENE-WSW	응회암	폭에 비해 높이가 높은 형태
⑯ 천장굴속동굴	시아치	WNW-ESE	응회암	절리선이 반영된 형태
⑰ 구부두굴	시아치	NW-SE	응회암	등근 형태
⑱ 독립문바위 해식애	해식애, 해식동	WNW-ESE	응회암	좁고 긴 형태
⑲ 독립문바위굴	시아치	NNW-SSE	응회암	좁고 긴 형태
⑳ 동도부두굴	해식동, 타포니, 시아치	N-S	응회암	좁고 긴 형태
㉑ 등대굴	해식동, 단층, 암맥	SE-NW	응회암	폭에 비해 높이가 높은 형태

## Ⅶ. 결론

독도에는 해안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다양한 동굴 지형이 발달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도의 13개, 동도의 8개, 총 21개 동굴의 분포와 지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21개 동굴은 형태적 특성에 따라 14개의 관통동

굴, 5개의 막장굴, 1개의 수중굴, 1개의 수직동굴로 분류되었고, 시아치에 해당되는 지형이 가장 많았는데, 14개의 관통동굴 모두 시아치 지형이 관찰되고 있다. 이 동굴들의 주요한 형성 요인은 파랑 에너지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 오는 파랑 에너지에 의해 동굴이 형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에너지의 강도 및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독도에는 비교적 풍화,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응회암이 많이 분포한다는 점, 화산 활동에 의한 단층 및 절리들이 다수 분포한다는 점 역시 동굴 지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동굴이 형성된 곳들은 주로 해수면에 근접하여 절리의 밀도가 높은 곳, 혹은 단층선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곳들은 상대적으로 침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해식 작용이 집중되었을 것이고, 파랑의 침식 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동굴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굴의 형태 역시 층리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좁고 긴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파랑에너지 및 기반암 조건, 그리고 구조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침식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21개의 동굴 중 원래부터 명칭이 있던 동굴은 동도의 천장굴과 서도의 물골과 가제굴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 임시로 명칭을 붙이긴 했으나, 아직 정식 명칭이 없는 동굴들에 대한 명칭 부여 및 이들의 영년변화(永年變化) 기록을 통한 관리와 독도 동굴들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요구된다. 물론 동굴 입구의 높이나 면적 등을 직접적으로 측량하지 못한 점,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하겠으나, 이 글은 독도 동굴 지형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들에서 독도의 동굴에 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다.

##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독도에 존재하는 동굴의 지리적 분포와 각 동굴의 지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독도가 지니는 지형학적 연구 가치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지형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동굴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조사 결과 독도에는 총 21개의 동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도에 13개, 동도에 8개의 동굴이 확인되었다. 동굴의 형태상으로는 관통동굴이 가장 많았으며, 시아치에 해당되는 지형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이 동굴들의 주요한 형성 요인은 파랑 에너지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 오는 파랑 에너지에 의해 동굴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도에는 비교적 풍화,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응회암이 많이 분포한다는 점 및 화산 활동에 의한 단층 및 절리들이 다수 분포한다는 점 역시 동굴 지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랑에너지 및 기반암 조건, 그리고 구조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침식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 이루어진 21개의 동굴 중 원래부터 명칭이 있던 동굴은 동도의 천장굴과 서도의 물골과 가제굴 밖에 없다. 아직 정식 명칭이 없는 동굴들에 대한 명칭 부여 및 지속적인 학술적 관심이 요구된다.

<주제어>

독도, 동굴, 지리적 분포, 지형적 특성, 관통동굴, 시아치, 응회암

ABSTRACT

Distribution of Caves in Dokdo and its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 DongLip  
(CEO, Dong-A Mapping Co.)

Shin, Won Jeo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Jaeyung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caves in Dokdo and the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cave. Despite the value of geomorphological studies of Dokdo, not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is topic, and it is hard to find research outcomes on the caves in Dokdo. This study identified a total of 21 caves in Dokdo: 13 caves in the west island and eight caves in the east island. The most common type of cave is penetrating cave, and in topographical terms, sea arch is the most common. The main forming factor of these caves is erosion by wave energy, approaching the islands differently each season.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many tuff deposits with weak resistance to erosion, as well as the large number of faults and joints resulting from volcanic activities in Dokdo have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cave topography.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 wave energy, bedrock conditions and structural factors all acted together to cause erosion. Among the 21 caves, only Cheonjangul in the east island, and Mulgol and Gajegul in the west island had been named. The rest of the caves should be given names and continued academic interest is required on these caves.

Keywords

Dokdo, cave, geographical distribution, geomorphic characteristics, penetrating cave, sea arch, tuff

## 참고 문헌

- 고의장, 2001,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에 대한 지형학적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35(2).
- 고의장, 2003,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에 대한 지형학적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37(3).
- 국토지리정보원, 2011, 『독도지리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 김우관, 1996,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 『자연실태종합보고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
- 김창환, 2013,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4).
- 박경근·황상일, 2008, 「독도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地理學論究』 27.
- 박동원·박승필, 1981,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19.
- 박종관, 2009, 「굴업도의 지질, 해안경관 특성 및 그 활용 방안」, 『한국지형학회지』 16(1).
- 배병일, 2016, 「독도 관련 법령의 체계성과 정합성」, 『독도연구』 21.
- 배수경·추창오, 2016,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유산적 가치와 관리현황」, 『지질학회지』 52(5).
- 손영관·박기화, 1994, 「독도의 지질과 진화」, 『지질학회지』 30(3).
- 신원정·김종연, 2018, 「대청도 미아동, 농여, 지두리의 해안 지형에 대한 연구: 암석 차이에 의한 차별침식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8(3).
- 심정보, 201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독도 인식」, 『문화역사지리』 30(1).
- 우한별·장동호, 2010, 「다중시기 항공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한 해안침식 변화 연구: 태안반도를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17(4).
- 이민부·김영훈, 2011, 「독도의 지리적 개요」, 『독도지리지』, 국토지리정보원.
- 임동일·정희수·추용식·박광순·강시환, 2002, 「한국 서해 남부 함평만의 해안선 변화 연구 I. 해안절벽의 침식과 후퇴」, 『한국해양학회지』 7(3).
- 이수광·박혜숙, 1981, 「독도의 해저지형」,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19.
- 장동호·박지훈, 2012, 「침식기준목을 이용한 파도리 해식에 사면의 침식·후퇴율 산정」, 『한국지형학회지』 19(3).

## 독도의 동굴 분포와 지형적 특성

- 장윤득·황상일, 2017, 『독도의 자연이야기: 지질/지형 경관』, 문화재청·경상북도.
- 전영권, 2005, 「독도의 지형지(地形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 조병욱·윤옥·이병대·송원경·황재홍·추창오, 2011, 「독도 서도 물골 지하수의 유출특성」, 『지질공학회지』 21(2).
- 지광훈·장동호·박노옥, 2007, 『위성에서 본 한국의 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소, 2000, 『독도 생태계 등 기초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 황상일·박경근, 2007, 「독도 동도 서쪽 해안의 타포니 지형 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 황상일·박경근·윤순옥, 2009, 「독도 서도 북서 해안의 Holocene 기후변화와 타포니 지형 발달」, 『한국지형학회지』 16(1).
- 황상일·윤순옥, 2011, 「독도의 지형」, 『독도지리지』, 국토지리정보원.
- Bird, E. C. F., 2008, Coastal Geomorphology;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New Jersey: Wiley.
- Jones, R., 1965, "Observations of the Geomorphology of a coastal cave near Wynyard",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Tasmania, 99.
- Lace, M. J., 2008, "Coastal Cave Development in Puerto Rico",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4(2).
- Sohn, Y. K. and Park, K. H., 1994, "Geology and Evolution of Tok Island",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30(3).
- Strahler, A. H., 2013, Introducing Physical Geography (6th Edition), New Jersey: Wiley.
- Todaro, M. A., Leasi, F., Bizzarri, N. and Tongiorgi, P., 2006, "Meiofauna densities and gastrotrich community composition in a Mediterranean sea cave", Marine Biology, 149.
- 『공감신문』, 2016. 9. 28(이효용, 「독도는 동굴섬...16개의 굴이 있다. 동도 6개, 서도 9개, 그리고 삼형제 바위동굴... 카약 타고 찍은 사진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6057> (검색일: 2019.4.21).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독도천연보호구역", <http://www.heritage.go.kr> (검색일: 2019.4.21).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https://mgeo.kigam.re.kr> (검색일: 2019.4.16).

# 울진 대풍헌 현판 기문류(記文類) 자료의 해제 및 번역

해제 및 교열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탈초 및 번역 **정명수**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 1. 울진 대풍헌 현판 기문류 자료에 관하여

울진 대풍헌(待風軒)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이다. 대풍헌 자료는 대풍헌 건물 자체를 포함하여 대풍헌이 소장하고 있는 상량기문(上樑記文) 3점, 현판(懸板) 18점, 고문서 2점 등 자료를 일컫는다.

대풍헌 건물은 “울진 대풍헌”이란 명칭으로 2005년 9월 20일 경상북도의 문화재자료 제1493호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3월 11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165호로 문화재 종별이 변경,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원래의 모습을 크게 잃어버려 2008~2010년에 걸쳐 해체 복원되었다.



〈사진1〉 복원 전 대풍헌<sup>1)</sup>

〈사진 2〉 복원 후 대풍헌

그리고 「완문」과 「수토절목」 등 고문서 2점은 ‘울진 대풍헌 소장문서’라는 이름으로 2006년 6월 29일 문화재자료 제511호로 지정되었다. 2점의 고문서 「완문」과 「수토절목」은 『영토해양연구』 16호(2018)에 해제와 번역문을 게재하였다.

한편, 상량기문 3점은 ㉓ 종도리장혀[宗長舌], ㉔ 종도리장혀, ㉕ 뜯장혀[別長舌]를 말한다(사진3). 이중 상태가 좋은 1점은 2010년 대풍헌을 복원하여 중건(重建)할 때 다시 사용하였고, 나머지 2점은 전시관이 건립되면 전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상량기문에는 기둥을 세우고 상량을 한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역할과 성명도 모두 기재되어 있어, 1851년 「구산동사중수기(邱山洞舍重修記)」의 내용을 증명해 주고 있다.

대풍헌 현판은 건물 복원 전에는 17점이 있었는데, 2010년 복원 후에 새로 만든 「대풍헌중건복원기」를 추가하여 18점이 되었다. 18점 중 12점이 ‘울진 대풍헌 현판 일괄(蔚珍待風軒懸板一括)’이란 이름으로 2012년 5월 14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1호로 지정되었다. 대풍헌의 현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 이 글에 사용된 모든 사진 자료(記文 사진 포함)는 울진군청 학예연구사 심현용 박사 제공 사진임.

〈표 1〉 대풍헌의 현판 현황<sup>2)</sup>

번호	현판 명칭	제작 시기	찬자	비고
1	箕城龜山洞舍	1851년(철종 2) 이전		①
2	待風軒	1851년 6월		②
3	邱山洞舍重修記	1851년 6월	金學鱗(記) 孫宗勳(書)	③
4	平海郡守沈能武李玠翁永世不忘之板	1870년(고종 7) 7월		문화재 지정됨
5	越松萬戶張源翼永世不忘之板	1870년 7월	朴齊恩(記)	
6	平海郡守李容益永世不忘之板	1871년(고종 8) 4월		
7	越松營將黃公永世不忘之板	1872년(고종 9) 8월	方五(撰) 金述謨(書)	
8	銓任孫周衡孫沫栢孫益彰永世不忘之板	1878년(고종 15) 11월	方五(記)	
9	都監朴億伊永世不忘之板	1878년 11월	方五(書)	
10	邱山洞舍記	1888년(고종 25) 4월	李瑞球(記)	
11	洞稷完文	1904년 2월, 5월		⑤
12	重修記	1906년 5월	孫周炯(撰) 黃京運(書) 尹永善(刻)	⑥
13	洞舍重修記	1939년 6월	孫啓守(撰)	⑦
14	城隍堂重修記	1959년 3월	孫應元(撰)	⑧
15	使者堂重修記	1968년 10월	黃德基(記)	⑨
16	洞舍重修故舍新築記	1972년 9월		⑩
17	待風軒및城隍堂重建記	1991년 9월, 10월	南宗淳(記)	⑪
18	대풍헌중건복원기	2010년 1월		

이번 호(『영토해양연구』 17호)에는 상량기문 3점(㉗~㉙) 및 건물 바깥쪽에 걸린 현판 2점(①~②)과 건물 안쪽에 걸린 현판 중 기문류(記文類) 9점(③~⑪)에 대한 해제와 번역문을 게재하려고 한다. 기문 중 대풍헌 해제 복원 후 만들어진 「대풍헌중건복원기」는 비교적 근자에 한글로 만들어졌으므로 제외하였다. 나머지 영세불망지판류(永世不忘之板類) 6점에 대한 해제와 번역문은 다음 호(『영토해양연구』 18호)에 게재할 것이다.

현판의 기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현판의 한문 원문과 그것을 한글로 번

2 심현용, 2015, 「울진 대풍헌의 울릉도·독도 수토 자료와 그 역사적 의미」, 영남대 독도연구소 편, 『울진 대풍헌과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의 수토사』, 선인, 200~201쪽 참고.

역한 번역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별도의 해설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몇 가지 논의해 볼 만한 사항들은 있다.

첫째로 건물 바깥에 걸린 ①「기성구산동사(箕城龜山洞舍)」현판과 ②「대풍헌(待風軒)」현판의 제작 연대와 관련된 문제다. 「구산동사중수기」의 본문에서 “새로 아름다운 이름을 내걸어 ‘대풍헌(待風軒)’이라 하니”라고 하였으므로, ②번 대풍헌(待風軒) 현판은 1851년에 현판을 만들어 걸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①「기성구산동사(箕城龜山洞舍)」현판은 언제 제작되었을까? 심현용 박사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기성구산동사」 현판 ①은 「구산동사중수기」 현판 ③의 내용으로 보아 동사를 중수하는 1851년(철종 2) 3월 이전에 이미 걸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 지명이 신라 말 당나라 구대림(丘大林) 장군이 이곳에 귀화하여 ‘구미(丘尾)’라 칭하고, 고려 말 평해군수 백암 김제가 지형이 거북의 꼬리와 같다 하여 ‘구미(龜尾)’로 개칭하여 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구산(邱山)’으로 칭하게 되었다 한다.<sup>3</sup> 그런데 현판 ①의 ‘구산(龜山)’은 앞에서 보듯이 마을지명이 丘尾 → 龜尾 → 邱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한자로 보아 구미(龜尾)에서 구산(邱山)으로 변하는 중간과정(龜尾 → 龜山 → 邱山)의 지명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구산(邱山)’이 1914년이 아닌 「구산 동사 중수기」 현판 ③으로 보아 늦어도 1851년 6월에 이미 ‘구산(邱山)’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성구산동사」 현판 ①에 적힌 ‘구산(龜山)’이란 지명으로 보아도 「기성구산동사」 현판 ①의 제작 시기는 1851년(철종 2) 3월 이전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sup>4</sup>

다만, 『여지도서(輿地圖書)』 「평해군·고적」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3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0, 「제11장 울진군」, 『경북마을지』 상, 경상북도, 914~915쪽.(인용문의 원래 각주임)

4 심현용, 2015, 앞의 책, 196~197쪽.

월송정 동쪽 편 모래 언덕의 조산(造山) : 신라 때 중국의 학사 황락(黃洛)과 장군 구대림(丘大林)이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와 월송정 아래에 정착하였다. 구대림은 해당화가 편 모래 언덕의 북쪽 포구에 거처하였다. 그래서 그 포구의 이름을 구미포(丘美浦)라 했다. 황락은 북산(北山)의 북쪽 들에 살았는데, 동쪽 편 모래 언덕에 인공으로 조산을 만들어 지세의 결점을 보완하였다. 우리나라 성씨에 황씨는 이 사람을 시조로 삼는다. 조산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越松亭東邊沙岸造山: 新羅中有稱黃學士洛·丘將軍大林, 自中州渡海, 來泊于越松亭下, 丘居於海棠岸之北浦, 故名其浦曰丘美. 黃居於北山之北原, 造山于東邊沙岸以補缺, 東國之姓黃者, 鼻祖於此人, 而造山至今尙存.)<sup>5</sup>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구미(丘美)’라는 지명도 나온다. 따라서 필자의 한자의 특성상 음차(音借)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므로, 구미(丘美), 구미(丘尾), 구미(龜尾), 구산(龜山), 구산(邱山)의 통용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 이 현판에서 ‘구산(龜山)’이라는 마을 이름과 함께 그 앞에 있는 ‘기성(箕城)’이란 이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성(箕城)’은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평해(平海)의 별호(別號)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16년 평해군이 울진군으로 통합되면서 기성면이 새로 만들어졌다. 기성면(箕城面)은 원래 있었던 기성리(箕城里)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원래 평해군 원북면에 속했던 구산리도 이때 울진군 기성면으로 옮겨 소속되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이 현판의 ‘기성(箕城)’은 평해(平海)의 별호(別號)라고 생각된다.

현판 ④ 「구산동사기(邱山洞舍記)」는 1888년(고종 25)에 글이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글의 전반부는 읍의 현재(賢宰)를 칭송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고을의 안택규와 김석빈의 공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구산동사기」라는 제목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여타의 영세불망지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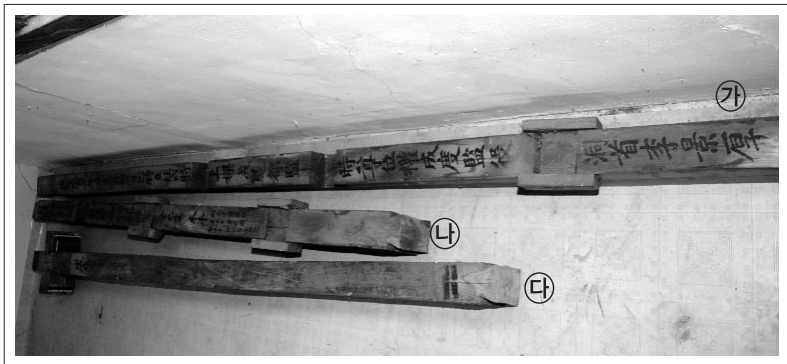
5 울진문화원, 2016, 『울진고문헌자료집성』, 113쪽 참고.

현판 ⑤ 「동계완문(洞稷完文)」은 원래 문서로 발급된 것을 현판에 새긴 것이다. 이 「동계완문」과 ⑥ 「중수기(重修記)」는 시간적으로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또 동계원 20명의 이름이 두 현판에 공히 나오는데, 2명은 이름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나머지 18명은 동일인으로 보이는데, 한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문서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⑨ 「사자당중수기(使者堂重修記)」는 사자당(使者堂)을 중수하고 그 경위를 기록한 기문이다. 구산동에는 성황당이 두 개 있어서 하나를 성황당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사자당이라고 한 듯하다. ⑩ 「동사중수고사신축기(洞舍重修故舍新築記)」는 구산동사를 중수하고 고사(故舍)를 신축한 것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고사를 신축한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고사는 아마도 동사 부근에 있던 부속 건물 같은데, 무너져서 다시 지었는데[重建] 그것을 새로 지었다[新築]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II. 상량기문과 건물 바깥 현판의 사진, 원문, 그리고 번역문

### 1. 상량기문



(사진 3) 상량기문

㉑ 종도리장허[宗長舌]

歲在咸豐元年辛亥三月初二日巳時立柱, 戌時上樑, 成造都監時尊位權成度, 監役洞首李景厚.

합풍(咸豐) 원년(元年) 신해(辛亥)년 3월 초2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에 기둥을 세우고, 술시(戌時: 오후 7~9시)에 상량하였다. 성조도감(成造都監)은 시존위(時尊位) 권성도(權成度)이고, 감역(監役)은 동수(洞首) 이경후(李景厚)이다.

㉒ 종도리장허

監役, 時有司安大喆, 時公員金尙郁.

監役掌務, 金守東·安景祚·金允業.

木手, 都木手朴振秀, 永興之人, 末木手黃宗國, 副木手黃泰振.

감역(監役)은 시유사(時有司) 안대철(安大喆)과 시공원(時公員) 김상욱(金尙郁)이다.

감역장무(監役掌務)는 김수동(金守東), 안경조(安景祚), 김윤업(金允業)이다.

목수(木手)는 도목수(都木手)가 박진수(朴振秀)인데 영흥사람이다. 말목수(末木手)는 황종국(黃宗國)이고, 부목수(副木手)는 황태진(黃泰振)이다.

㉓ 뜯장허[別長舌]

歲在咸豐元年辛亥.

합풍(咸豐) 원년(元年) 신해(辛亥: 철종2, 1851)년.

## 2. 건물 바깥의 현판



〈사진 4〉 해체복원 전의 대풍헌 바깥 현판

### ① 기성구산동사

箕城龜山洞舍

기성구산동사

### ② 대풍헌

待風軒

대풍헌

## Ⅲ. 건물 안쪽의 현판 중 기문류

### 1. 기문류의 원문과 번역문

#### ③ 「구산동사중수기」

「邱山洞舍重修記」

洞曰邱山, 眞是丘將軍之遺址歟. 地接滄海, 抑亦魯仲連之所蹈也. 東通鬱

陵之島,南控月松之浦,奉命將之大蓋或駐,守鎮官之檠戟遙臨,關東重地,郡北要津.唯我洞舍,歲月侵久,冗<sup>6</sup>礎幾頽,風雨磨洗,棟樑盡漏.是以權公成度,與李景厚·金尙郁·安大喆·安景祚四人,重營鳩財,因作十餘間,以爲搜討奉行之所.後之人與我同志,嗣而葺之,庶此舍之不朽也.噫,東坡得雨,以名其亭,禹偁代竹,以名其樓,所以志喜也.新揭華名曰待風軒,海波鳴戶,雲影臨軒,地關千年之基,門泊萬里之船.於焉嘉,少焉出,蟾精吐光,朝而往,暮而歸,漁歌唱晚,山海幽賞,自在箇中,此則一精舍之勝槩也.余觀夫古人名物,亦各有志焉,以風名軒,不亦宜乎.遂爲之記,以示不忘云爾.

咸豐元年辛亥六月日,江陵散人金學鱗記,達孝孫宗勳書.

成造都監 時尊位 權成度

洞長 李景厚

公員 金尙郁

有司 安大哲

曾經尊位 李宅潤·李致潤·金世得

洞長 金重億·李得求·李東秀·朴秋伯·李景洪·金光鍊·金國臣·韓福宅

洞員 李明鶴·權在彥·金守郁·金在鈺·金重九·李是赫·李景默·朴元福·金大龍

別有司 安景祚

都掌務 金守東

別掌務 金允業

鳩財人 金致業·千光祿

官洞長 李順遜

里正 金之平

監考 金文興

6 冗: 坑(아궁이 갯)의 이체자로 판독함.

刻手 金相國

木手 黃泰振·朴振秀·金丙才·安盤石·金光浩·金成根·金光錫·安億彬  
原

金丁玉·安萬大·李景彦

「구산동사중수기」

동(洞)을 구산(邱山)<sup>7</sup>이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구장군(丘將軍)<sup>8</sup>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यो,<sup>9</sup> 땅이 동해에 접해 있으니, 어찌면 또 노중련(魯仲連)이 바다에 뛰어들려 했던 곳이다.<sup>10</sup> 동으로는 울릉도(鬱陵島)와 통하고, 남으로는 월송포(月松浦)와 가까워 왕명을 받든 장수(將帥)의 큰 수레가 주둔하고 진(鎭)을 지키는 관원의 계극(槩戟)<sup>11</sup>이 멀리서 부임해 오던 관동(關東)의 요충지이자

7 구산(邱山): 현재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마을 이름. 원래는 평해군에 속하였으나, 1916년 평해군이 울진군에 통합되면서 구산리는 평해군 원북면(遠北面)에서 울진군 기성면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8 구장군(丘將軍): 중국 당(唐)나라 때의 장군 구대림(丘大林), 구대림은 663년에 일본(日本)으로 사신을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신라(新羅)의 강역이었던 평해에 이르렀으며, 그 후 이곳에 거처를 정해 살면서 평해(平海) 구씨(丘氏)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9 진실로~곳ियो: 『여지도서(輿地圖書)』 「평해군·고적」에 “월송정 동쪽 편 모래 언덕의 조산(造山): 신라 때 중국의 학사 황락(黃洛)과 장군 구대림(丘大林)이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 월송정 아래에 정착하였다. 구대림은 해당화가 핀 모래 언덕의 북쪽 포구에 거처하였다. 그래서 그 포구의 이름을 구미포(丘美浦)라 했다. 황락은 북산(北山)의 북쪽 들에 살았는데, 동쪽 편 모래 언덕에 인공으로 조산을 만들어 풍수상의 결점을 보완하였다. 우리나라 성씨에 황씨는 이 사람을 시조로 삼는다. 조산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越松亭東邊沙岸造山: 新羅中有稱黃學士洛·丘將軍大林, 自中州渡海, 來泊于越松亭下. 丘居於海岸岸之北浦, 故名其浦曰丘美, 黃居於北山之北原. 造山于東邊沙岸以補缺, 東國之姓黃者, 鼻祖於此人, 而造山至今尚存.)고 하였다. 울진문화원, 2016, 앞의 책, 113쪽 참고.

10 어찌면~곳이다: 노중련(魯仲連)은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제(濟)나라의 뛰어난 책사로 큰 공을 세우고도 높은 벼슬과 천금을 사양하고 홀연히 숨어 산 은자이다. 『사기(史記)』 「노중련열전(魯仲連列傳)」에 의하면 위(魏)나라 장군 신원연(辛垣衍)을 설득하며, 포악무도한 진(秦)나라를 황제로 섬기니 “나는 동해 건너다가 죽겠다.(連有蹈東海而死耳)”고 하였다.

11 계극(槩戟): 적색색 비단으로 쓴 나무창으로 고대에 관리가 쓰던 의장의 일종이다. 출행할 때에는 맨 앞의 병사가 이 창을 들고 전도(前導)가 되며, 임소에 당도한 뒤에는 문정(門庭)에 세워 놓는다.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좋은 명망을 지닌 도독 염공은 계극을 앞세우고 멀리서 부임해 왔고, 훌륭한 위의를 갖춘 신임 태수 우문은 휘장 친 수레를 잠시 멈추었다.(都督閻公之雅望, 槩戟遙臨, 宇文新州之懿範, 帷幄暫駐)”고 하였다.

평해군(平海郡)<sup>12</sup> 북쪽의 중요한 나루터다.

다만 우리 동사(洞舍)는 오랜 세월이 지나며 아궁이와 주춧돌이 거의 무너지고, 비바람에 닳고 씻겨 용마루와 들보에 온통 물이 새었다. 이런 까닭으로 권성도가 이경후, 김상옥, 안대철, 안경조 네 사람과 더불어 다시 지을 재물을 모아 십여 칸을 짓고 수도(搜討)<sup>13</sup>의 명을 받들어 행하는 곳으로 삼았다. 뒷사람들도 우리와 뜻을 함께하여 뒤를 이어 수리한다면 이 동사는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 소동파(蘇東坡)는 비가 내리자 정자를 ‘희우정(喜雨亭)’이라 명명(命名)하고,<sup>14</sup> 왕우칭(王禹偁)은 대나무로 기와를 대신하여 누각을 ‘죽루(竹樓)’라 명명하였으니,<sup>15</sup> 이는 기쁨을 기록해 두고자 함이었다. 새로 아름다운 이름을 내걸어 ‘대풍헌(待風軒)’이라 하니, 파도 소리가 방안까지 들리고 구름 그림자가 마루 난간에 드리우며, 땅에는 천 년이 이어질 기반이 열리고 문 앞에는 만 리를 오가는 배가 정박한다. 이에 기쁨에 겨워 잠시 밖으로 나가면 달이 떠서 아름답게 비치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물녘에 돌아오는 어부의 노랫소리가 느지막이 들리며, 산과 바다의 그윽한 경치가 절로 이 안에 있으니 이는 곧 온 정사(精舍)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옛 사람들이 사물에 이름 붙인 것을 보니 또한 각각 뜻이 있었으니, ‘풍(風)’자를 빌어 이 건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마침내 기문(記文)을 지어서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인다.

12 평해군(平海郡): 지금의 경상북도 울진군 남부(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평해읍)에 있던 행정구역이다. 1916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울진군에 통합되었다.

13 수도(搜討): 섬이나 변경의 특정 지역에 백성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살고 있거나 외적이 들어와 있으면 수색 토벌하여 본토로 쇠환하거나 본국으로 쫓아 보내는 것을 말한다.

14 소동파는~명명하고: 중국 북송(北宋)의 대문호인 소식(蘇軾, 1037~1101)이 봉상부(鳳翔府) 첨판(僉判)으로 있을 때 봄에 기우가 들어 백성들이 심히 걱정하는 때에 단비가 내리고, 마침 관아 동북쪽의 정자가 완성되자 낙성식을 베풀면서 그 정자의 이름을 ‘희우정(喜雨亭)’이라 명명하고 「희우정기(喜雨亭記)」를 지었다.

15 왕우칭은~명명하였으니: 중국 북송 때 시인 왕우칭(954~1001)이 황주(黃州)에 유배되었을 때 그곳의 특산인 큰 대나무를 베어다가 기와 대신 지붕을 덮은 누각을 만들어 ‘죽루(竹樓)’라 명명하고서 「황주죽루기(黃州竹樓記)」를 지어 그 풍취를 읊었다.

함풍(咸豐) 원년(元年) 신해(辛亥, 1851, 철종2)년 6월 모일에, 강릉산인(江陵散人) 김학린이 짓고, 달효(達孝)<sup>16</sup>의 손종훈이 쓴다.

성조도감(成造都監) : 시존위 권성도, 동장 이경후, 공원 김상욱, 유사 안대철, 증경준위 이택윤·이치윤·김세득, 동장 김종억·이득구·이동수·박추백·이경홍·김광련·김국신·한복택, 동원 이명학·권재언·김수욱·김재욱·김중구·이시혁·이경목·박원복·김대룡, 별유사 안경조, 도장무 김수동, 별장무 김윤업, 구재인 김치업·천광록, 관동장 이순손, 이정 김지평, 감고 김문홍, 각수 김상국, 목수 황태진·박진수·김병재·안반석·김광호·김성근·김광수·안억빈, 끝<sup>17</sup>. 김정옥·안만대·이경언.

#### ④ 「구산동사기」

##### 「邱山洞舍記」

余嘗觀輿誌，繫昔丘將軍浮海來居于此，而因名邱山，則年代歷千，興替不一，中有鬱攸之災，而適因邑賢宰拯溺之澤，不渙散安堵。曾有深廬之弊，而幸賴若爾人發蹤之功，如看症投劑，猗歟偉哉。微若人，豈如是盡心拯弊哉。大抵莫重國事搜討役，服一除八，有難雜頌。烟戶役，呈官安民，於古未易之功。有功必有記。安宅奎·金碩彬，不有己功，歸之常例，則洞之老少，齊曰不可。有功無記，與無功同，盍將梓板，使後勸頌，要余記功萬一。不以材拙辭者，乃是居隣同井之故也。不已忘拙，略記以壽其傳焉。

著雍困敦維夏上浣，散人李瑞球記。

16 달효(達孝): 조선시대 평해군에 있던 마을 이름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평해군의 동쪽 5리쯤에 달효역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17 끝: 원문은 원(原) 자인데, 인원물제(人原物際)에서 나온 것이다. 인원물제는 사람의 사주(四柱)나 물품의 목록을 적은 단자에서, 사람에게 관계되는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는 “原”자를 쓰고, 물품의 이름을 다 적은 다음에는 “際”자를 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제사를 지낼 때 식수와 담당자를 적거나, 건물을 짓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기문(記文)에 적을 때 맨 마지막에 원(原)자를 쓴다.

曾經尊位 安義寬·金有三·金宗潤·朴致儉·安宅奎公私雜役頃·金碩彬

曾經洞長 李得士·朴用宅·韓時白·金成雲·安道尙·李千宅

時任尊位 安宅奎

洞長 安道尙

有司 金處郁

都掌務 金孝得·金海孫

官洞長 金業重

里正 金守業

監考 李昌福

### 「구산동사기」

내 일찍이 지리지<sup>18</sup>를 살펴보니, 옛날에 구대림(丘大林) 장군이 바다에 표류해 와서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구산(邱山)’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sup>19</sup> 그러한 즉 연대가 천년이 지났고 왕조의 흥쇠(興替)가 한 번이 아니며 그 사이에 화마(火魔)의 재앙이 있었는데, 마침 고을의 현재(賢宰)가 위급한 상황을 구제해 준 덕택으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일찍이 매우 고질적인 폐단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 같은 분이 지휘하여 조정(調整)한 공덕을 입었는데, 마치 병의 증세를 보고 약을 투여한 것 같았으니 아름답고 위대하도다! 이 분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처럼 마음을 다해 폐단을 바로 잡았겠는가.

대저 막중한 국사(國事)인 수토(搜討)의 역(役)을 한 마을에 부담시키고 여덟 마을은 면제해주니,<sup>20</sup> 난잡한 달이 생겼다. 동민들의(閭戶)의 역(役)을 관청

18 지리지: 원문은 “輿誌”로 되어 있는데 『여지도서(輿地圖書)』와 『관동지(關東誌)』 등 지리지(地理誌)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19 옛날에~한다: 『여지도서(輿地圖書)』「평해군·고적」 “월송정 동쪽 편 모래 언덕의 조산(造山)”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주 9) 참조.

20 한 마을에 ~ 면제해주니: 수토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산동 한 마을에만 부담시키고 주변의 여덟 마을은 면제해 주었다는 것인 듯함.

에 바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옛날에도 쉽지 않은 공(功)이었다. 공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안택규(安宅奎)와 김석빈(金碩彬)은 자신의 공으로 삼지 않고 상례(常例)로 돌렸으나 동(洞)의 노소(老少)가 일제히 “불가하다. 공(功)이 있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공이 없는 것과 같다. 어찌 현판에 새겨 후세로 하여금 권면하고 칭송하게 하지 않겠느냐”고 하며, 나에게 공의 만분의일(萬分之一)이라도 기록해 주기를 청하였다. 글재주가 졸렬하다고 사양하지 못한 것은 이웃에 살면서 우물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만 둘 수 없어 내 졸렬함을 잊고 대략을 기록하여 그 일을 오래도록 전하고자 한다.

무자년(1888, 고종25) 4월 상순에 산인(散人) 이서구(李瑞球)가 짓다.

증경준위 안의관·김유삼·김중윤·박치검·안택규공사(公私)의 잡역을 면제해 준다. 김석빈, 증경동장 이득사·박용택·한시백·김성운·안도상·이천택, 시임준위 안택규, 동장 안도상, 유사 김치욱, 도장무 김효득·김해손, 관동장 김업중, 이정 김수업, 감고 이창복.

## ⑤ 「동계 원문」

### 「洞楔完文」

右文爲成給事. 夫有洞然後有民, 有民然後有洞. 然而矣洞僻在海隅, 荒年累度, 殘氓難產, 未由流離. 故今夫洞員, 一齊公議, 相論并肩之情誼, 與謨相救之事勢, 創設桃李之樂事, 修序蘭亭之好會, 世世不謾之誼也. 惟我洞員二十餘名, 鳩聚榆銅, 仰慕四十賢之蘭觴, 咸集萬一員之桃園, 豈不美哉, 亦不踴歟. 『易』之臭蘭, 通心於同, 『詩』之「伐木」, 歌於相救, 則豈不爲人間盛事之修楔乎. 上以誠養生送死之道施也, 下以悌垂後裕前之教謨猷. 暨自聚後, 益篤舊誼, 漸滋用利, 勿負百年之誼, 以遵一畫之約. 伏惟明主公決無私, 惠念修禊之樂事, 特垂印跡之顧助. 以永久遵行無弊之意, 茲以成給事, 千萬祈懇之地爲只爲.

光武八年甲辰二月日, 邱山洞.

官

孫快潤·安長用·李順五·金學伊·金基俊·金啓俊·金有學·尹國仲·孫億  
哲·金士用·安斗遠·金學伊·安千錫·金在希·鄭厚根·金相連·金相仁·  
崔成辰·李季秀·安德守

八十戶之大洞, 二十人之成稷, 出於奉公, 其誠可嘉. 從前以往, 無論某種公  
納, 一乃心力, 萬保洞規是矣, 若有不遵之民, 則自官庭別般嚴處矣. 惕念舉  
行事.

光武八年五月十三日

「동계 완문」

이 글은 동계(洞契)를 위해 작성하여 주는 것이다. 대저 동(洞)이 있는 후에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는 후에 동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구산동(邱山洞)은 후  
미진 바다 귀퉁이에 있으면서 흉년을 여러 차례 겪게 되자 쇠잔한 백성들  
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살아갈 방도가 없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동원(洞員)들이 일제히 공의(公議)하여 함께 살아갈 정의(情誼)를 의논하  
고 서로 구제하는 일을 더불어 도모하여 도리원(桃李園)의 즐거운 일<sup>21</sup>을 시  
작하고 난정(蘭亭)의 좋은 모임<sup>22</sup>을 만들었으니 대대로 잊지 말자는 정의(情  
誼)이다.

우리 동원(洞員) 20여 명이 유동(鑄銅)<sup>23</sup>을 모아 40현자가 벌인 난정(蘭亭)의  
술자리를 우러러 그리워하고 뜻밖의 사람이 모였던 도원(桃園)에 모두 모인

21 도리원(桃李園)의 즐거운 일: 이백(李白)의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에서 “복숭아꽃 자두꽃 핀 아  
름다운 정원에 모여, 천륜의 즐거운 일을 펼친다.(會桃李之芳園, 序天倫之樂事)”고 하였다. 여기서는 동민들이  
형제처럼 즐겁게 모여 노는 일을 가리킨다.

22 난정(蘭亭)의 좋은 모임: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집서(蘭亭集序)」에 서술된 일이다. 왕희지를 비롯한 41명  
의 명사(名士)들이 회계(會稽)의 난정(蘭亭)에 모여 계(禊)제사를 지낸 후 유상곡수(流觴曲水) 놀이를 하고 시문  
을 읊으며 즐거운 일을 가리킨다.

23 유동(鑄銅): 원문에는 ‘楡銅’으로 되어 있는데 ‘鑄銅’의 잘못으로 보인다. 유동(鑄銅)은 ‘아연을 섞은 놋쇠’로  
고급 유기(鑄器)그릇의 재료로 쓰인다.

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으며, 또한 좋지 않겠는가! 『주역(周易)』의 난초 향기처럼<sup>24</sup> 같음(同)에 마음이 통하고, 『시경(詩經)』 「벌목(伐木)」의 노래<sup>25</sup>처럼 서로 구원한다면, 어찌 인간세상의 성대한 일인 계(契)제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위로는 산자를 봉양하고 죽은자를 장사지내는 도리를 성(誠)으로써 시행하고, 아래로는 후생(後生)들에게 드리워준 여유로운 전인(前人)들의 가르침을 공경(敬)으로써 도모한다. 모임을 갖은 이후로는 옛 정의(情誼)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이로움을 점점 키우면서, 평생 정의(情誼)를 저버리지 말고 한 획의 규약도 준수하라. 삼가 생각하니 현명한 임금께서 공평하게 결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어 은혜로이 계(契)제사를 수행하는 즐거운 일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고자하는 인적(印跡)을 특별히 내리셨다. 이에 영원히 준행(遵行)하고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완문을 작성하여 주는 것이니 모쪼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라.

광무(光武) 8년(1904) 갑진(甲辰)년 2월 모일에 구산동에서.

관(官)의 수결(手法)

손쇄윤·안장용·이순오·김학이<sup>26</sup>·김기준·김계준·김유학·윤국중·손억철·김사용·안두원·김학이·안천석·김재희·정후근·김상련·김상인·최성진·이계수·안덕수.

80호(戶)의 큰 마을에 20인이 계를 만든 것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그 성의가 가장하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공납인지 막론하고 너

24 『주역(周易)』의 난초 향기처럼: 『주역』 「계사상(繫辭上)」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운 쇠를 지르고, 마음을 함께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 같다.(二人同心，其利斷金，同心之言，其臭如蘭)”고 하였다.

25 『시경(詩經)』 「벌목(伐木)」의 노래: 『시경』 「소아·벌목(小雅·伐木)」에 “나무 베는 소리 쩍쩍 울리는데 새들은 뻑뻑 울면서, 깊은 골짜기에서 날아와 큰 나무로 날아가네. 뻑뻑 우는 것은 자기 벗을 찾는 소리지, 새들을 보다 벗을 찾는 소리 내가늘, 하늘며 사람이 친구를 찾지 않겠는가? 삼가 벗과 잘 어울리면 언제나 화평하게 되리라.(伐木丁丁，鳥鳴嚶嚶。出自幽谷，遷于喬木。嚶其鳴矣，求其友聲。相彼鳥矣，猶求友聲。矧伊人矣，不求友生。神之聽之，終和且平)”고 하였다.

26 김학이: 아래줄에 동명의 김학이와 중복된다. ⑥ 「중수기」의 20인 명단에는 김학지(金學只)로 되어 있으며 김학지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희들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동의 규약(洞規)을 잘 지키라. 만약 준수하지 않는 동민(洞民)이 있으면 관청에서 별도로 엄하게 처리할 것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거행하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 ⑥ 「중수기」

#### 「重修記」

夫郡之東有海, 海之北有洞, 洞是海津而名曰邱山者, 何也. 在昔丘公之所占處而然也. 郡有政堂, 洞有舍宇, 故以五百年來設邑, 惟數十戶與爲洞, 是其洞舍者亦云舍宇也. 粵自辛卯之水敗, 況又癸卯之年凶, 前古大無, 而公納也, 海稅也, 各樣應役, 比前倍蓰, 洞樣也, 民情也, 其所稠殘, 漸波<sup>27</sup>艱難. 上下振掖, 東西貸本, 迫頭有事, 開眼無瞻, 生活莫知頭緒, 離散竟至末由矣.

何幸孫公商變, 顧其洞勢, 念其民窮, 任其尊位之名, 而特爲捐金, 擔債而報私, 聽弊而補公, 多至幾許兩金. 無還之無頭<sup>28</sup>彌縫, 洞將有成樣, 民可有支保, 懿歟謹哉. 是誰之力, 德如河海, 頌載洞天, 豈忘永世乎. 且前尊位孫公快潤, 以二十人中洞員, 一心同力, 隨事極勤, 與他有異, 亦豈非欽歎哉. 惟此兩公之德惠誠力, 不無褒功之道也.

見今舍宇, 年久而風雨滲漏, 上砌之棟樑朽傷, 歲深而霜雪灑茨<sup>29</sup>, 下舍之榜椽頽圯. 則南北通衢, 逆旅之頻仍, 前後處事, 公需之多煩, 則其在洞樣接待之方, 有所難便, 故致論齊發, 修葺之意如一, 鳩聚隨力, 重建之資充數, 則豈不美哉. 是故經之營之, 不日有成, 工也匠也, 無事告訖.

時過端陽, 序屬仲夏, 飛甍復新, 高欄益舊, 枕白巖於西南, 先生之祭坵, 四面江山, 萬古一屏, 臨碧海於東北, 將軍之舊墟, 千秋日月, 九天雙鏡. 漁歌

27 波: 波 자인지 불명확함.

28 頭: 頭 자로 되어 있으나 문리가 통하지 않아 잘못 판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됨.

29 茨: 茨 자인지 불명확함.

晚浦, 沙鷗秩集, 牧笛斜陽, 霞鷺齊飛, 蹈東仲連之忠節, 扶桑早紅, 擬古學士之遺跡, 越松長壽, 到此一洞, 添彼十分. 噫, 後之登斯者, 觀感而興起哉. 光武十年丙午五月日, 達孝五衛將孫周炯撰, 黃京運書, 尹永善刻.

座上 金道仁

前尊位 金國範·金基漢·金相振·朴學珍·崔錫九·安章用

成功尊位 孫快潤

時尊位 孫商燮, 錢十兩

時洞首 金相仁

時有司 孫世潤

前洞首 安國賢·韓致洪·安斗遠·金基俊·韓定鎬·安德淳·李千守·韓聖周·朴福哲·李順元·崔明基·金學伊·金先伊·黃學伊·尹國仲·金俊伊

成功二十洞員 孫快潤·金相仁·金啓仲·安斗遠·金士用·孫世潤·安千石·金學只·李順元·安章用·金基俊·尹國仲·安德淳·金有學·李錫宗·金學伊·鄭後根·金相連·崔成振

別掌務 金夫哲

原

### 「중수기」

평해군(平海郡)의 동쪽에 바다가 있고, 바다의 북쪽에 구산동(邱山洞)이 있으니, 동(洞)은 바닷가에 있는 포구이건만 이름을 구산(邱山)이라 함은 어째서인가? 옛적에 구대림(丘大林) 공이 머문 곳이기여 그러하다. 군(郡)에는 수령이 정무를 보는 관아가 있고, 동(洞)에는 사우(舍宇)가 있다. 그래서 오백년 이래로 고을을 설치함에 수십 호(戶)가 더불어 동(洞)이 되니, 그 동사(洞舍)라는 것은 또한 사우(舍宇)라고도 한다.

아, 신묘년(1891, 고종28)의 수해(水害)로 시작해서 계다가 또 계묘년(1903, 대한제국 광무7)의 흉년은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변고다. 그러나 공납(公納)과 해

세(海稅)<sup>30</sup> 등 각종 응해야 하는 부역이 전에 비하여 두 배 다섯 배로 늘어나니, 동(洞)의 형편과 백성들의 실정은 그 쇠잔한 정도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위아래에서 도와주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더라도 눈앞에 일이 닳쳐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는 게 없는 실정이라 살아갈 단서를 찾지 못해 뿔뿔이 흩어져도 끝내 대책이 없게 되었다.

다행히 손상섭(孫商燮) 공이 동의 형세를 돌아보고 동민(洞民)들의 궁핍함을 염려하여, 존위(尊位)의 소임을 떠맡고 특별히 금(金)을 출연하여 부채를 담당하고 사적으로 갚아주었으며 폐단을 듣고서 공적으로 보완했는데 많게는 몇 냥의 금(金)에 이르렀다. 갚을 수 없고 두서없는 미봉책이지만 동(洞)은 장차 제 모양을 이루게 되고, 동민(洞民)들은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아름답고도 훌륭하도다! 이는 누구의 힘이던가! 덕은 바다처럼 넓고 칭송은 널리 퍼져 있으니 어찌 영원히 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전(前) 존위 손쾌윤(孫快潤) 공은 20인의 동원(洞員) 중 한 분인데,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일마다 적극 애를 써서 다른 사람과는 다름이 있었으니 또한 어찌 흠모하고 찬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두 분[손상섭과 손쾌윤]의 후덕한 은혜와 정성스러운 조력은 공(功)을 기리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의 사우(舍宇)는 세월이 오래되어 비바람이 새고 섬돌 위의 기둥이 썩어 상했으며, 세월이 오래되어 서리와 눈을 맞아 하사(下舍)의 서까래가 무너졌다. 남북으로 통하는 큰 길에 여행객이 빈번이 이어지며, 앞뒤로 처리하는 일에 공적인 비용이 많고 번잡하니, 동(洞)의 형편상 손님을 접대하는 방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의론이 일제히 일어나 수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한결같았기에 힘이 닿는 만큼 재물을 모아 중간할 재화가 수효를 채우게 되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건물을 수리하는 일이 며칠 지나지 않아 이루어져 목공과 장인이 별 탈 없이 일이 끝났음을 고하였다.

계절(時序)은 단오(端午)를 지나 5월 한여름, 나는 듯한 용마루가 다시 새로

30 해세(海稅): 바다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에 매기는 세금.

위졌고 높은 난간은 이전보다 더욱 웅장하였다. 서남쪽으로는 백암산(白巖山)을 베고 있어 김제(金濟)<sup>31</sup> 선생의 제단은 사면(四面)의 강과 산이 만고에 하나의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동북쪽으로는 푸른 바다를 임하고 있어 구대림(丘大林) 장군의 옛 터에는 천년 동안 해와 달이 높은 하늘에 두 개의 거울처럼 달렸다. 뱃노래 울려 퍼지는 저녁 무렵 포구에는 갈매기가 가지런히 날아들고, 목동의 피리소리 들리는 석양 빛 아래에서는 노을 속 따오기가 나란히 날고 있다. 동해 바다에 뛰어들려 했던 노중련(魯仲連)의 충절(忠節)로 동해 바다는 일찌감치 붉게 물들고, 옛일을 본받으려는 학사(學士)<sup>32</sup>의 유적으로 월송(越松)은 늘 푸르니, 이 동(洞)에 이르면 그러한 정취를 십분 더 하리라. 아, 뒷날 이곳에 오르는 자들도 이를 보고 느껴 흥취가 일어나리라. 광무(光武) 10년(1906) 병오(丙午)년 5월 모일에, 달효(達孝)의 오위장(五衛將) 손주형(孫周炯)이 찬하고, 황경운(黃京運)이 쓰고, 윤영선(尹永善)이 새겼다.

좌상 김도인, 전존위 김국범·김기한·김상진·박학진·최석구·안장용, 성공존위 손쾌윤, 시존위 손상섭 돈 10냥, 시동수 김상인, 시유사 손세윤, 전동수 안국현·한치홍·안두원·김기준·한정호·안덕순·이천수·한성주·박복철·이순원·최명기·김학이·김선이·황학이·윤국중·김준이, 성공 20동원 손쾌윤·김상인·김계중·안두원·김사용·손세윤·안천석·김학지·이순원·안장용·김기준·윤국중·안덕순·김유학·이석중·김학이·정후근·김상린·최성진, 별장무 김부철 끝.

31 김제(金濟): 김제(金濟)는 고려 말 충신으로 평해군수를 지냈는데, 고려가 망하자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면 지금의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동해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32 옛일을 본받으려는 학사(學士): 고려 말 평해군수 백암(白巖) 김제(金濟)를 가리킨다.

⑦ 「동사중수기」

「洞舍重修記」

洞舍之建, 未知創在何代, 而始爲洞事之會議, 兼備鬱島之待風. 以之而民出其力, 官助其費, 累廢累興多見, 前人之至惻亦多, 歷史之可考矣. 世之雲變, 待風之軒, 翻作築港之所, 徵求之瘼, 化爲振興之策. 可謂百度告新, 而但恨洞舍頽圯, 朝夕難保, 洞務無妥協之地, 前蹟無繼述之人. 洞中諸位還爲之懼, 齊聲合議, 隨力出資, 不匝月而舍役訖. 居然棟宇就完, 雲物改觀, 洞之人落其成而賀之. 余誘<sup>33</sup>于衆曰, “諸位之追先者而保舊跡, 可謂勤且美矣. 嗣後之來是舍者, 果能先公而後私, 每誦雨我之詩, 救難而規過, 不失藍田之約. 則舍之屹于海濱者, 不但濟事之有助, 亦可小補於敦風之道” 云耳. 是爲記.

檀紀四二七二年, 六月日. 孫啓守撰.

老尊位 安致順 金五圓, 金相連 金六圓, 安千石 金五圓, 安德淳 金七圓, 金相根 金五圓, 崔貴宗 金六圓, 全在福 金七圓, 尹元甲 金五圓.

幹事尊位 孫啓守 金五圓.

一區長 金明俊 金五圓.

二區長 韓大淑 金五圓.

時尊位 權凡伊 金五圓.

時洞首 韓大應 金五圓.

時有司 金相文 金五圓, 金成五 金五圓.

發記人 金相國 金二十二圓, 金德文 金二十一圓, 安萬守 金二十圓, 林劍同 二十圓.

財務員 安光用 金二十圓, 箕城釀造會社支店代 安世源 金十五圓, 金千慮 金五圓, 李順汝 金五圓.

同意員 吳石淵 金十二圓, 金宗石 金十圓, 金德基 金十圓, 安厚奉 金十圓,

33 誘: 誘 자인지 불명확함.

安海東 金十圓, 安徳周 金十圓, 黃奉述 金十圓, 安日周 金十圓, 金士文 金八圓, 朴碩伊 金八圓, 黃云伊 金七圓, 金在守 金七圓, 安景守 金七圓, 金方佑 金七圓, 安景周 金七圓, 金同吉 金六圓, 金實光 金六圓, 尹相甲 金六圓, 崔光伊 金六圓, 黃奉彦 金六圓, 權銀宗 金六圓, 崔凡用 金六圓, 林允八 金六圓, 李京玉 金五圓, 崔萬基 金五圓, 金明現 金五圓, 安景順 金五圓, 金辰伊 金五圓, 金徳根 金五圓, 安永祚 金五圓, 表山 權相述 金五圓, 林達英 金五圓, 金七星 金五圓, 姜邦奎 金五圓, 金有東 金五圓, 金富貴 金五圓, 宋學述 金五圓, 方在國 金五圓, 金千守 金五圓, 崔道治 金五圓, 孫邦守 金五圓, 全用伊 金五圓, 韓大奉 金五圓, 河黃道 金五圓, 金用國 金五圓, 安聖辰 金五圓, 孫錫守 金五圓, 金益賢 金五圓, 金啓潤 金五圓, 金芑守 金五圓, 金江山 金五圓, 金仁得 金五圓, 安徳辰 金五圓, 月松 金海石 金五圓, 金聖泰 金五圓, 李徳周 金五圓.

總代 林章守.

#### 「동사중수기」

동사(洞舍)의 건립이 어느 시대에 창건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동(洞)의 일을 모여서 논의하기 위함이었다고 울릉도 수토(搜討)를 위해 바람을 기다리는 일도 아울러 대비하였다. 이에 동민(洞民)들은 부역을 하고 관(官)에 서는 그 비용을 보조하였는데, 누차 허물어지고 누차 다시 세워지는 것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 선인들이 기울인 지극한 노고도 또한 많았음을 역사에서 상고할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서 대풍헌(待風軒)은 항구를 건설하는 장소로 변하고, 부세를 강요하던 폐단은 진흥(振興)을 꾀하는 계책으로 바뀌었다. 온갖 법도가 새로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한탄스러운 것은 동사(洞舍)가 무너져 아침 저녁을 보장하기 어렵고 동(洞)은 협의해 볼 처지가 되지 못하여 전인들의 업적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동(洞)의 제위(諸位)가 다시 이를 걱정하여 한 목소리로 합의하고 힘닿는 대로 재물을 내니,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사(洞舍)를 중수하는 일이 끝났다. 어

느새 건물이 완공되어 동사(洞舍)의 경관이 새로워지니 동민(洞民)들이 낙성식(落成式)을 하며 축하하였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선조를 추모하여 옛 유적을 보전하였으니 가히 근면하고 아름답다고 할 만합니다. 이후에 이 동사(洞舍)에 오는 자가 공적인 일을 앞세우고 먼저 하고 사사로움을 뒤로 하여 매번 ‘우리 공전(公田)에 비가 내린다’<sup>34</sup>는 시를 외우고, 어려움을 구제하고 과실을 규찰하여 남전향약(藍田鄉約)<sup>35</sup>의 제도를 잃지 않는다면 바닷가에 우뚝 솟은 동사(洞舍)는 세상일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풍속을 돈후(敦厚)케 하는 도(道)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기문을 짓는다.

단기(檀紀) 4272년(1939) 6월 모일에 손계수가 짓다.

노준위 안치순 금5원, 김상련 금6원, 안천석 금5원, 안덕순 금7원, 김상근 금5원, 최귀중 금6원, 전재복 금7원, 윤원갑 금5원.

간사준위 손계수 금5원.

일구장 김명준 금5원.

이구장 한대숙 금5원.

시존위 권범이 금5원.

시동수 한대응 금5원.

시유사 김상문 금5원, 김성오 금5원.

밭기인 김상국 금22원, 김덕문 금21원, 안만수 금20원, 임검동 20원.

재무원 안광용 20원, 기성양조회사지점대 안세원 15원, 김천려 금5원, 이순여 금5원.

동의원 오석연 금12원, 김종석 금10원, 김덕기 금10원, 안후봉 금10원, 안

34 우리 공전(公田)에 비가 내린다. 『시경』 「소아대전(小雅·大田)」에 “우리 공전(公田)에 비가 내리고, 마침내 내 사전(私田)에 미친다.(雨我公田, 遂及我私)”라는 구절이 있다.

35 남전향약(藍田鄉約): 중국 송(宋)나라 때 남전(藍田)에 살던 여대림(呂大臨) 형제가 만들어 고을 사람들과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 규범이다. “덕업을 서로 권하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타이르며, 예속으로 서로 사귀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라는 네 조항으로 되어 있다.

해동 금10원, 안덕주 금10원, 황봉술 금10원, 안일주 금10원, 김사문 금8원, 박석이 금8원, 황윤이 금7원, 김재수 금7원, 안경수 금7원, 김방우 금7원, 안경주 금7원, 김동길 금6원, 김실광 금6원, 윤상갑 금6원, 최광이 금6원, 황봉언 금6원, 권은중 금6원, 최범용 금6원, 임윤팔 금6원, 이경옥 금5원, 최만기 금5원, 김명현 금5원, 안경순 금5원, 김진이 금5원, 김덕근 금5원, 안영조 금5원, 표산 권상술 금5원, 임달영 금5원, 김철성 금5원, 강방규 금5원, 김유동 금5원, 김부귀 금5원, 송학술 금5원, 방재국 금5원, 김천수 금5원, 최도치 금5원, 손방수 금5원, 전용이 금5원, 한대봉 금5원, 하황도 금5원, 김용국 금5원, 안성진 금5원, 손석수 금5원, 김익현 금5원, 김계운 금5원, 김돌수 금5원, 김강산 금5원, 김인득 금5원, 안덕진 금5원, 월송 김해석 금5원, 김성태 금5원, 이덕주 금5원.  
총대 임장수.

⑧ 「성황당중수기」

「城隍堂重修記」

粵者五百年間, 風磨雨洗, 故右記洞員, 同心協力, 修築而揭板, 永世不忘云爾.

記.

老尊位 孫啓守·安景守·安聖根·金成五·安萬守·朴大一·金順業·林釗同·金相國

洞長 金萬得

時尊位 韓大奉

洞首 朴日奉

有司 韓億祚·李洪植

發記人 木首 李汝善·李錫復·安守允·孫應元

贊助者 箕城漁業組合 壹萬五阡圓, 箕城里 五阡圓, 望洋一區 五阡圓, 望洋二區 五阡圓, 沙洞三區 五阡圓, 沙洞二區 三阡圓, 烽山一區 三阡圓, 烽

山二區 五阡圓, 烽山老班 壹阡圓, 錦江里 貳阡圓, 峯山三光會社 五阡圓,  
崔末出 壹阡五百圓, 康珠峯 壹阡五百圓, 黃水龍 壹阡五百圓, 安守允 壹  
阡五百圓, 李鎔復 壹阡五百圓, 安昌錫 壹阡五百圓, 金沙谷 壹阡五百圓,  
邱山國民校 壹阡圓, 權達順 壹阡圓, 金泰岩 壹阡圓, 李相奉 壹阡圓, 孫應  
容 壹阡圓, 姜聖中 壹阡圓, 黃得善 壹阡圓

拋樑東, 天高地厚兮, 五百萬年瑞日紅.  
拋樑西, 村落廣大兮, 冠童摠讀五車書.  
拋樑南, 風清日暖兮, 三月東風鶯子喃.  
拋樑北, 千秋萬代兮, 萬國祝賀大韓國.  
檀紀四二九二年己亥三月二十九日, 孫應元撰.

「성황당중수기」

아, 지난 500년 동안 비바람에 마모되고 썩기었다. 그래서 다음에 기록한  
동원(洞員)들이 합심하여 협력하고 수축(修築)하여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뜻  
을 현판에 건다.

기록.

노준위 손계수·안경수·안성근·김성오·안만수·박대일·김순업·임교  
동·김상국, 동장 김만득, 시준위 한 대봉, 동수 박일봉, 유사 한역조·이흥  
식, 발기인 목수 이여선·이석복·안수윤·손응원.

찬조자 기성어업조합 1만 5천 원·기성리 5천 원·망양1구 5천 원·망양2  
구 5천 원·사동3구 5천 원·사동2구 3천 원·봉산1구 3천 원·봉산2구 5천  
원·봉산노반 1천 원·금강리 2천 원·봉산삼광회사 5천 원·최말출 1천5백  
원·강주봉 1천5백 원·황수용 1천5백 원·안수윤 1천5백 원·이용복 1천5  
백 원·안창석 1천5백 원·김사곡 1천5백 원·구산국민교 1천 원·권달순 1  
천 원·김태암 1천 원·이상봉 1천 원·손응용 1천 원·강성중 1천 원·황득  
선 1천 원.

대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니,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운데, 오백만년의 상스러운 해가 붉네.

대들보 서쪽으로 던지니, 촌락은 넓고 큰데, 학동들 모두 다 다섯 수레의 책을 읽네.

대들보 남쪽으로 던지니, 바람은 시원하고 햇볕은 따뜻한데, 3월의 동풍(東風)에 피꼬리가 지지귀네.

대들보 북쪽으로 던지니, 천추만대(千秋萬代)토록, 만국(萬國)이 대한민국을 축하하리.

단기(檀紀) 4292년(1959) 기해(己亥)년 3월 29일에, 손응원(孫應元)이 짓다.

⑨ 「사자당중수기」

「使者堂重修記」

天作名區, 地得形勝, 平浦海西, 邱美山東. 五百年前, 曾築城隍, 首府巋然, 使者盡從, 神人俱歡, 洞安家慶, 財少誠薄, 未備使堂, 晝宵憂懼, 寤寐不忘. 歲維戊申, 乃謨構成, 新舊并赫, 禋祀精靈. 惟茲民庶, 歲再齊誠, 感應之修, 造化之功, 求福方至, 所願直亨. 廡盛牝牡, 野去災快, 海產驅舟, 莫□<sup>36</sup>風浪, 宜家宜室, 老幼新禎.

人賴洞神, 神賴洞氓, 萬事符合, 豈無相應. 金石同堅, 日月如明, 備人五福, 應天三光. 堂宇翼然, 勝狀佳濃, 金波橫帶, 瑤岑環拱. 西負錦江, 南望月松, 留神所居, 萬歲是寧.

老尊位 安聖根·安景守·安萬守·金順業·林釗同·黃奉述·韓大奉·朴日本·金邦佑·鄭在銀·安守萬·金丕守·全用國·金千石

時尊位 金永述

洞首 □□□<sup>37</sup>

36 □: 여기에 한 자가 누락된 듯함.

37 □□□: 현판에서 이름이 도삭(刀削)되었다.

有司 崔奉述·安翊道

洞長 金萬得

有志 安守允·尹柱錫

西紀一九六八年戊申陽月晦日, 平海黃德基謹記.

### 「사자당중수기」

하늘이 빼어난 구역[名區]을 만들고 땅이 명승지(名勝地)를 갖추니, 평해(平海) 포구는 바다 서쪽에 있고 구미(邱美)<sup>38</sup>는 산의 동쪽에 있다. 5백 년 전에 일찍이 성황(城隍)을 쌓고 관아가 우뚝 서니 사자(使者)가 어찌 뒤를 잊지 않았겠는가. 신령과 사람이 모두 기뻐하며 마을이 편안하고 집안이 경사스러웠다. 다만 재물이 적고 정성이 모자라 사자당(使者堂)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 밤낮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자나 깨나 잊지 못했다.

무신(戊申, 1968)년에 마침내 사자당을 중수(重修)할 계획을 세우니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빛나고 정령(精靈)이 이름답게 여기리라. 이에 동민(洞民)들은 해마다 두 번 씩 일제히 정성을 바치니 신명이 감응하고 조화의 공을 부려 구한 복이 곧장 이르고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리라. 마구간에는 암수의 가죽이 번성하고 들에는 재앙이 사라지며, 해산물을 쫓아 배를 타고 나서면 풍랑을 만나지 않고 집안은 화목하며 노인과 아이도 새롭고 무탈하리라.

사람은 동(洞)의 신령에게 의지하고 신령은 동(洞)의 백성에게 의지하니, 만사가 부합하여 어찌 상응함이 없으리오. 쇠나 돌과 같이 굳건하고 해와 달 처럼 밝으며, 사람에게겐 오복(五福)이 갖추어 지고 하늘에는 삼광(三光)<sup>39</sup>이 호응하다. 사자당이 날 듯하니 그 빼어난 형상은 매우 아름다우며, 달빛이 횡으로 비치고 아름다운 산우리가 두르고 있다. 서쪽으로는 금강(鎭江)을 등지고 남으로는 월송정(月松亭)을 바라보니, 거처하는 곳에 마음을 두고 만세

38 구미(邱美): 구산(邱山)의 다른 이름.

39 삼광(三光): 해, 달, 별을 말한다. 삼신(三辰)이라고도 한다.

토록 평안하리라.

노준위 안성근·안경수·안만수·김순업·임교동·황봉술·한대봉·박일  
본·김방우·정재은·안수만·김돌수·전용국·김천석, 시존위 김영술, 동수  
(번찬), 유사 최봉술·안익도, 동장 김만득, 유지 안수윤·윤주석.

서기 1968년 무신년 양월(陽月 10월) 그믐에, 평해의 황덕기가 삼가 적다.

### ⑩ 「동사중수고사신축기」

#### 「洞舍重修故舍新築記」

右重修新築, 則本年度新任員等, 以任期內完工, 及部落橋樑建設, 各種施  
設, 於勞苦矣. 萬丈一就成功中, 部落民結議於揭示永世不忘之文也.

西紀一九七二年九月日

前尊位 安景守·安萬守·黃奉述·韓大奉·朴日奉·金方佑·鄭在銀·安守  
萬·金永述·金玃守·全用國·金千石·金太祚·韓億祚

時尊位 崔順根

時洞首 李洪植

時有司 金斗星·金正出

洞長 安永岩

漁村契長 全完道

總代 鄭道永

#### 「동사중수고사신축기」

동사(洞舍)를 중수(重修)하고 고사(故舍)를 신축(新築)한 일은 올해 새로운 임원  
들이 임기 내에 완공하였고, 부락(部落)의 교량을 건설하면서 각종 조치를

취하느라 노고를 겪었다. 여러 공역을 한 번에 마쳤기에 부락민들이 영원  
토록 잊지 않는 글을 게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서기 1972년 9월 모일.

전준위 안경수·안만수·황봉술·한대봉·박일봉·김방우·정재은·안수  
만·김영술·김돌수·전용국·김천석·김태조·한억조, 시존위 최순근, 시동  
수 이홍식, 시유사 김두성·김정출, 동장 안영암, 어촌계장 전완도, 총대 정  
도영.

⑩ 「대풍헌및성황당중건기」

「待風軒및城隍堂重建記」

이곳 邱山은 岬岬峯내린 山발 바다 위에 뜬 거북이 모양의 浦口. 唐나라  
丘大林將軍의 定着으로 命名된 마을이다.

鬱陵島 搜討에 順風을 기다리던 待風所의 歷史와 東海에 몸을 던져 忠節  
을 지킨 高麗忠臣 白巖金濟先生의 일을 간직한 由緒깊은 고장이다.

이러한 歷史의 背景위에 綿綿히 이어온 自主·自立·協同의 傳統은 오늘  
도 老人을 軸으로 邱山을 支撐하고 있다.

邱山의 象徵 待風軒과 城隍堂이 頹落하여 비가 드셀새 住民의 誠金으로  
檀紀四三二三年 庚午에 改瓦하고 아울러 城隍堂 進入路를 鋪裝하였기에  
이에 그 顛末을 簡略히 記錄하노라.

檀紀四三二四年 辛未 九月 日

蔚珍文化院長 南宗淳 記

誠金錄

- 老尊位                    一里長
- 金千石金二萬圓 李鎮佑金二萬圓
- 尊位                      二里長
- 金大億金二萬圓 金永善金二萬圓

安道根 〃 二萬원 時尊位  
 安守允 〃 二萬원 安秉權金二萬원  
 李洪植 〃 二萬원 時洞首  
 韓億琪 〃 二萬원 金八龍金二萬원  
 尹令述 〃 二萬원 金應石 〃 五萬원  
 安永俊 〃 二萬원 時有司  
 李相宗 〃 二萬원 金繁益金二萬원  
 尹柱錫 〃 二萬원 金炳奎 〃 二萬원  
 李奉植 〃 二萬원 法人漁村契長  
 金祚項 〃 二萬원 林邦甲金五萬원  
 孫良手 〃 二萬원 地域漁村契長  
 金萬得 〃 二萬원 安億權金五萬원  
 孫商敏 〃 二萬원 金龍雲 〃 百三十萬원  
 李福伊 〃 二萬원 安斗星金一百萬원  
 金鍾旭 〃 二萬원 安成俊 〃 五萬원  
 安翊權 〃 二萬원 孫晋斗 〃 五萬원  
 林相龍 〃 二萬원 金萬哲 〃 五萬원  
 同助員 白雲鍾 〃 五萬원  
 鄭永植 〃 五萬원 尹得文 〃 五十五萬원  
 車壽文 〃 五萬원 安鏞大 〃 二十五萬원

檀紀四三二四年辛未十月十五日

「대풍헌및성황당중건기」

이곳 구산(邱山)은 굴미봉(巒尾峯) 내린 산 발 바다 위에 뜬 거북이 모양의 포구. 당(唐)나라 구대림(丘大林) 장군(將軍)의 정착으로 명명(命名)된 마을이다. 울릉도(鬱陵島) 수토(搜討)에 순풍(順風)을 기다리던 대풍소(待風所)의 역사와 동해에 몸을 던져 충절을 지킨 고려충신 백암(白巖) 김제(金濟) 선생의 얼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이다.<sup>40</sup> 이러한 역사의 배경 위에 면면히 이어온 자주·자립·협동의 전통은 오늘도 노인(老人)을 축으로 구산을 지탱하고 있다. 구산의 상징 대풍헌(待風軒)과 성황당(城隍堂)이 퇴락하여 비가 드셀 새 주민의 성금으로 단기(檀紀) 4323년(1990) 경오에 개와(改瓦)하고 아울러 성황당 진입로를 포장하였기에 이에 그 진말을 간략히 기록하노라.

단기(檀紀) 4324년(1991) 신미(辛未) 9월 일.

울진문화원장 남종순 지음.

#### 성금록

노준위 김천석 금2만 원,

준위 김대익 금2만 원 · 안도근 금2만 원 · 안수윤 금2만 원 · 이홍식 금2만 원 · 한억기 금2만 원 · 윤영술 금2만 원 · 안영준 금2만 원 · 이상중 금2만 원 · 윤주석 금2만 원 · 이봉식 금2만 원 · 김조항 금2만 원 · 손량수 금2만 원 · 김만득 금2만 원 · 손상민 금2만 원 · 이복이 금2만 원 · 김종욱 금2만 원 · 안익권 금2만 원 · 임상용 금2만 원,

동조원 정영식 금5만 원 · 차수문 금5만 원, 1리장 이진우 금2만 원, 2리장 김영선 금2만 원, 시촌위 안병권 금2만 원, 시동수 김팔용 금2만 원 · 김용석 금5만 원, 시유사 김번익 금2만 원 · 김병규 금2만 원, 법인어촌계장 임방갑 금5만 원, 지역어촌계장 안익권 금5만 원 · 김용운 금130만 원 · 안두성 금1백만 원 · 안성준 금5만 원 · 손진두 금5만 원 · 김만철 금5만 원 · 백운중 금5만 원 · 윤득문 금5만 원 · 안용대 금25만 원.

단기(檀紀) 4324년(1991) 신미(辛未) 10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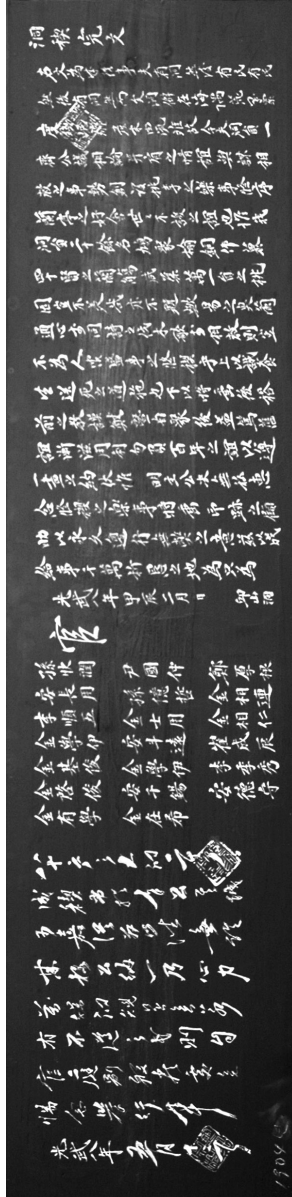
40 동해에~고장이다: 김제(金濟)는 고려 말 충신으로 평해군수를 지냈는데, 고려가 망하자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지극의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동해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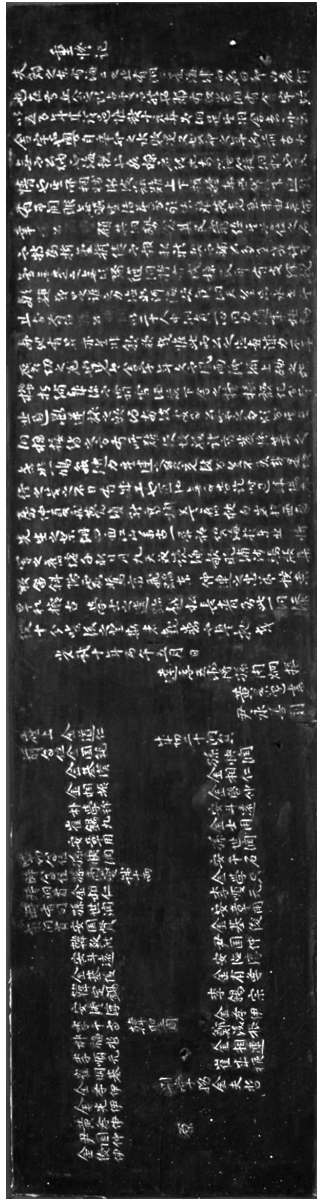
④ 「구산동사기」

卯山洞舍記  
 余嘗觀與龍巖善將浮澤泰辰子汎  
 而因名卯山洞年久歷十聖君不一年有  
 解彼之矣而通則 毛賢舍防勳澤不  
 復從安嶺嘗看深瀾之祭馬者顯若角人  
 於眼之功如看處殺劍踏踏得貴微若人  
 豈如是盡心排辭式大抵尊聖 國事探  
 討後眼一除人有雜雜塌塌及後王官  
 安民於子未易之勇有力必有記安宅舍  
 舍願形不有已功歸之常例則洞之老少  
 不可有功無記無功同壽時得極  
 便後動則要舍祝功第一不以材世賢者  
 乃是有併同井之故也不已愚拙記以  
 壽其得為  
 著雜回款雜及上院敬人壽瑞珠乳  
 曾經尊位  
 安義寬  
 舍有三  
 舍密潤  
 非致德  
 安空套 公私雜復讀  
 舍願形  
 曾經洞長  
 舍得士  
 村用宅  
 韓得白  
 舍成紫  
 安通尚  
 李于宅  
 時任尊位  
 安空套  
 洞長 官洞長  
 安通尚 舍紫重  
 有司 里正  
 舍處節 舍安紫  
 都學務 監考  
 舍孝得 李昌福  
 舍海孫

⑤ 「동계 완문」



⑥ 「중수기」







⑨ 「사자당중수기」

使者唐書參記  
 天作名區地得形勝平流海外美山東五百年  
 前曾築城樓自有歸來使者蓋從得人俱歛  
 固安家慶時少誠傳未備使唐書有慶圖瑞  
 靈不心歸維中乃謀構政祈禱升祀禱醮精  
 靈惟茲民庶咸齊可誠感應修造化之功求福  
 乃至所願皇宇騰盛北壯野去史秩溢靈舟莫  
 風浪宜歛靈室若勿新被入朝洞冲 神暢廟爲  
 事符合靈無相應念合同暨日月如明備人百禮應天  
 元光臨宇翼然勝狀佳景余披橫帶瑤太環巴  
 負錦江南切月松留神所居萬歲皇寧

省尊位 安聖張  
 安景宇  
 安萬守  
 金順業  
 林到回  
 寧奉述  
 韓太奉  
 朴日本  
 金邦佑  
 鄭在錄  
 安守萬  
 金尾守  
 金角國  
 金于石  
 金永述

時尊位 金永述

洞首 崔奉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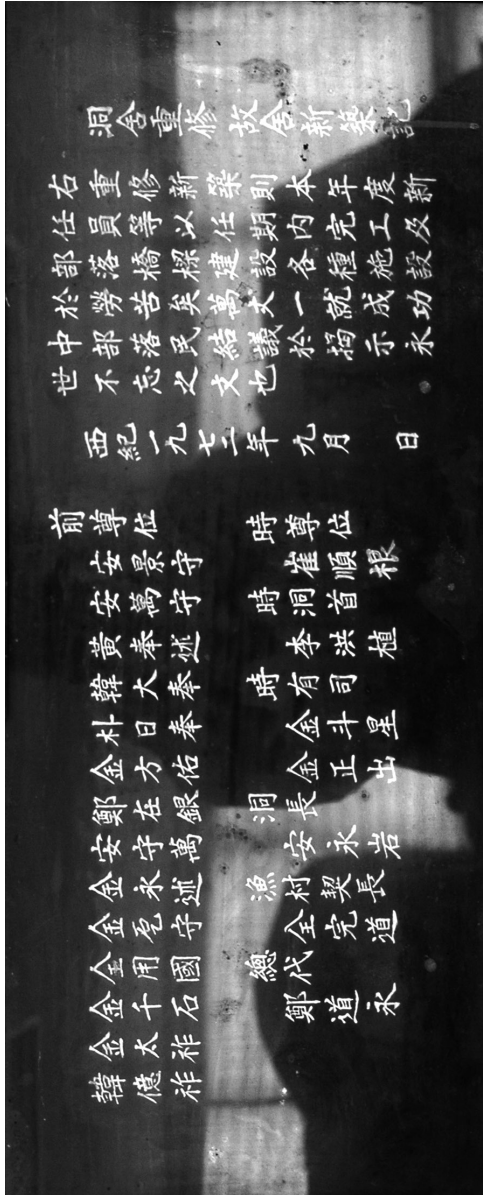
有司 安翺週

洞長 金萬得

有志 安守凡  
 尹桂錫

西紀九六年序陽月晦日  
 平邊實德本記

⑩ 「동사중수고사신축기」





# 김필규 교수의 『국제법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운명

살다보면 운명처럼 다가오는 일이 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세월이 지나도 그 일을 마무리하지 않는 한 그 일을 마음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

김필규 교수의 저서에 대한 서평 쓰기가 내게는 꼭 그와 같았다. 김필규 교수의 영어 저서 *Claims to Territory between Japan and Korea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sup>1</sup>은 이미 2014년 3월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그해 4월과 10월 미국과 한국에서 출판기념회가 각각 열렸다.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그즈음 이 책의 서평은 ‘내가 써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 마음뿐 차일피일 시간만 보냈다. 그러던 중 2015년 한동대학교 이희은 교수가 쓴 서평이 영어 저널에 실렸다.<sup>2</sup> 김필규 교수의 노력(勞作)을 기릴 수 있는 서평이 늦지 않게 나와 감사했다. 하지만 책이 영어

1 Pilkyu Kim, 2014, *Claims to Territory between Japan and Korea in International Law*, Bloomington: Xlibris.

2 Hee Eun Lee, 2015, “Book Review: Pilkyu Kim, *Claims to Territory between Japan and Korea in International Law*, Bloomington: Xlibris(201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3, No. 1, pp. 107~111.

로 저술된 만큼 영어 서평이 당연하겠지만 이 책을 한국어 독자들에게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했다.

김필규 교수는 2008년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연구소를 설치할 때 해외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그분을 뵈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가 독도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내게 독도에 관한 자료를 부탁한 적도 있다. 그 내용은 울릉도에 있는 학교나 가게 또는 시설 중에서 ‘우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어떤 내용의 책일까 궁금했다.

다만, 그 요청은 울릉도나 독도가 예전에 우산국 또는 우산도라고 불렀는데, 그 역사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 물론 울릉도에는 우산중학교, 우산버스, 우산다방, 우산가스, 우산관광 등 ‘우산’이라는 이름을 쓰는 학교나 업체 등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그 자료가 책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우산(于山)’이라는 이름하에서 하나의 단위(unity)로 다루어졌다고 하는 저자의 인식 한 켠에서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 2. 책의 몇 가지 특징

이 책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이 책은 영어로 출판되었다. 한국의 각 기관·단체에서는 이전부터 독도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해외 확산을 위해 영어 출판을 목표로 해왔다. 그런데 직접 영어로 저술한 독도 관련 단행본은 거의 없고,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 번역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이 책은 미국 현지에서 영어로 출판된 최초의 독도에 관한 단독

3 독도와 관련된 최근의 번역서로는 다음의 책들이 있다. Kim, Young Koo, 2003, *A Pursuit of Truth in the Dokdo Island Issue: Letters to a Young Japanese Man*, Seoul: Bub Young Sa; M, Marek and S.,J, Choi (ed.), 2006, *A Fresh Look at the Dokdo Issue: Japanese Scholars Review Historical Facts*, Seoul: Dadamedia; Kim Byungryull, 2008, *The History of Imperial Japan's Seizure of Dokdo*, Seou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Korea Herald & Park Hyun-jin, 2009, *Insight into Dokdo*:

저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더구나 이 책의 저자는 대학까지 한국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지만 32년간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재직한 미국 시민권자다.

둘째, 오랜 기간 이루어진 독도 연구의 성과를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오래전부터 독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다. 그는 1976년 “The Korean-Japanese Dispute over Dokdo Island: An Inquiry into the Legal Aspects(한일 간 독도 문제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 바가 있다. 저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과정에서 독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2005년 경상북도 독도자문위원과 2008년 독도연구소 개소 이후에는 독도연구소 해외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7일에는 미국의 워싱턴DC에서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독도 관련 국제 심포지움(International Dokdo Symposium)을 개최한 바도 있다.

이러한 이력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에서 이 책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서문을 쓴 그레고리 본 레멘(Gregory von Lehmen) 전 메릴랜드대학(UMUC) 부총장은 ‘김 교수가 한국 태생이라서 이 책이 한국에 편협되게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독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균형 잡힌 설명이라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그가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30년 이상 미국의 대학에서 국제법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역사와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었음’을 높이 사고 있다.

*Historical,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on Korea's Sovereignty*, Seoul: Jimoondang; Park Byoung-sup and Naito Seichu, 2009, *The Dokdo/Takeshima Controversy: Study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2016, *Historical Geographical and Legal Analyses on Dokdo*, Seou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ong Byeong-kie, 2010, *Historical Verification of Korea's Sovereignty over Ulleungdo and Dokdo*,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Li Jin-mieung, 2010, *Dokdo: A Korean Island Rediscovered*, Seou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셋째는, 독도의 지리, 역사 등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압축적으로 잘 정리하였다. 지리나 역사를 법과 분리하여 다루지 않고, 독도의 지리와 역사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적 논의에 있어서는 다양한 국제판례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한일 양국의 독도에 관한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목차와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144쪽의 분량에서 독도의 지리, 역사, 국제법적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어, 영어, 일어에도 능통하여 한국의 문헌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영어 문헌을 참고하여 주장의 논거를 세세히 밝히고 있다.

넷째, 이 책은 저자의 사후에 출판되었고, 책의 내용도 두 사람이 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책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4장까지는 김필규 교수가 집필하였고,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은 김 교수의 딸인 김바니(Bonnie Sue Kim) 박사가 집필하였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는 김바니 박사가 제5장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2010년 12월 2일 김필규 교수가 소천하였는데, 그 전날 밤 김바니 박사는 그의 부친에게 책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겠다고 눈물로 약속을 했다고 한다. 김바니 박사는 그 후 3년간 김필규 교수가 집필한 본문의 논지를 파악하고 내용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었다.

참고로 김바니 박사는 미국의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동아시아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김바니 박사가 김 교수의 논지를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서 그가 독도 등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떠한 역사적, 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 3. 책의 내용

이 책은 모두 5개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1장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문제의 발생과 경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독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포획 조치와 그 이후의 실효적 점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은 연합국들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sup>4</sup>에서 독도를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반세기 이상 한일 양국은 독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2) 제2장에서는 독도의 지리적 특징과 독도의 과거 현재의 가치에 대해 소개하였다.

독도는 울릉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울릉도에서 보이지만,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경제, 사회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져왔을 뿐만 아니라, 식물 생태계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독도는 토양층이 얇고 가팔라서 사람이 거주하기도 어렵고 접근조차 어려워서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로 남아 있었다. 자연히 독도에서의 어로활동 등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독도 자체의 열악한 지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가진 전략적, 경제적 가치는 크다. 과거 일본 해군은 독도에 망루를 세우는 등 러일전쟁에서 전략적 기지로 활용하였다. 또한 독도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에 위치하여 전통적으로 풍부한 어업자원을 갖고 있다. 더욱이 1982년 UN해양법협약 체결로 어업자원에 관한 독도의 가치가 높아졌으며,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해양자원의 매장 가능성도 언급되며 독도의 경제적 가치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자원 또는 지정학적 가치 이외에 독도 논쟁의 중심에는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독도의 상징적 가치도 있다.

(3) 제3장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독도의 역사와 관련하여 의미있게 보아야 할 것은 국제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은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한 형태인 발견(discovery)과 그 후 계속된 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와 관련된 역사가 될 것이다.

신라가 서기 512년 우산국을 정복하여 편입할 때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의 영지였다. 그 시기 어떤 다른 나라도 신라의 우산국 복속에 대해 경쟁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 신라의 계승자인 고려는 울릉도와 독도를 봉토(vassalage)로 계속 유지하였다. 그 이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두고 지역안보와 주민보호를 위한 정책(쇄환정책과 수도정책)을 시행하였다.

반면 일본 막부는 17세기 말 이후 울릉도 도해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1883년 주민 이주 및 1900년 행정체제 정비 등 울릉도 재개척을 적극 추진하였다. 하지만, 1904년 2월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며 한국을 강제 병합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요컨대 한국은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때까지 어떤 다른 나라의 경쟁적 주장도 받지 않고 독도를 계속적으로 실효적으로 점유해왔다.

(4) 제4장에서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영토주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은 당사국의 주장을 비교하여 누가 더 우월한 법적 권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그 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발견과 실효적 점유에 의한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의 확립이다.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법 중 독도와 관련하여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것은 발견(discovery)이다. 발견은 미완성의 권원(inchoate title)을 주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에 의해 완성된 권원을 확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효적 점유는 영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특히 독도와 같이 오랫동안 무인도로 존재한 섬의 경우,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원을 주장하지 않은 한 그 점유로 충분하다. 512년 한국이 독도를 발견할 때, 한국의 발견보다 더 우월한 권원을 주장한 나라가 없었다. 한국은 그 이후 1905년까지 독도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 의사 표시 없이 계속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해왔다.

둘째, 쇄환정책 기간 중 주권의 포기에 관한 문제다. 무인도의 경우, 주권의 표시는 자주 있을 필요는 없다. 주권의 포기는 포기 의사와 함께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처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포기한 바가 없다.

셋째,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다. 1905년 편입조치를 무주지 선점으로 보는 견해와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1905년 편입조치의 내용과 그 후속 행위를 보면, 1905년 조치는 무주지 선점에 입각한 영토취득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서기 512년 이후 1905년까지 독도를 어느 나라와도 다투지 않고 평화적으로 주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1905년 일본의 편입조치는 정당한 근거를 갖지 못하며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침략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 독도의 지위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효과다.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래서 조약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데, 조약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의 의도, 목적론적 관점, 문자적 해석에 근거해야 한다.

전후 연합국의 영토처리는 한국과 한국인을 일본의 노예상태에서 해방하고 독립시킨다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 연합국의 선언을 기초로 한다. 그러한 선언을 수용한 1945년 9월 2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선언에 의하여 한국은 법적, 사실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독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호 및 1033호 등 전후 연합국의 조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의 지위는 일본에서 분리된 채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본의 영토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도 카이로 선언과 이를 수용한 포츠담 선언 등 연합국의 의사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강화조약의 제3자로서 한국의 이익에 반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조약 해석 시 준비서면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을 해야 할 것이며, 러스크 서한(Dean Rusk's Letter)과 같이 단편적인 문건을 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러스크 서한은 한국전쟁과 공산국가들의 세력 확대에 따른 정치적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1954년 8월 26일 미국 정부 측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러스크 서한은 다수의 조약 당사국 중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며, 그것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속한다는 법적 결론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다.

요컨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사국의 진정한 의도를 고려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조약을 해석한다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견해를 바탕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

아울러, 반다이크(Van Dyke) 교수 등 서구 법률가들의 견해를 빌려, 한국이 오랜 기간 동안 독도에 대해 계속된 실효적 점유,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근접성, 과거 반세기 이상 계속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물리적 지배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주장이 법적, 역사적 측면에서 더 강력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 4. 글을 끝맺으며

저자는 이 책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국제법적 시각에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저

자의 논지 진행과 분석 방법에 100% 동의하며 이러한 접근 방법은 독도 연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역사와 국제법의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하게 되며, 특히 독도의 역사적 권원(historical title) 내지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된다.

저자는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한 형태인 ‘발견(discovery)’에서 독도의 본원적 권원을 찾고 있다. 그런데 왜 발견이 독도의 본원적 권원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고, 오랫동안 독도가 무인도로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에 의해 독도가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기초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독도의 본원적 권원을 ‘정복(conquest)’에서 찾고 있다. 즉 신라가 우산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때 발견이 아니라 정복으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할 당시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의 영지로서 정치적, 경제적 단일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복과 동시에 독도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발견에 의한 본원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보강이 필요한데, 그의 고견을 들을 수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런데 독도의 본원적 권원을 정복에서 찾는 데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우산국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고구려나 백제가 언제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신라가 두 나라를 정복했을 때’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산국도 고구려나 백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판도(版圖) 속에 넣어 본원적 권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초(超)기억적 권원(immemorial title)이라는 개념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좀 더 폭넓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각설하고, 논문이나 책을 출판하다보면 제1차 교정, 제2차 교정은 말할 것도 없이 책이 인쇄되기 직전까지 글을 수정, 보완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저자인 김필규 교수는 글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유명(幽明)을 달리하였다. 아

마 자신의 생(生)에 주어진 운명을 마주하면서 그때까지 써놓은 부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다보니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한국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하여, 1948년 독도 폭격사건에 관한 내용 등은 언급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미국 사회에서 제2, 제3의 김필규가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랠 뿐이다.

운명처럼 다가온 서평 쓰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일찍이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삶의 최후까지 독도를 놓지 않고 연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였을까를 생각해본다. 나는 그 단서를 이 책의 제5장 결론에서 그의 딸 김바니 박사가 쓴 글에서 찾아본다. “국제법에 따라 독도 논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김필규 교수는 자신이 평생을 연구해온 국제법이라는 학문을 통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의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전에 조용하고 은화했던 그를 떠올려보노라니 그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조선 선비들의 강인한 의지를 느끼게 된다.

# 영토·해양 일지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9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각국 항공기를 대상으로 네티즌과 함께 ‘동해’(East Sea)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발표. “항공기 운항정보 지도서 ‘일본해’ 발견하면 제보하세요”</li> <li>28일: 호사가 유지 세종대 교수, “일본 도발에 한국이 말려들고 있다” 레이더 공방, 초계기 논란 개별 대응 잘못 … 일본 의도 정확히 읽고 외교전략 세워야</li> <li>29일: 외교부, 주한 日총괄공사대리 초치… ‘독도 망언’ 항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일: 중국-베트남, 남중국해 행동 수칙을 두고 험난한 대화 예상</li> <li>16일: 일본 시마네현, 독도 관련 고문서 시마네현에 기증, 에도 시대 일본인의 바다사자 사냥 등 기술</li> <li>16일: 러시아,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화, 러시아 고위 외교관이 월요일 러·일 대화의 시작점으로서 일본이 북방영토(남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고 경고</li> <li>21일: 남북한과 일본, 동해 호칭 변경 관련해 비공식 협의, 국제수로기구(IHO)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가 2개국과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기로 결정</li> <li>25일: 일본 시마네현 여론조사, 독도 문제 ‘관심 있다’ 67%</li> <li>25일: 인도 해군, 중국에 맞서기 위해 전략지역 섬에 세 번째 기지 열어</li> <li>31일: 일본 외무성, 일본해 명칭, 바꿀 필요도 이유도 없어</li> </ul>

영토·해양 일지

2019년	국내	국외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일,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독도지킴이’ 김성도 씨의 뒤를 이은 ‘독도지킴이’가 4월 독도로 들어간다. 독도지킴이는 김성도 씨의 둘째 사위인 김경철(54) 씨</li> <li>• 19일: 동북아역사재단 『이방인이 바라본 우리 땅 독도』 출간. “일본 고지도에 독도 거리선 없다…한국 영토 근거”</li> <li>• 22일: 서경덕,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日 ‘망언 의원’에 편지</li> <li>• 24일: 서울·부산서 울릉까지…‘죽도(竹島)의 날’ 제정 철회 한목소리</li> <li>• 25일: 자원 풍부한 ‘우리 땅’ 독도…“전용 조사선은 없어”</li> <li>• 27일: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 뼈에서 유전자 정보 첫 확인</li> <li>• 28일: 동해시 3·1운동 기념식에서 ‘동해 표기 운동’ 선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일본,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 “평화조약 협상 대상은 쿠릴 4개 섬”</li> <li>• 7일, 일, ‘일본해’ 표기, 부당한 주장을 봉쇄하는 전략 강화 필요</li> <li>• 11일, 중국어선, 일본 EEZ 내 진입으로 인해 선장 구류</li> <li>• 11일, 北통신, 日외무상 ‘독도 망언’ 비난… “우리 민족에 대한 도전”</li> <li>• 18일: 미 군함 난사군도 해역 진입, 중국 외교부 입장 발표. 중국 측은 ‘미군함의 유관행위는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유관해역의 평화, 안보, 양호한 질서를 깨뜨렸다’고 논평</li> <li>• 20일: 일본, 한국 당국은 몇 년 전, 독도의 영해와 접속 수역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채굴을 하는 등 해저에서 조사 활동을 했다고 논평</li> <li>• 22일: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등은 20일 열린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독도의 영해에 침입한 데 대해 “영해 침입은 일본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비난 결의문을 발표</li> <li>• 25일: 일본, ‘죽도의 날’, 충실한 영토 교육이 필요하다. 시마네현 등이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마쓰에시에서 개최. 안도 히로시[安藤裕] 내각부 정무관은 행사에서 “독도 문제의 해결은 주권에 관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li> <li>• 25일: 중국, 한국이 일본과 다투는 사이, ‘독도 도발’ 비형</li> </ul>

2019년	국내	국외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일: 해경청, 울릉도에 독도 수호 전진기지 구축. 내년 사동항에 해경 전용부두 ... 3000톤급 대형 함정도 배치</li> <li>• 7일: 해수부 업무보고, '해양영토+남북경협'...해양강국 위상 강화</li> <li>• 8일: 해수부, 독도와 울릉도는 모자관계?, 해수부, 60억 들여 첫 해저탐사 나선다</li> <li>• 9일: 독도주민 2세대, '다툼' 언제까지 지켜 봐야 하나</li> <li>• 15일: 해양수산개발원, '독도사전' 개정증보판 발간 심포지엄 개최</li> <li>• 26일: 정부, "독도는 일본 땅" 초등생 교과서 철회하리"...주한대사 초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 일본, “중해경선 4척, 센카쿠 일본 영해 침범...올 들어 7번째”</li> <li>• 5일: 미국,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지원 약속.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상황 발생 시 필리핀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 가능</li> <li>• 7일: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의 신도 요시타카[新藤 義孝] 회장(자민당)은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게서 5일, 우편으로 독도에 관한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음. 서한에는 “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지에 관해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 참고가 됐으면 한다”는 내용의 일본어판 자료 포함</li> <li>• 9일: 일본,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이 보관하고 있던 1856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의 복제본을 독일 정부에 기증. 이 지도에는 독일어로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이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li> <li>• 27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관방장관은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독도 주변 일본 영해에서의 해양조사를 전제로 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의 입찰 공표는 일본의 입장에서 비춰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외교 루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언급</li> </ul>

영토·해양 일지

2019년	국내	국외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일: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관방장관은 27일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반발에 관해 "일본의 입장에 따라 제대로 반론했다"라며, "이번 검정도 교과서검정심사회의 전문적, 학술적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검정된 결과다"라고 언급</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일: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독도 포함 안 돼 논란</li> <li>• 8일: 울릉군, 독도 홍보사진 전시회 개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li> <li>• 12일: '동해-조선동해-일본해'...남한·북한·日 동해 표기 '입장차'</li> <li>• 17일: 반크 "日 독도 왜곡·역지, 영상 홍보로 맞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 일본, 우익 의원 모임, 한국 의원들에 '독도 논의' 제안</li> <li>• 3일: 필리핀, 대통령실 대변인 살바도르 파넬로(Salvador Panelo)는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필리핀 외교부는 필리핀이 관할하는 티투(Thitu) 섬 부근을 향해 중국 선박에 대해 항의했다고 논평</li> <li>• 8일: 러시아, 일본 문부과학성의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 북방영토와 독도,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된 데 대해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4일, "어처구니없다"라고 논평</li> <li>• 15일: 미국, 싱크탱크인 CSIS의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AMTI) 보고서는 베트남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시설들을 조용히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히면서, 점진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li> <li>• 19일: 대만, 중국인민해방군동부작전구가 해군 및 공군이 출동하여 타이완 도서를 순항하며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타이완의 민진당정부당국이 비난</li> </ul>

2019년	국내	국외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일: 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외교청서 내용 항의”</li> <li>• 23일: 경북도·의회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9일: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도쿄 히비야공원)이 연초에 도라노몬 지구로 이전할 예정</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정부, 유엔 전문가그룹 회의서 ‘동해 표기’ 정당성 역설</li> <li>• 11일: 신승고등학교, 고교생 독도 안내 전문가 ‘독도 도슨트’ 발대식</li> <li>• 15일: 경북도, 내년 ‘동해 인문학센터’ 주춧돌 놓을 계획</li> <li>• 16일: 대구환경청, 6~7월에 울릉도·독도서 생태계·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 일본, 2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유엔 지명 전문가 그룹 회합 개최. 한국 대표는 일본해 호칭 문제가 논의된 국제 세미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 일본해가 동해와 병기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이 자료에서 “2국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다”라고 반론</li> <li>• 9일: 미국, 미군 측은 미 해군 함선 두 척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부근을 항해하였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해, 경슈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해역에 허가 없이 들어갔고 중국 해군은 미군에게 해당 수역에서 떠나라고 경고했다고 논평. 중국은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언급. 미군은 남중국해 항해는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지 않은 전 세계적인 작전 수행이라는 입장을 고수</li> <li>• 14일: 일본, 의원 “전쟁해서라도 북방영토 되찾아야” 망언...러시아 반발</li> <li>• 15일: 일본, 미야코시 영토담당상 한국 독도 조사 계획,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li> </ul>

## 영토·해양 일지

2019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독도 주변 해역 퇴적토에 사는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신물질 3종을 발견했다고 발표</li> </ul>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규정 및 규칙

나

- 편집위원회 규정
- 발행 및 심사 규칙
- 투고 요령
- 연구윤리규정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 [ 편집위원회 규정 ]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개정 2018.04.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하고 의결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발행 및 심사 규칙 ]

제정 2011.06.30.

개정 2017.10.25.

### 제1장 발행규칙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제2장 심사규칙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 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A	B	C
수정 후 재심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두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 투고 요령 )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 제1조(투고 규정 일반)

-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자는 투고원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온라인 제출 시스템(<https://nahfjams.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당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 제2조(원고 작성 요령)

-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 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각주에서 현대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복,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鶴擁, 是人也.”

7. 서양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색일: 2014.12.17).

###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

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독도 · 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쥘),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 · 일본 · 중국어 · 한문인 경우는 이중꺾쇠(『 』)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 허생 ·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

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문헌의 경우, (전체 추가) 동양 고전의 참고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 {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 제1조(목적)

1. 본 연구윤리규정은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 제2조(연구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행위의 기준)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절적행위”(이하 “부절적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복게재”라 함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거나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이하 “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2. 『영토해양연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제4조(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제재)

1.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는 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규칙에 의거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표절에 대한 제재
  - 1)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영토해양연구』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2)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3)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추후 발간되는 『영토해양연구』 부록에 공지한다.
3.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1)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영토해양연구』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2)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3)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추후 발간되는 『영토해양연구』 부록에 공지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

제정 2007.09.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05.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12.23. 규칙 제105호  
타규정개정 2017.12.27. 규칙 제180호  
[시행 2018.9.3.]규정 제92호, 2018.9.3.,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

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사무총장, 실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 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12.23>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④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

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

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9호, 2007. 0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3호, 2010. 0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80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83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92호, 2018. 9. 3>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등)**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과 관련된 재단의 다른 내규는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이 규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편집위원장

곽진오 \_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강봉룡 \_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병렬 \_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안보정책학과 교수

김영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한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도시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심정보 \_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오상학 \_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상균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석용 \_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성환 \_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이종원 \_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정병준 \_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교수

장세운 \_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허영란 \_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편집간사

양인호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영토해양연구 Vol. 17

---

초판 1쇄 인쇄 2019년 6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6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